한국사회

2025년 제26집 2호

일반논문

■ 국내 주요 범죄의 장기발생추세 변화양상에 대한 비교 분석 및 해석
| 황지태
■ Generational Differences in Religiosity and Their Reflection of Social Change in Korea
| Renata Aniela Ziobro · Myoung-Jin Lee
■ 한국 기업의 고령 가족 돌봄 지원제도
| 김수한 · 우하진
■ 이중화 시대 작업장 민수수의의 재구성
| 강민형
■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정책의 의의와 한계: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 박정민 · 송현구 · 라수현
■ 첫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성과의 성별 격차 및 모성 자녀 페널티 분석: 육아 조력자의 영향
| 최수현 · 신종국
■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 신뢰와 동네 응집력의 다중가산조절효과
| 이호정 · 이창배

서평

■ 진실을 지우려는 권력에 맞선 연대의 기록
| 고영란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는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사회연구소**가 발행하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학술지로서 연2회 발간된다. 한국사회연구소는 급변하는 현대 한국사회와 국제지역사회의 제반 현상을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대사회구조와 변동에 대한 설명과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각종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1996년 8월 22일 설립되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우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 3290-1651 / Fax: 02) 924-4365
E-mail: lab050@korea.ac.kr
Homepage: https://socialresearch.korea.ac.kr/
한국사회 투고: socialresearchku@gmail.com

한국사회 편집위원 명단

편집위원장: 송효종(고려대 사회학과)

편 집 위 원: 강동훈(선문대 사회복지학과)
사영준(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학)
신인철(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이해진(충북대 사회학과)
정고운(고려대 사회학과)
황선재(충남대 사회학과)
김지훈(인하대 사회교육학과)
신은경(고려대 사회학과)
윤상우(동아대 사회학과)
장안식(케이스탯 리서치)
조정우(경남대 사회학과)
황희영(동의대 행정학과)
(이상 가나다순)

편 집 간 사: 이진영(고려대 사회학과)

한국사회

2025년 제26집 2호

차례

〈일반논문〉

- 국내 주요 범죄의 장기발생추세 변화양상에 대한 비교 분석 및 해석 3
  | 황지태
- Generational Differences in Religiosity and Their Reflection of Social Change in Korea 35
  | Renata Aniela Ziobro · Myoung-Jin Lee
- 한국 기업의 고령 가족 돌봄 지원제도 71
  | 김수한 · 우하진
- 이중화 시대 작업장 민주주의의 재구성 119
  | 강민형
-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정책의 의의와 한계: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147
  | 박정민 · 송현구 · 라수현
- 첫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성과의 성별 격차 및 모성 자녀 페널티 분석 : 육아 조력자의 영향 185
  | 최수현 · 신종국
-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 신뢰와 동네 응집력의 다중가산조절효과 217
  | 이호정 · 이창배

〈서평〉

- 진실을 지우려는 권력에 맞선 연대의 기록 255
  | 고영란

- Book Promotion: Countering History Denialism The Assault on Truth About 'Comfort Women' Edited by Pyong Gap Mi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USA) 260
- 『한국사회』 투고 및 발행규정 261
- 한국사회 연구윤리규정 265
- 원고제출 및 작성 요강 271

한국사회 제26집 2호(2025년): pp.3-34

국내 주요 범죄의 장기발생추세 변화양상에 대한 비교 분석 및 해석

황 지 태*

요 약

공식범죄통계는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으로 인해 그 해석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기도 하지만, 그 방대한 내용들 중 최대한 쓸 만한 부분들을 추려내어 전반적인 정합성을 따져보고 다른 종류의 자료들과 결합하여 보기도 하여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해 나간다면 범죄현상의 진실을 파악함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유용한 분석의 가능성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여러 개별 범죄들의 장기적인 발생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종합적 해석을 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우리사회를 비롯한 세계적인 변화, 즉 고령화·고학력화·디지털화 등의 변화를 겪고 있는 선진산업국가들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길거리범죄들이 감소함과 동시에 지능형범죄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해보려하였지만,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주요 길거리범죄의 감소추세는 확인하였으나 지능형범죄의 경우엔 사기범죄 이외에는 사기범죄와 유사한 증가세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고학력화와 디지털화 경향은 주요 길거리범죄들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아울러 디지털화와 맞물린 일부 범죄유형들, 그 중에서도 사기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증가세를 이끄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해 보았다. 고령화, 고학력화, 디지털화라는 세 가지 변수가 주요 범죄발생 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공식통계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통해 그 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가설 수준의 논의를 한 것이며, 이후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공식범죄통계, 범죄피해조사, 길거리범죄, 지능형범죄, 고령화, 고학력화, 디지털화

---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brothering@kicj.re.kr

Ⅰ. 서론

한 사회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공식범죄통계를 보면 범죄의 증감을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의 상식에 가깝겠지만, 실상을 말하자면 공식범죄통계는 대략적인 진실의 일면들을 보여 줄 수는 있으나 정확한 진실 전체를 보여주기에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수단이다. 부족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는 많다. 무엇이 범죄이냐에 대한 사회 통념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형법의 변화로 인한 특정 범죄의 신생과 소멸 문제, 동일한 혹은 유사한 행위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신고 여부, 수사기관의 능력 등)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는 문제 등은 척도로서의 공식범죄통계를 의심케 할 만한 문제들이다. 그 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범죄통계의 문제점들(강지현 외, 2012; 김은경, 2008; 임형진, 2016; 장안식·박철현·이순래, 2021; 탁종현, 2015)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도 국가에서 수집하는 공식적인 범죄통계는 한 사회의 범죄량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한 사회의 범죄양상 및 범죄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 행위들의 복합적 양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무용한 도구는 아니다. 측정하기 어려운 범죄현상에 대해 공식범죄통계 만큼 많은 돈과 인력을 들여서 만든 자료를 넘어설 만한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범죄피해조사가 공식범죄통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아무리 큰 표본으로 조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조사는 자료의 규모면에 있어서는 공식범죄통계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것이다. 문제점들을 전혀 모르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러 각도로 면밀히 재분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공식범죄통계는 여전히 유용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한편으로는 범죄피해조사 등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자료들과의 결합을 통해 공식통계를 재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범죄통계 내부의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상호 비교 검토하기도 하면서 공식범죄통계에서 쓸 만한

점들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그 쓸 만한 것 중의 하나는 공식범죄통계에서 드러나는 개별 범죄들의 장기적인 발생추세이다. 공식범죄통계에서 다루는 특정한 연도의 범죄량 혹은 범죄량의 단기적인 변화추세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장기적인 발생추세라고 하더라도 범죄 전체의 발생추세는 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범죄의 신생과 소멸, 형법의 변화 등으로 인해 동일한 현상의 변화추세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변화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진다(크리스티, 2024: 36-37). 하지만, 비교적 유사한 행위로 한정했을 경우엔 시간의 흐름의 따른 범죄량의 증감을 측정해내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여러 개별 범죄들의 장기적인 발생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해보고자 하였다.

Ⅱ. 주요 길거리범죄들의 장기발생추세에 대한 검토

길거리범죄(street crime)란 용어는 엄격한 학문적 용어라기보다는 서덜랜드(E. H. Sutherland, 1983[1949])가 화이트칼라범죄(white collar crime)라고 명명했던 범죄들과 구별되는 통상적 의미의 범죄들을 의미하는 비공식적 용어이다. 정작 서덜랜드는 길거리범죄란 표현 자체를 사용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가 살인이나 간통과 같은 범죄를 화이트칼라범죄와 구별하면서 길거리범죄의 개념을 암묵적으로 전제했다고는 할 수 있다(Sutherland, 1983[1949]: 7).

흔히 범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절도, 강간과 같은 범죄들을 일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길거리범죄를 통상적 의미의 범죄라고도 한다. 보통 지표범죄라고 하는 범죄들은 주로 길거리범죄들이다. 미국의 공식범죄통계인 UCR(Uniform Crime Report)의 지표범죄(index crime)이자 모든 주에서 의무적으로 통계를 제출해야 하는 8가지 범죄들은 모두 길거리범죄들이다[2]. 또한 미국의 범죄피해조사((NCV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에서의 필수 조사 범죄 유형들 역시 모두 길거리범죄들이다[3].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길거리범죄들의 장기발생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요 길거리범죄의 공식범죄발생 추세

먼저 살인범죄의 장기발생추세(대검찰청 범죄분석, 1978-2024)에 대해서는 〈그림 1〉과 같은 그래프의 형태로 만들어 제시해 보았다. 그래프의 X(가로)축은 197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연도를 나타내고, Y축(세로)축은 각 연도의 인구 10만 명 당 살인범죄 발생건수(여러 범죄통계 연보들에서 흔히 '발생비'라고 표현함)를 나타낸 것이다.

1977년도의 살인범죄의 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는 1.4건(절대수치는 506건)이었는데, 2009년도에 2.8건(1,390건)으로 최고치를 이룬 바 있고, 2021년에는 1.3건(692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구체적 수치들에 관한 도표는 지면상 생략). 그래프의 전반적인 모양새를 보면, 1977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장기추세는 대체로 상향적 경향성을 보이다가 2009년도 이후로는 대체로 하향적 경향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중이다.

---

2) UCR 지표범죄는 폭력 범죄(Violent Crimes)와 재산 범죄(Property Crimes)로 나뉘고, 폭력범죄는 다시 살인(Homicide), 강간(Rape), 강도(Robbery), [중]상해(Aggravated Assault)로, 재산범죄는 다시 주거침입(Burglary), 절도(Larceny-theft), 자동차절도(Motor vehicle theft), 방화(Arson)로 나뉜다. 참고로, 사기나 횡령 등의 범죄는 UCR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미국 전체 수준의 범죄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https://cde.ucr.cjis.gov/LATEST/webapp/#/pages/explorer/crime/crime-trend 참조.

3) NCVS의 조사 범죄 항목은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로 나뉘고, 폭력범죄는 다시 강간 및 성폭행(Rape or Sexual Assault), 강도(Robbery), [중]상해(Aggravated Assault), 폭행(Simple Assault)으로, 재산범죄는 다시 주거침입(Burglary or Trespassing), 자동차 절도(Motor vehicle theft), 기타 절도(Other Types of Household Theft)로 나뉜다. https://bjs.ojp.gov/programs/ncvs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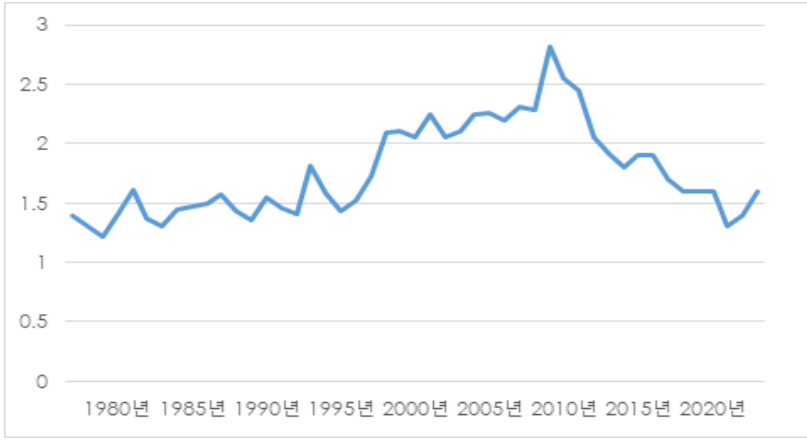

〈그림 1〉 인구 10만 명 당 살인범죄 발생건수 변화 추세(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다음으로는 방화범죄의 장기발생추세에 대해서는 〈그림 2〉와 같은 그래프의 형태로 만들어 제시해 보았다. 앞의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X축은 197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연도를 나타내고, Y축은 각 연도의 인구 10만 명 당 살인범죄 발생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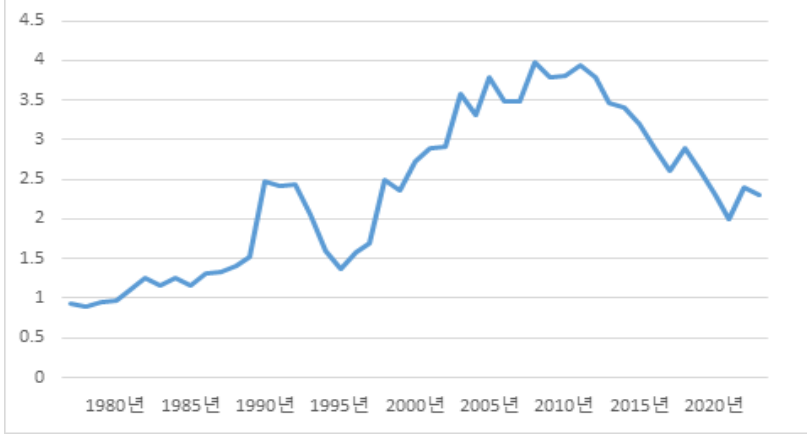

〈그림 2〉 인구 10만 명 당 방화범죄 발생건수 변화 추세(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1977년도의 방화범죄의 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는 0.9건(절대수치는 343건)이었는데, 2008년도에 3.97건(1,946건)으로 최고치를 이룬 바 있고, 2021년에는 2.0건(1,025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2.3건(1,189건)으로 최저치보다는 약간 늘어났다. 방화범죄 그래프의 전반적인 모양새를 보면, 여기서도 살인범죄와 유사하게 1977년부터 2008년도 혹은 2011년도(발생비 3.95건)까지의 장기추세는 대체로 상향적 경향성을 보이다가 그 후로는 대체로 하향적 경향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중이다. 즉 구체적인 모양새가 살인범죄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추세의 방향성과 그 변화의 양상이 살인범죄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만하다.

이어서 강도범죄에 대해서는 〈그림 3〉과 같은 그래프의 형태로 제시해 보았다. 1977년도의 강도범죄의 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는 3.3건(절대수치 1,210건)이었는데, 2003년도에 15.3건(7,327건)으로 최고치를 이룬 바 있고, 2021년에는 1.0건(511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1.2건(599건)으로 최저치보다는 약간 늘어났다. 최고 정점이 2003년도로 살인이나 방화보다 정점의 위치가 좀 더 앞서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모양새로 보자면 이 그래프 역시도 살인범죄 및 방화범죄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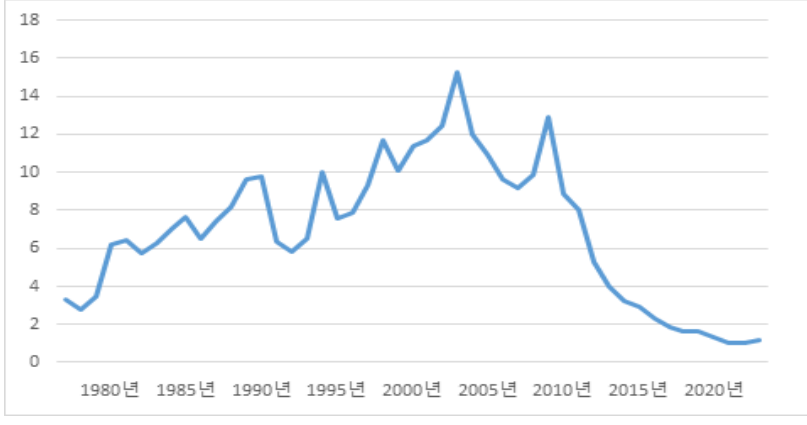

〈그림 3〉 인구 10만 명 당 강도범죄 발생건수 변화 추세(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폭행, 상해, 폭처법 등을 합산하여 구성한 폭력범죄의 장기발생추세는 〈그림 4〉와 같다. 1977년도의 폭력범죄의 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는 231.7건(절대수치는 108,259건)이었는데, 2001년도에 762.3건(361,103건)으로 최고치를 이룬 바 있고, 2021년에는 348.8건(180,460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355.8건(182,621건)으로 최저치보다는 약간 늘어났다. 이 역시도 앞서 살펴보았던 그래프들과 모양의 유사성을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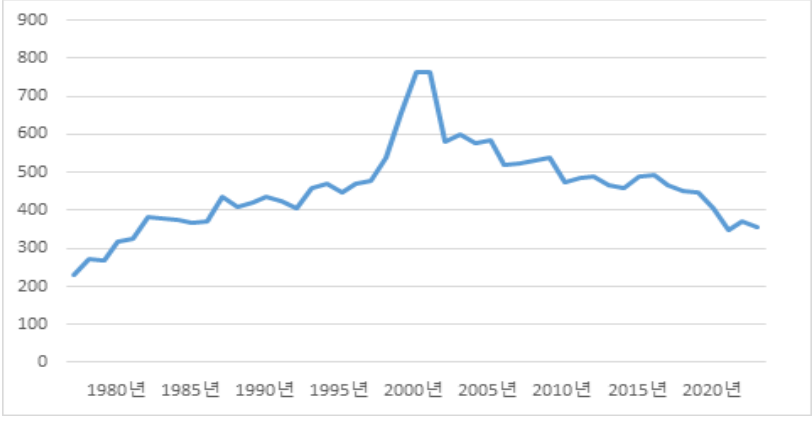

〈그림 4〉 인구 10만 명 당 폭력범죄 발생건수 변화 추세(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한편, 절도범죄의 장기발생추세는 〈그림 5〉와 같이 나타난다. 1977년도의 절도범죄의 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는 249.1건(절대수치는 90,703건)이었는데, 2012년도에 583.8건(293,074건)으로 최고치를 이룬 바 있고, 2020년에는 323.0건(166,782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370.1건(189,942건)으로 최저치보다는 약간 늘어났다. 언뜻 보면, 앞의 그래프들과 조금 다른 모양새이기는 하나, 1977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을 다소 굴곡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인 상승추세 기간으로 보고 2012년 이후의 기간을 추세적 하강기로 본다면, 이 그래프 역시도 유사한 모양새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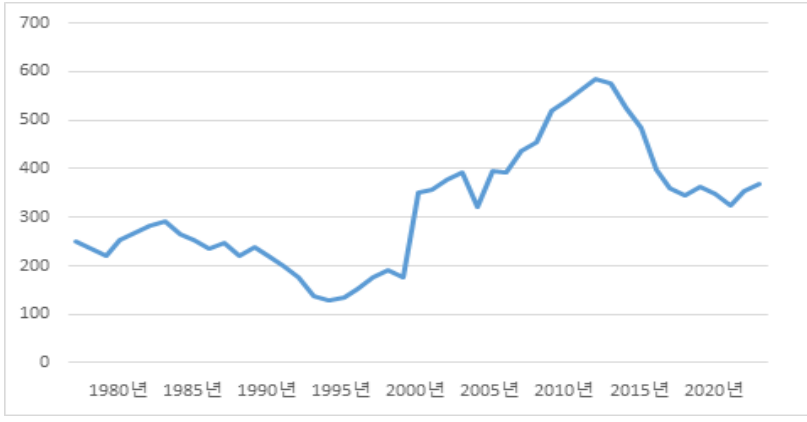

〈그림 5〉 인구 10만 명 당 절도범죄 발생건수 변화 추세(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그런데, 이 소절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성폭력범죄의 경우엔, 다음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앞서 살펴보았던 다섯 가지 범죄와는 그 모양새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1977년 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가 8.9건(절대수치는 3,244건)에서 2022년까지 발생비 80.5(41,433건)로 계속 증가하면서 사실상 추세적 상승세만 나타나고 있다고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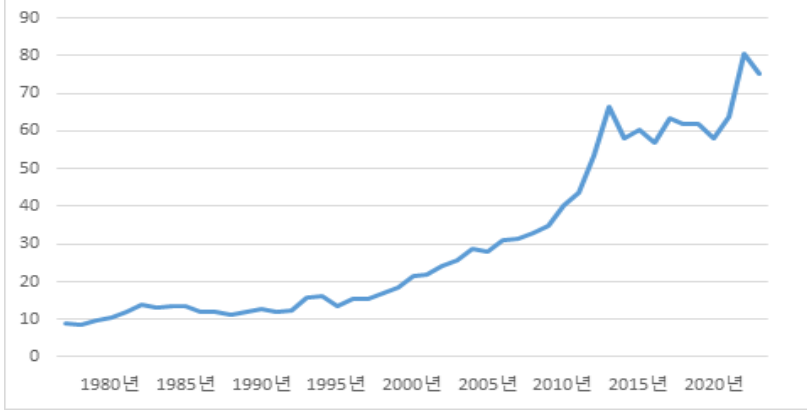

〈그림 6〉 인구 10만 명 당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변화 추세(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이상 살펴본 6가지 주요 길거리범죄의 공식범죄통계상 장기발생추세를 살펴보면, 살인, 방화, 강도, 폭력, 절도의 5가지 범죄는 일정 시기까지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대략 2000년도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 사이)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하여 현재까지도 그 하락세가 유지된다는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만하다. 다만, 성폭력범죄만은 예외로, 추세적 하락세 없이 최근까지도 대체로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2. 주요 길거리범죄의 장기추세에 대한 자료 보충

앞서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를 가지고 여섯 가지 길거리범죄들의 장기추세를 살펴보았는데,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해 왔고 본고의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공식범죄통계가 가진 각종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의 진실성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혹 믿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믿을만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그에 대한 완벽한 검증수단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식범죄통계 외의 다른 자료들과 비교 검토하는 등의 방법 등을 통해 그 진실성을 어느 정도까지는 점검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과거에 이루어진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황지태, 2009)를 먼저 소개해 본다. 2009년도에 수행된 이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2005년도의 시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된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조사 결과(최인섭·박순진, 1995; 최인섭·기광도, 1998; 박순진·최영신, 1999; 최인섭·김지선·황지태, 2003, 김진선·김지영·홍영오·박미숙, 2006)와 그와 동일한 시기의 공식범죄통계상에 나타난 범죄율(대검찰청, 9994-2006)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 사실에 대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 그리고 상반된 추세 중에서 어떤 추세가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 황지태(황지태, 2009: 109)는 다음 〈그림 7〉[4]과 같이, 1993년부터 2005년까지 강도, 절도, 폭력(폭행·상해 등), 성폭력범죄에서 범죄피

해조사결과에서는 피해율이 줄고 있는데, 공식범죄통계에서는 같은 강도, 절도, 폭력(폭행·상해 등), 성폭력범죄에서 범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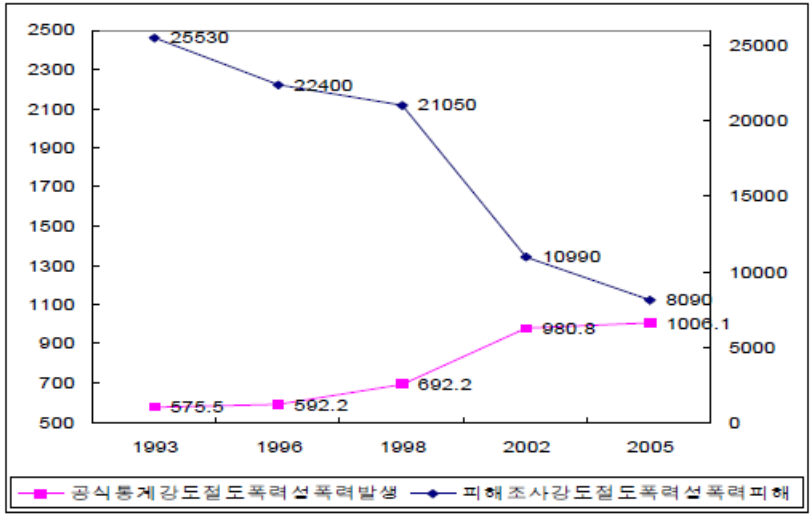

〈그림 7〉 1993-2005년 시기 공식통계와 피해조사 결과 대비

이러한 현상에 대해 황지태는 “그 기간 동안 실제 범죄가 감소한 대신 피해자들 및 제3자들의 범죄피해신고율 및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인지 능력, 그리고 범죄피해접수처리율 등이 총체적으로 증가하여 실제 범죄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율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황지태, 2009: 312)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연구는 공식통계의 추세가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이나마 실제 추세와 반대로 향할 수도 있음을

4) 여기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1993년, 1996년, 1998년, 2002년, 2005년 공식범죄율(그래프의 아래쪽 꺽은선)로 인구 10만 명 당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합계의 발생건수이고, 감소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연도에 범죄피해조사에서 측정한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의 범죄피해율(그래프의 위쪽 꺽은선)이다(황지태, 2009: 109).

보여주었다. 즉 공식통계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범죄암수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로 인해 때때로 그 추세마저 왜곡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식범죄통계의 추세는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같은 논문에서 황지태(황지태, 2009: 126)는 신고율의 급증과 그에 따른 범죄암수의 감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식범죄의 추세와 범죄피해율의 추세 혹은 실제 범죄율의 추세의 방향성은 다시 같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즉 범죄피해율과 공식통계의 추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현상이고 일정 시기를 지나면 두 추세의 방향성이 같아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즉 〈그림 8〉에서 Q기간과 같이 일시적으로 공식범죄율과 범죄피해율 추세의 방향성이 엇갈리는 시기를 지나면 Q 이후의 시기와 같이 그 방향성이 다시 동일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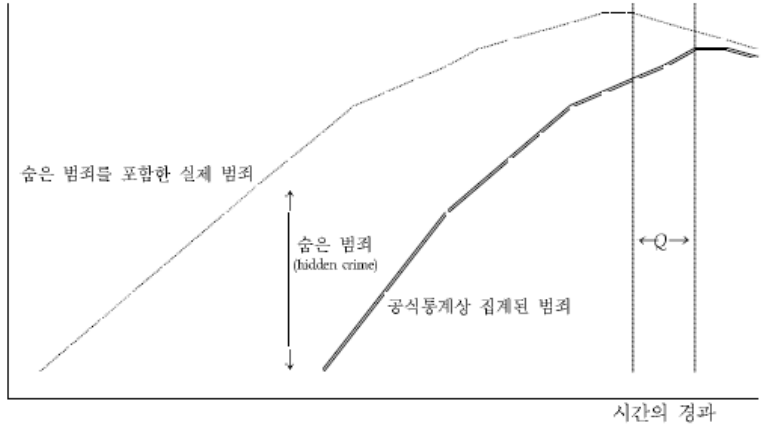

Q : 숨은 범죄를 포함한 실제 범죄가 감소하는 중에도 공식통계상 집계된 범죄가 증가하는 시기

〈그림 8〉 공식통계와 피해조사 방향성 괴리 현상 이후에 대한 2009년도의 예측

이제 이 〈그림 8〉의 전체적인 모양새를 염두에 두면서 앞 소절에서 살펴보았던 〈그림 1〉에서 〈그림 5〉까지의 그래프(살인, 방화, 강도, 폭력, 절도의

장기추세)의 모양새를 보면 그 모양새가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그림 6〉(성폭력)은 이 모양새를 따르지 않고 있다. 잠시 성폭력의 경우를 논의로 하고 이야기 하자면, 다섯 가지 주요 길거리범죄의 공식통계상 장기추세는 일시적인 왜곡현상의 발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시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정기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하는 그래프의 모양새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현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림 8〉 및 〈그림 1〉에서 〈그림 5〉까지의 그래프 모양새는 미국의 공식 범죄통계인 UCR의 폭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중상해범죄)의 인구 10만 명 당 발생건수를 나타낸 〈그림 9〉의 모양새와도 유사하다(FBI https://cde.ucr.cjis.gov/LATEST/webapp/#/pages/explorer/crime/crime-trend 참조. 그래프는 재구성). 이 역시 그래프에 나타나는 일정기간(1970년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까지는 범죄율이 상승하다가 그 후로는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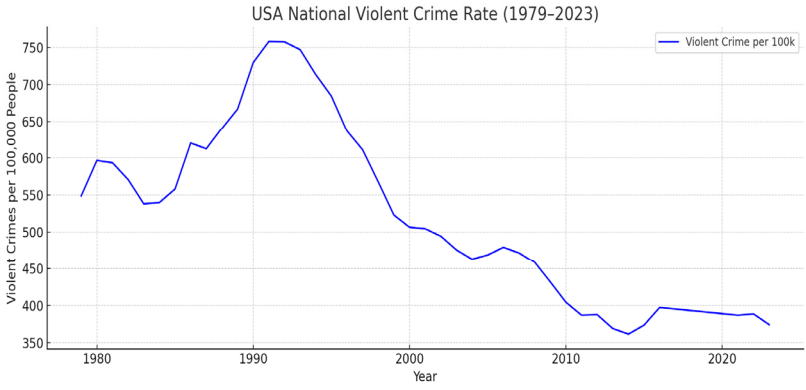

〈그림 9〉 UCR, 인구 10만 명 당 폭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중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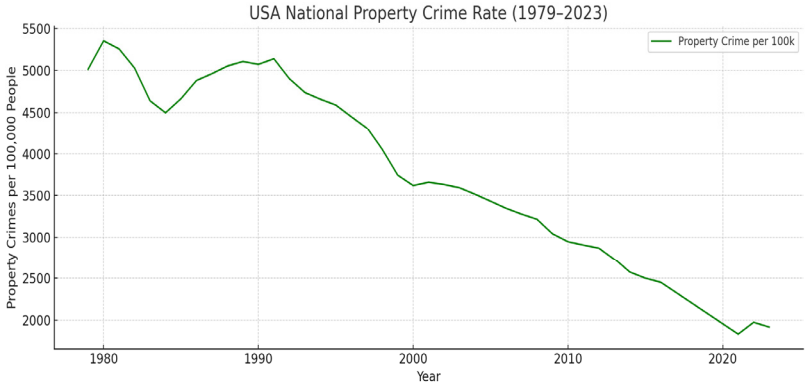

〈그림 10〉 UCR, 인구 10만 명 당 재산범죄(주거침입, 절도, 자동차절도)

UCR의 재산범죄(주거침입, 절도, 자동차절도)의 인구 10만 명 당 발생건수를 나타낸 〈그림 10〉의 모양새는 상승시기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래프에는 보이지 않는 1970년 이전의 상승세를 가정한다면 역시 비슷한 모양새로 볼 수 있다.

3. 성폭력범죄 추세의 예외성에 대한 해석

한국의 미국의 공식범죄통계에서 주요 길거리범죄들의 장기발생추세가 역U자 형태의 모양새를 띠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는 길거리범죄 유형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역U자 모양이 아닌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길거리범죄들 중 왜 성폭력범죄의 그래프에서만 다른 모양새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

물론 다른 주요 길거리범죄들과는 성폭력범죄만 유독 증가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식통계는 다른 범죄들은 다른 길거리범죄들에 대한 공식통계와 다른 점들이 있고 그 점들 때문에 통계 해석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점은 아마도

우리나라 성폭력범죄 공식통계에서의 새로운 행위유형의 지속적인 입법결과라고 본다.

이는 닐스 크리스티의 언급,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바뀌는 현상의 발생량을 측정하는 것은 그리 매력적인 일은 아니다”(크리스티, 2024: 36-37)라는 언급과 관련된다. 이 언급에 대해 필자는 상대적으로 내용이 덜 바뀌어 온 범죄, 가령 살인범죄 같은 경우엔 그 발생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강도, 절도, 방화의 경우도 대략 그러할 수 있고, 폭력의 경우엔 그러한 성격이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공식통계는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성폭력과 관련된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고, 특히 기존에는 처벌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행위들이 계속해서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과정(가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카메라이용등촬영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법률들이 추가되어왔고, 그 때문에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공식통계는 동일한 행위들의 변화량이라고 보기 어려운 성격이 있음에 분명하다. 근 10여년 혹은 20여년 사이의 동일한 행동유형으로서의 성폭력범죄(혹은 전통적인 의미의 성폭력범죄)가 실제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혹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지는 분명히 알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앞서 지적한 이유만으로도 그 발생량 상승속도는 실제보다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들이 증가세를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표 1〉 최근 디지털성범죄의 변화(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구분	2012 -2022년 비교					
	2014	2016	2018	2020	2022	2023
통신매체이용음란	1,254	1,115	1,378	2,070	10,605	8,026
카메라등이용촬영	6,735	5,249	6,085	5,005	6,082	5,718
허위영상물편집반포	-	-	-	125	171	173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	-	-	32	844	994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1994년 제정. 2013년부터 친고죄 폐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12년 제정.
※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 및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 2020년 제정.

Ⅲ. 지능형 범죄들의 장기발생추세에 대한 검토

앞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주요 길거리범죄에서 일정 시점 이후 추세적으로 범죄율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띠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표면적으로는 예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양상의 변화과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적어도 전통적 유형의 성폭력범죄는 동일한 행위에 엄격하게 국한하여 측정할 경우 실제로는 다른 길거리범죄들과 마찬가지로 감소추세에 있을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길거리범죄에 대한 이러한 장기추세의 경향성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나라 범죄양상의 변화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범죄유형은 사기범죄이다. 다음에서 보게 되겠지만, 사기는 앞의 다섯 가지 범죄유형들의 발생추세와는 달리 일정 시점 이후 추세적 하향세를 보이는 그래프의 모양과는 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1. 사기범죄의 공식범죄발생 장기추세

사기범죄의 공식통계(대검찰청『범죄분석』자료)상 장기적 발생추세(1977년-2023년)는 다음 〈그림 11〉의 그래프와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1977년도 인구 10만 명 당 발생건수 69.9건(절대수치는 25,436건)을 기록한 이래 사기범죄의 추세는 여러 차례의 등락과 부침에도 불구하고 큰 방향성에서 보면 커다란 하향세 없이 비교적 꾸준한 상승세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절대수치로는 2020년에 354,154건(10만 명 당 683.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인구 대비로는 2023년에 10만 명 당 689.8건(절대수치는 354,05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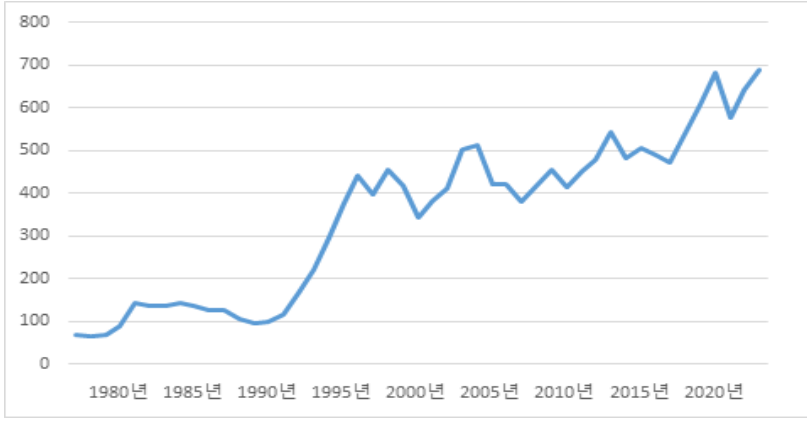

〈그림 11〉 인구 10만 명 당 사기범죄 발생건수 변화 추세(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그런데, 이 그래프만으로는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아직 단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소위 '민사사건의 형사화' 경향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고소를 하여 실상은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들도 범죄통계에 산입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사기범죄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까지 참조해 본다면, 사기범죄의 증가추세는 대체로 사실일 개연성이 더 크다고 본다.

〈표 2〉 최근 10년간 범죄피해조사에서의 사기범죄 피해율 변화

구분		2012 -2022년 비교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범죄피해건수 (추정)	건	349,068	411,078	538,181	460,838	966,276	1,481,199
범죄피해율 (추정)	**(%)**	**(0.81)**	**(0.93)**	**(1.15)**	**(1.01)**	**(2.10)**	**(3.33)**
10만명당 피해건수	건/ 10만 명	813	933	1,152	1,012	2,100	3,329

※ 자료출처 : 최수형·조영오, 2017: 115(2012년-2016년); 조제성·전영실·임하늘, 2023: 115 (2014년-2022년)

즉 공식범죄통계상의 사기범죄의 지속적 증가추세는 전국범죄피해조사결과에서도 일관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사기범죄가 조사항목으로 포함된 이후 2012년도에는 추정 피해율이 0.81%, 2014년에는 0.93%, 2016년에는 1.15%, 2018년 1.01%, 2020년에는 2.10%, 2020년에는 3.33%로 2018년의 소폭 감소 이외에는 줄곧 상승세를 유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범죄피해조사에서의 다른 범죄들의 경우, 추세적 하락세를 보이거나 혹은 최근 상승세로 전환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기범죄만큼 뚜렷하고 일관된 상승세를 보이는 범죄유형은 없다(각 해당연도들의 범죄피해조사 결과 참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범죄의 경우 공식통계에서든 범죄피해조사에서든 일관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앞서 언급했던 성범죄를 제외한 주요 길거리범죄들의 특정 시점 이후 하락세 지속 추세와 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타 지능형 범죄들의 발생추세 검토

앞서 살펴보았던 사기범죄의 장기적 증가추세의 유지 현상은 다른 종류의 지능형 범죄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사기범죄의 장기 증가추세를 좀 더 일반화하여 길거리범죄와는 구별되는 이른바 '지능형 범죄'들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사기범죄와 같은 증가추세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이에 다음 〈그림 12〉에서는 대검찰청『범죄분석』자료를 통해 횡령범죄의 공식통계상 장기적 발생추세를 살펴보았다. 이를 보면, 횡령범죄의 1977년도 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는 28.9건(절대수치는 10,515건)을 기록하였고, 그 후로 작은 굴곡은 있어도 전반적으로는 커다란 하향세는 없이 상승세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기범죄의 장기적 상승추세의 모양새와 대체로 유사한 모양새로 나타난 것이다. 가장 최근의 통계치인 2023년도의 횡령범죄 발생건수는 66,318건, 인구 10만 명 당 발생건수는 129.2건으로 그 절대수치가 적은 편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만으로 사기범죄와 같이 횡령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길거리범죄의 감소추세와는 달리 지능형범죄는 증가추세라고 일반화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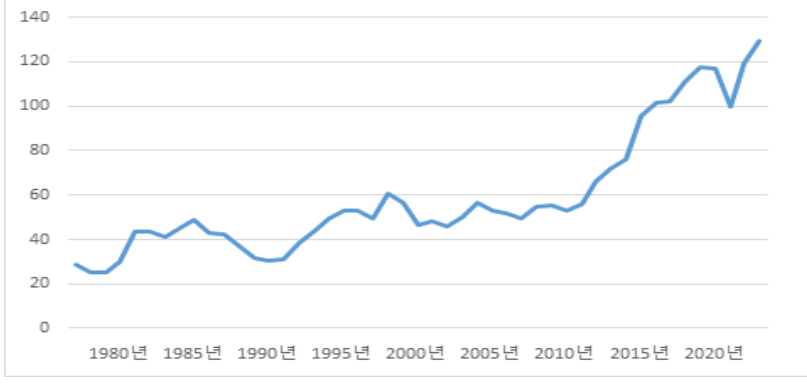

〈그림 12〉 인구 10만 명 당 횡령범죄 발생건수 변화 추세(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횡령범죄의 하위범죄유형을 세분화해서 그 내부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러한 결론은 내리긴 어려울 듯하다. 다음 〈표 3〉은 그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 표는 경찰청『범죄통계』자료에 나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횡령범죄에서 점유이탈물횡령과 기타횡령(일반 횡령, 업무상횡령, 특경법상의 횡령의 합) 발생건수를 보여준다. 참고로, 경찰청 자료를 참조한 것은 대검찰청『범죄분석』에서는 횡령범죄에 대한 상세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를 보면, 10년 동안 전체 횡령범죄는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비중이 상당하며 점유이탈물횡령의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전체 횡령범죄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을 제외한 순수 횡령죄는 최근 10년간 증가는커녕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표 3〉 최근 10년간 횡령범죄, 점유이탈물횡령범죄의 변화(경찰청 범죄통계 재구성)

구분	2012 -2022년 비교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전체횡령	31,273	37,024	50,053	55,113	58,889	60,220
점유이탈물횡령	9,100	15,529	30,496	36,767	41,087	44,596
기타횡령	22,173	21,495	19,557	18,346	17,802	15,624

점유이탈물횡령은 범주상으로는 횡령죄에 속하고 있으나 그 행위유형으로만 보자면 지능형범죄라고 말하기 어려운 범죄이다. 따라서 공식범죄통계상으로 횡령범죄가 증가했다는 것이 지능형범죄가 증가했다는 말로 연결될 수는 없게 되었다.

확인을 해보는 김에, 지능형범죄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범죄유형들의 장기추세들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배임죄의 경우를 보면, 다음 〈그림 13〉과 같은 모양새로 나타난다. 이를 보면, 배임범죄의 1977년도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는 9.3건(절대수치는 3,390건)을 기록한 이후의 발생추세선의 모양은 어떤 중장기적 방향성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정도로 불규칙하다. 따라서 배임범죄는 사기범죄와 같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성을 보인

다고 말할 수도 없고, 주요 길거리범죄들처럼 일정 시점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범죄들의 추세와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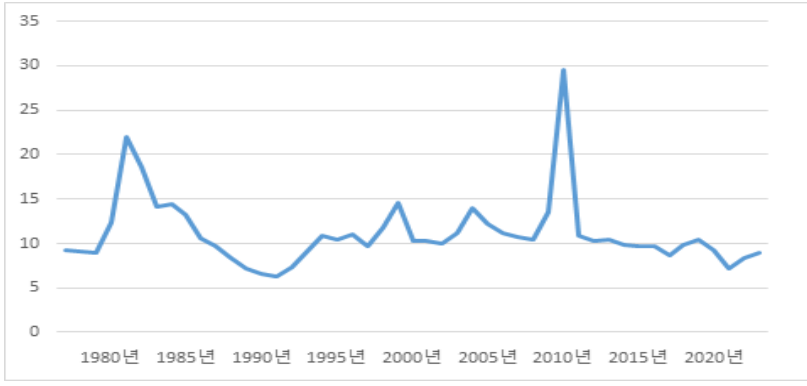

〈그림 13〉 인구 10만 명 당 배임범죄 발생건수 변화 추세(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위조범죄(통화, 문서, 기타 위조죄의 합계)의 발생추세를 보면(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참조. 1992년 이전에는 공표자료가 없기 때문에 1993년 이후 자료 활용), 다음 〈그림 14〉와 같다. 이 그래프를 보면, 위조범죄의 발생추세곡선은 다섯 가지 주요 길거리범죄의 추세곡선과 유사하다.

〈그림 14〉 인구 10만 명 당 위조범죄 발생건수 변화 추세(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공무원범죄(증뢰, 수뢰, 직무유기, 직권남용)를 보면, 〈그림 15〉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대검찰청『범죄분석 자료 참조. 이 경우도 1993년 이후 자료 활용), 이 그래프는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의 대대적 사정 결과와 IMF 사태의 여파로 나타난 1999년의 공무원 부패범죄 적발의 폭증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1993년도와 1999년도를 그래프에서 제외하고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기범죄 그래프 모양과 유사한 우상향 장기 상승추세선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림 16〉을 잘 들여다보기만 해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최근까지의 공무원범죄의 발생량을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특히 범죄의 발생량적 측면에서 볼 때, 그것만으로는 지능형 범죄 일반이 증가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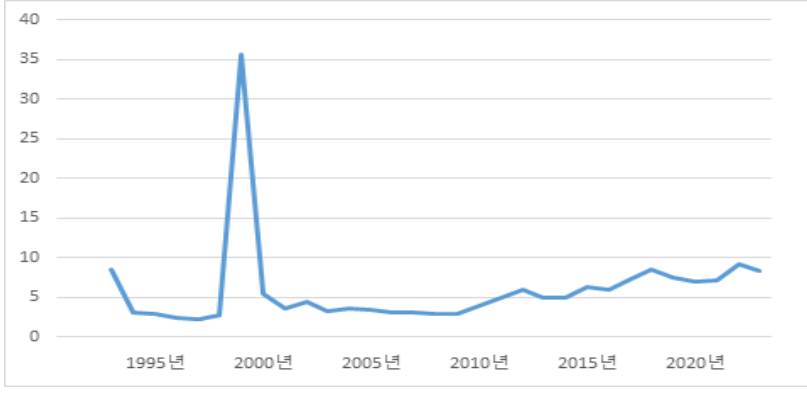

〈그림 15〉 인구 10만 명 당 공무원범죄 발생건수 변화 추세(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Ⅳ. 종합적 검토와 논의

이제부터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주요 길거리범죄들의 장기 발생추세의 양상, 지능형범죄의 장기 지속적 상승추세의 양상들의 일반화 가능성을 따져본 후, 이를 토대로 그와 같은 현상

들이 나타난 현상의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시도해 보기로 하겠다.

1. 주요 길거리범죄의 역U자형 장기 발생추세의 일반화 가능성

살인, 방화, 강도, 폭력, 절도의 공식통계상 장기 발생추세는 일정 기간 동안의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일정 시점부터 하락추세로 전환하여 현재에까지 어느 정도 그 추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 범죄피해조사에서는 절도, 강도, 폭력의 경우 공식통계와 반대방향성을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엔 모두 하락추세로 전환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을 일반화해서 표현하자면 역U자형 곡선이라고 할 만하다. 다만, 성폭력범죄에서는 이와 같은 곡선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상승세만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길거리범죄의 모든 유형들을 전부 살펴본 것도 아니고, 성폭력범죄와 같은 예외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주요 범죄들의 장기추세 변화양상을 어느 정도 일반화해서 해석해 보는 것은 약간의 무리는 있을지언정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다섯 가지 주요 길거리범죄들과는 다르게 1990년대 이후 그 범죄의 구성요소 자체에 크고 급격한 변화들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일한 행위집합들의 변화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장기상승추세를 논외로 할 경우, 주요 길거리범죄들은 언제부터인가 상당한 감소세를 보여왔다고 어느 정도 일반화해서 말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 지능형범죄의 장기 지속적 상승추세의 일반화 가능성

한편, 길거리범죄들과는 성격이 다른 형태의 범죄 중에서 발생건수가 제일 많은 사기범죄의 경우, 공식범죄통계에서는 물론 범죄피해조사에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오로지 상승추세만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지능형 범죄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범죄의 경우, 사기범죄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 보이긴 하였으나 점유이탈물횡령의 비중과 발생추세를 고려할 경우, 지능형범죄의 증가라고 결론내릴 수 없게 된다. 그 외 다른 지능형 범죄유형들에서도 장기 발생추세의 형태 자체의 일관성을 찾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배임범죄가 특히 그러하였고, 위조범죄 역시도 사기범죄와는 다른 모양새를 나타내었다. 공무원범죄의 경우엔 특수한 예외시기를 제외했을 경우, 사기범죄와 유사한 모양새를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지능형범죄가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요컨대,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 볼 때, 사기범죄의 증가[5]는 대략 분명해 보이지만 이를 지능형 범죄 일반의 증가추세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다.

3. 종합적 해석

본고에서 애초에 염두에 두었던 것 중의 하나는 길거리범죄의 역U자형

---

5) 참고로, 미국의 경우를 잠깐 덧붙여 보자면, 미국의 공식통계인 UCR은 주요 길거리범죄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기범죄의 증감을 미국 전체수준에서 장기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자료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 적어도 최근 들어서는 사기범죄, 그 중에서도 디지털 사기와 고령자들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존재하기는 한다.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2024.2.8. Nationwide fraud losses top $10 billion in 2023; FTC steps up efforts to protect the public.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4/02/nationwide-fraud-losses-top-10-billion-2023-ftc-steps-efforts-protect-publ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2025.3.7. New FTC Data Show Big Jump in Reported Losses to Fraud: $12.5 Billion in 2024.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5/03/new-ftc-data-show-big-jump-reported-losses-fraud-125-billion-2024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2023.3. FBI Releases 2023 Internet Crime Report, https://www.fbi.gov/news/press-releases/fbi-releases-annual-internet-crime-report

추세와 지능형범죄의 지속적 우상향 증가추세를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길거리범죄의 경우엔 역U자형 추세를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었지만, 사기범죄를 제외하고는 지능형범죄의 우상향 증가추세를 일반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길거리범죄와 지능형범죄의 발생추세의 양상에 대한 범주적 일반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다.

우선 길거리범죄들의 역U자형 추세가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다. 일단 초반부의 상승세는 도시화, 산업화 초기의 일종의 아노미 현상으로 설명될 있다. 즉 농촌이 해체되고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도시는 이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농촌적 가치관을 가진 이주민들은 도시에서 문화적, 가치적 갈등과 혼란을 겪는 상황이다. 이는 도시의 빈부격차와 맞물리면서 도시의 범죄문제로 이어졌다고 본다. 하지만, 도시화가 어느 정도 성숙되고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앞서 언급한 환경에 어느 정도 변화가 발생한다. 일단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어느 정도 진정되고, 도시적 삶의 장기화가 진행된다. 즉 이주로 인한 아노미 현상이 약화되고, 도시적 삶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새로운 세대가 도시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 또한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고도의 IT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 그 중에서도 특히 길거리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범죄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동반되었다. CCTV의 증가, 휴대폰 사용의 확대(범죄발생시 바로 찍어서 신고가 가능해짐), 정보산업 발달에 따른 증거 확보 능력 증가로 인한 범인 검거 가능성의 증대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와 서구 사회에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육체적인 측면에서 길거리범죄를 저지르기에 좀 더 용이한 소년의 인구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늘면서 길거리범죄의 발생량이 줄어드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산업화 초기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길거리 범죄가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해석된다. 다만, 한국과 미국에서 전체적인 이러한 패턴은 유사하지만 범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두 사회의 발전정도와 산업화 시기의 차이 등에 의한 시기의 차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길거리범죄 내에서도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각 범죄간 범죄암수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요인들에 의한 차이라고 해석된다.

여기까지는 길거리범죄의 발생추세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사기범죄 발생양상과 더불어 길거리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경우 그러한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면서 위 설명을 보강할 수 있는 추가적 설명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설명의 핵심중의 하나는 사회의 디지털화라고 본다. 앞서 이 요인은 전통적인 길거리범죄들을 감소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는 길거리범죄들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부 범죄유형들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범죄유형이 사기범죄와 성폭력범죄라고 추정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통계에 따르면, 2023년 사이버범죄는 243,580건이 발생하였는데,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613,754건이었다. 약 15%에 해당되는 비중이다. 아울러 사이버범죄의 발생추세를 보면, 〈그림 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좌측 막대 그래프 추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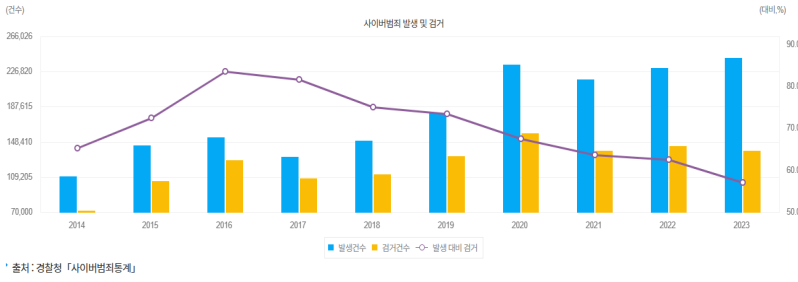

〈그림 16〉 우리나라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경찰청 사이버범죄통계)

그래프 출처: 통계청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8

이러한 디지털범죄의 증가는 반드시 지능형범죄와 동반하여 증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들 디지털범죄는 지금까지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한 유형으로, 그리고 사기범죄의 신종 범죄수법과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Ⅴ. 요약 및 맺음말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나라 국내 주요범죄의 장기발생추세 변화는 당분간 길거리범죄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혹은 적어도 비증가 경향)하고, 디지털범죄와 긴밀하게 연관될 수 있는 성범죄와 사기범죄 등은 공식통계상으로 일정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나갈 공산이 있다고 감히 예상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지속시키는 변인으로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크게 다음과 같이 고령화, 고학력화, 디지털화라는 변수를 상정해 본다.

1) 고령화 :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은 전체 인구에서 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과 동시에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적극적인 이민으로 인한 변수를 일단 논외로 할 경우, 이러한 고령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화와 산업화 시대의 주요 범죄였던 살인, 절도, 강도, 폭행·상해 등의 발생건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젊은 층의 인구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1994년[6]에는 우리나라 강도범죄(4,469건) 가해자의 58%가 18세 이하였었는데, 2017년(강도범죄 발생건수 1,181건)에는 그 비중이 16.6%, 2021년(511건)에는 23.7%로 1994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다(황지태 외, 2023: 38-39). 강도범죄는 어느 정도 육체적인 강건함이 필요한 범죄 중의 하나로, 육체적 강건함이 절정에 이르는 연령대의 인구가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육체적 강건함을 필요로

6) 인구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인 1971년생이 20대 초반인 시기이다.

하는 범죄가 아닐 경우라면, 앞서 분석했던 사기범죄와 같은 경우라면,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범죄들은 특별히 감소하지 않거나 혹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노령인구의 증가가 사기범죄를 증가시키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범죄들이 감소되지 않을 만한 이유는 될 수 있다.

2) 고학력화 : 극심한 빈곤국가나 내전국가가 아니라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학력수준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고 할 만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할 정도의 교육열로 인해 매우 단기간에 전 국민의 학력수준이 가장 빠르게 증진된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요인은 범죄양상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공산이 당연히 크다. 여기서도 긴 설명 대신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1977년도에는 형법 위반 범죄자들의 50.4%가 초등학교 이하 학력이었지만 2021년에는 그 같은 비중이 5%였다(황지태 외, 2023:163)는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젊은 층의 인구 감소만큼 고학력화도 살인, 절도, 강도, 폭행·상해 등과 같은 전통적인 유형의 길거리범죄들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노인들이 그러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란 법이 없듯이 고학력자들이 그러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란 법은 없다. 그러나 고령자와 마찬가지로 고학력자들은 그러한 유형의 범죄를 조금이라도 더 회피할 개연성이 높다. 대신 고학력화는 길거리범죄가 아닌 다른 종류의 범죄, 특히 지능형범죄의 증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 사회 내에서 범죄의 근본동기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육체적 유형의 길거리범죄의 감소는 일종의 풍선효과처럼 지능형범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적 가정이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능형범죄 일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지능형범죄 일반의 증가에 고학력화 요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디지털화 : 여기서 디지털화를 엄격하게 정의하지는 않겠다. 그냥 단순히 컴퓨터의 사용이 늘어나고, CCTV가 늘어나고, 스마트폰 사용자 및 그 사용시간이 늘어나고, AI붐이 일어나는 등 일련의 사태들을 쉽게 디지털화

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이러한 변화 요인 역시 범죄발생 양상 변화에 이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살인, 절도, 강도, 폭행·상해 등과 같은 전통적인 유형의 길거리범죄들을 상당히 감소시킬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서도 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보자면, 스마트폰도 아니고 그냥 휴대폰의 보급만으로도 범죄예방과 범죄적발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황지태, 2009: 301). 그것이 없던 시절과 비교하면, 범죄신고의 신속성과 범죄증거의 확보면에서 휴대폰의 보급은 가히 혁명적인 사건 중 하나라고 할 만하다. 이는 사회의 전반적인 디지털화가 전통적인 유형의 범죄들을 크게 억제하는 억제요인으로 작용한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동시에 디지털화는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종류의 범죄를 증가시킬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범죄유형들 중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성폭력범죄와 사기범죄 내에는 디지털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범죄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음이 거의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세 가지 요인 이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논의할 내용들(가령 도시형태의 변화 등)이 많을 수 있으나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에 그에 대한 논의들을 편의상 생략하기로 하겠다. 이 세 가지 변수가 주요 범죄발생 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공식통계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통해 그 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가설 수준의 논의를 한 것일 뿐이다. 본고가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2025년 6월 16일 접수
2025년 8월 8일 수정 완료
2025년 7월 9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강은영·최수형·유진·서준배. 2023.『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Ⅲ): 사기범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지현 외. 2012.『경찰「범죄통계」활용도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청, 2012-2022.『범죄통계』. 경찰청.

김민영·한민경·박희정. 2019.『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2008.『국가 범죄통계 관리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 2013.『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김지영·홍영오·박미숙. 2006.『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1976-2024.『범죄분석』. 대검찰청.

박순진·최영신. 1999.『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Ⅲ)』.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최수형·김낭희·이선형·조제성. 2021.『전국범죄피해조사 2020 분석보고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임형진. 2016. "범죄예방효과 평가에 있어 공식범죄통계 활용의 한계: 지구대 사례를 중심으로",『한국경찰학회보』18(1): 295-315.

장안식·박철현·이순래. 2021. "범죄통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 사용자의 입장에서".『공공정책연구』38(3): 487-512.

조제성·전영실·임하늘. 2023.『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 본보고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인섭·기광도. 1998.『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김지선·황지태. 2003.『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Ⅳ)』.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박순진. 1995.『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수형·조영오. 2017.『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탁종연. 2015, "공식통계를 이용한 지역별 범죄율 비교의 문제점".『경찰학연구』15(4): 3-3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2025.『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각 년도.
황지태. 2009. "한국사회의 범죄증가추세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공식통계상 범죄율 증가와 범죄피해조사상 피해율 감소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황지태·장안식·정진우·김민주. 2023.『한국의 범죄발생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크리스티(Christie, Nils). 2024.『국가가 조절하는 범죄의 적당한 양』. 최정학 역. 에피스테메.

통계청 지표누리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8
Sutherland, E. D. (1983[1949]). White Collar Crime: the uncut version with an introduction by Gilbert Geis and Colin Goff, Yale University Press. New Heaven and London.
BJS(Bureu of Justice Statistics),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https://bjs.ojp.gov/programs/ncvs
FBI Crime data Explorer. https://cde.ucr.cjis.gov/LATEST/webapp/#/pages/explorer/crime/crime-trend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2023.3. FBI Releases 2023 Internet Crime Report, https://www.fbi.gov/news/press-releases/fbi-releases-annual-internet-crime-report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2024.2.8. Nationwide fraud losses top $10 billion in 2023; FTC steps up efforts to protect the public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4/02/nationwide-fraud-losses-top-10-billion-2023-ftc-steps-efforts-protect-publ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2025.3.7. New FTC Data Show Big Jump in Reported Losses to Fraud: $12.5 Billion in 2024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5/03/new-ftc-data-show-big-jump-reported-losses-fraud-125-billion-2024

Comparativ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Changes in Long-Term Trends of Major Crimes in Korea

Ji Tae, HWANG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Abstract

Although official crime statistics are frequently criticized for their inherent limitations and constraints—which may sometimes result in serious interpretive challenges—they can nevertheless serve as a valuable tool for understanding crime phenomena when their most relevant elements are carefully extracted, their overall consistency evaluated, and supplemented with other data sources for critical and comprehensive analysis. Building on this analytical potential,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long-term trends of various individual crimes in South Korea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and provides an integrative interpretation of these trends.

Through a critical analysis of official crime statistics and crime victim survey data,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le effects of global societal changes—specifically population aging, increasing educational attainment, and digitalization—on crime patterns in advanced industrialized nations, including South Korea. The findings indicate a clear downward trend in major street crimes (with the exception of sexual offenses), yet reveal insufficient evidence to assert that intelligent crimes, apart from fraud, are experiencing a similar upward trajectory. Nevertheless, it is posited that aging, higher education, and digitalization may collectively act as factors suppressing traditional street crimes, while simultaneously facilitating increases in certain digital-related offenses, notably fraud and sexual violence.

This study concludes that further empirical research is needed to examine in greater depth how these three variables—aging, higher education, and digitalization—influence crime occurrence patterns. The current analysis offers a preliminary, hypothesis-level discussion based on observable trends in official statistics and aims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more detailed and rigorous future investigations.

Key Words: official crime statistics, crime victim survey, street crime, intelligent crime, aging, higher education, digitalization

한국사회 제26집 2호(2025년): pp.35-69

Generational Differences in Religiosity and Their Reflection of Social Change in Korea*

Renata Aniela Ziobro** · Myoung-Jin Le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generational differences in religiosity in South Korea and to analyze how these changes are connected to broader sociological transformations. To this end, repeated cross-sectional data from Gallup Korea, spanning from 1997 to 2021, were used to analyze religiosity each year based on generational cohorts and other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 persistent gap in religiosity exists between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This gap has gradually widened over time. Second, older generations generally exhibit higher levels of religiosity than younger generations. Specifically, while only the Baby Boomer generation displayed significantly higher religiosity than younger cohorts in 1997, by 2021, all older generations showed higher levels of religiosity compared to the younger ones. These generational trends suggest a long-term structural shift in Korea's religious landscape, driven not only by age or life-cycle effects but by changing cultural values, rising individualism, and increased secular orientation among the youth. The study positions Korea as a distinct case within global secularization debates, where rapid modernization coexists with enduring Confucian traditions, making generational religiosity a vital indicator of the country's evolving social fabric.

Key words: religiosity; generational differences; religious trends; intergenerational gap; Korean society; social transformation

---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faculty research grant from Korea University in 2024

** Ph.D. Candidate of Sociology at Korea University, renataziobro@korea.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of Sociology at Korea University, leemj@korea.ac.kr

Ⅰ. Introduction

The debate on secularization dates back to the fathers of modern sociology (Norris and Inglehart, 2004) and remains ongoing. While some scholars point to the decline of institutionalized churches in Europe, the growing number of people unaffiliated with religion, or to the replacement of religion by technology as the evidence of secularization (Berger and Luckmann, 1966; Bruce, 2002), others highlight high levels of religiosity in the U.S., fundamentalist movements in Muslim countries, the emergence of New Age spirituality in Europe, and evangelical revivals in Latin America (Berger, 1999; Martin, 2005).

Regardless of the debate's outcome, recent data suggest that changes in religious composition are primarily generational (Pew Research Center, 2018), with younger adults worldwide exhibiting lower religious affiliation and engagement. Scholars have hypothesized reasons such as existential security (Norris and Inglehart, 2004), rising educational levels (Pew Research Center, 2016), or increased religiosity among older people (Bengtson et al., 2015). While generational gaps in religiosity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in Western contexts (Twenge et al., 2015; Maliepaard, Lubbers, and Gijsberts, 2009), South Korea (hereafter Korea) lacks comprehensive research in this area.

Although underexplored, Korea presents a unique case, not only in the sphere of religion. It is a country that has undergon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where at the same time tradition and Confucian ideology are still deeply embedded in its' society (Sleziak, 2013). This combination makes Korea's cultural shifts – particularly those affecting religiosity – distinct and worthy of scholarly attention. Moreover, Korea's rapid economic and cultural changes

have contributed to a growing generational gap, earning it recognition as an industrialized country with significant generational disparities (Inglehart, 1997).

Generational conflicts in Korea have risen over time, affecting areas such as workplaces, politics, and lifestyle choices (Lee, 2023). Scholars have further linked Korea's pressing social issues, such as aging and low birth rates, to these generational divides (Kim, 2024). While studies have explored generational conflicts in politics and workplaces (Patterson, Bae, and Lim, 2013; Park and Park, 2024; Yoon, 2009; Kang, 2005), research on how these disparities manifest in religiosity remains limit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generational cohorts in Korea have differed in religiosity over recent decades, especially within the context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cultural transformation. The research question guiding this study is:

What are the generational differences in religiosity over the past 25 years in South Korea, and how do these differences reflect broader societal transformations?

By analyzing longitudinal changes in devotional patterns, this study seeks to illuminate evolving religious beliefs and their sociological implications. The findings offer insights into the future of religion in Korea and the broader societal attitudes shaped by the growing generational gap.

Ⅱ.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applies generational cohort theory as its theoretical framework. A generational cohort refers to a group of individuals born within a specific range of years who share common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contexts (Lyons and Kuron, 2014; Schermerhorn, 2013). Membership in a generational cohort helps distinguish one cohort from another, as shared experiences related to age, significant life events, and societal transformations unite each group (Lim and Parker, 2020). The theory posits that generational differences arise not only from age but also from the shared influences and experiences of a particular generation (Jones, Murray, and Tapp, 2018). By encountering similar life events, individuals within a cohort develop common attributes,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s. This study suggests that generational shifts are driven primarily by social events rather than biological processes.

The concept of generational cohorts originates from Karl Mannheim's notion of the "generation unit" (Mannheim, 1952). The theory encompasses two primary perspectives. The social force perspective positions individuals within multidimensional and interconnected groups that evolve over time (Gilleard, 2004). The cohort perspective views generations as "collections of people born in a given time period" (Lyons and Kuron, 2014). Despite Manheim (1952) emphasis on formative historical experiences over precise chronological boundaries, various studies have utilized generational theory with birth-year cohorts as an empirical proxy for common experiences (Ryder, 1965; Alwin & McCammon, 2003). Usage of generational cohorts may potentially fail to capture internal cohort heterogeneity and cultural nuances (Pilcher,

1994), yet it is a commonly adopted methodological approach for approximating the influence of events from formative years (Alwin & McCammon, 2003) as it aligns with Manheim's emphasis on generational location.

Although definitions of generational age brackets vary, and many countries have unique generational distinctions, one widely recognized classification is provided by the Pew Research Center (Dimock, 2019). According to their framework, the five main generational groups are: the Silent Generation (born 1928–1945), Baby Boomers (born 1946–1964), Generation X (born 1965–1980), Millennials (born 1981–1996), and Generation Z (born 1997 and onward). Study by Bae and Huh (2025) compared generational timeframes between several countries and concluded that despite small differences most countries follow similar trends, while Kim and Huh (2007) argued that those 2-3 years variances are not significant in generations' classification. In the case of Korea, a distinctive cohort known as Generation 386 consists of those born in the 1960s who, in their youth, experienced student democratic movement and fights for democracy (Park and Park, 2024). Another uniquely Korean generation is 88 million won generation, or those born between 1979 and 1988, who faced serious intergenerational economic inequality in their twenties (Kim, 2024). Despite those distinctive Korean examples, most of the Korean studies and governmental statistical organizations like KOSTAT (2023), use generational classification analogous to the one by Pew Research Center (Kim, Eom and Shim, 2022; Ahn and Lee, 2020).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generational cut-off points are not an exact science; rather, they serve as analytical tools. While generations are commonly identified by their duration, there is no universally

agreed-upon formula for defining the length of these spans (Dimock, 2019). Therefore, it is common to adapt established generational boundaries for use in other national contexts.

1. Generational gap

A generational gap refers to the disparity in personal choices, opinions, and perceptions among different generations, often leading to conflict and strained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and social groups. This divide impacts not only interpersonal relations but also everyday activities, exacerbated by the rapid advancement of modern technologies and a lack of communication between younger and older generations (Buckingham and Willett, 2013). Generational gap perpetuates significant divisions and biases, with clashes manifesting across various domains, like workplaces, political behavior, religiosity and many more (Lüscher and Klimczuk, 2017).

South Korea exhibits a particularly pronounced generational gap compared to other industrialized countries. Younger generations rapidly embrace postmodern values, while older generations continue to uphold traditional ones, resulting in cultural friction in a society with strong uncertainty avoidance (Inglehart, 1997; Hofstede, Hofstede, and Minkov, 2010). Generational value differences, influenced by rapid social transformations, drastically altered the sociocultural landscape, contributing to conflicts and communication challenges (Na,2003). Also, each generation in Korea has experienced a markedly different historical context, leading to divergent growth trajectories and a wider generational gap compared to Western countries (Park and Park, 2018).

Generational conflict is particularly evident in the workplace, where

younger employees often reject traditional workplace hierarchical norms, such as mandatory company dinners or staying at the office until their supervisor leaves (Patterson, Bae, and Lim, 2013; Park and Park, 2018). This tension has given rise to the term *kkondae* (kor. 꼰대), which refers to older individuals displaying condescending attitudes toward younger people (Bu and Lee, 2021). The proliferation of such terms and other expressions used by younger generations to criticize older ones as closed-minded, self-centered, and overly authoritative, highlights the widening generational divide.

Politics is another area where generational cleavages in Korea are prominent (Yoon, 2009). Scholars note that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marked a turning point in Korean politics, as generational divisions became a central issue (Kang, 2005) and Roh Moo Hyun's narrow victory over the conservative candidate Lee Hoi Chang was significantly bolstered by young voters. These tensions have contributed to the growing polarization of political attitudes along generational lines. Political preferences regarding stance on North Korea, America and autonomy vary across cohorts, shaped by different historical and sociopolitical experiences (Yi, 2020). It is crucial to note that these generational divisions go beyond politics and workplace norms, expanding into more personal realms like values, practices and religion – a topic explored further below.

2. Religion in Korea

For centuries, Korean society has been multi-religious, with scholars referring to this coexistence of diverse religious traditions as "Korean Religion" (Kim, 2010). Shamanism, the Korean folk religion, has persisted

since ancient times. During the Three Kingdoms era, Buddhism was introduced from China, followed by Confucianism, which became the state ideology during the Joseon period (Yu, 2012). In the late 18th century Catholicism entered Korea as a result of getting access to Western books, often written by Catholic Church (Seong, 2024). Due to its rejection of Confucian ancestral rites, it was condemned by the noble class and led to mass persecutions of Catholics in 19th century (Rausch, 2018). 1860s gave birth to the new Korean religious movement called Donghak or "Eastern Learning", later renamed as Chondokyo, which combined various religious traditions and played a key role in peasants' rebellions and anti-colonial movements (Young, 2014). Protestantism gained prominenc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spread widely after the Korean War, coexisting with Buddhism and folk beliefs (Kim and Kim, 2014; Yu, 2012).

This pluralistic religious environment has fostered democratic and peaceful coexistence among religions and has been shaped by the country's historical evolution, rapid industrialization, and interactions with Western influences (Yoo and Agadjanian, 2021). Although before industrialization, most Koreans were not formally affiliated with any religion and instead practiced various folk religious traditions, during 1960s when Shamanism began to be seen as outdated, institutional religions grew. In recent years, however, folk beliefs have been recognized again as cultural assets (Kang, 1997; Kim et al., 2009).

Since the 2000s, religious affiliation in Korea has declined due to factors such as secularization, rapid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Gallup Korea, 2015) especially among younger generations (Yoo and Agadjanian, 2021). Some researchers acknowledge Korea as one of the seven most atheist countries in the world (Kasselstrand, Zuckerman,

and Cragun, 2023). However, while religion is important to only 16% of Koreans, spirituality remains widespread, with over half report conducting ancestral rites, holding some sort of spiritual beliefs, meditating, thinking about meaning and purpose of life, and consulting a fortuneteller, signifying a rich spiritual life. (Pew Research Center, 2024).

3. Generational gap in religion

Values and beliefs often vary across age groups, making the generational gap in religion inevitable (Lüscher and Klimczuk, 2017).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are deeply intertwined with generational identities, shaped by formative religious experiences (Pew Research Center, 2016). Previous research indicates that religious affiliation is steadily declining with each generation, while the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ie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s also decreasing (Lipka, 2015) In turn it is observed that each generation is less religious than the one before (Pew Research Center, 2018).

Prominent secularization and declining individual religiosity are often attributed to generational turnover and generations being consistently less religious than their predecessors (Crockett and Voas, 2006; Stolz et al. 2024). Prior research explains the increasing number of young adults with no religious affiliation through factors such as delayed marriage, higher education levels, reactions to church-related scandals, and political backlash against religious rights (Wuthnow, 2007; Schwadel, 2015; Hout and Fischer, 2002; Bottan and Perez-Truglia, 2015). Bengtson et al. (2015) identified two emerging trends: a growing detachment of spirituality from religion among younger generations and a shift in perceptions of the divine. While older generations tend to conceptualize

the divine as a transcendent God, younger generations lean toward viewing it as a more imminent and personal presence.

As previously discussed, generational gaps manifest across many areas and although research on generational differences in religion or religiosity in Korea is limited, growing secularization in Korea is often linked to generational factors (Borowiec, 2017). Younger South Koreans, more educated than their parents, tend to be skeptical of hierarchical religious institutions, let down by clerical scandals and rigid, authoritarian church structures, which fail to address their fundamental needs (Gallup Korea, 2015; Woo, 2016). Jeon (2023) identifies four structural factors driving young adult believers away from the church: success supremacism, privatized faith, exclusiveness, and authoritarianism. This environment discourages younger believers from actively participating in religious activities, further deepening the generational divide.

Ⅲ. Data and methods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four waves of the repeated cross-sectional "Survey on Religion" conducted by Gallup Korea in 1997, 2004, 2014, and 2021. The survey, initiated in 1984, regularly measures Koreans' views on religion, religious activities, institutions, values, and other related issues (Gallup Korea, 2021). Proportional stratified random sampling was employed in each wave, with a margin of error of ±2.5 percentage points at a 95% confidence level.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articipants aged 18 years or older from across the country. Each wave included 1,500 respondents, except for 1997, which included 1,613 participants.

The analysis consisted of two stages. In the first stage,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examine changes in religiosity and religious affiliation across generational cohorts between 1997 and 2021. The second stage employe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to predict religiosity based on generation and other sociodemographic variables for each year.

The dependent variable was religiosity, measured as a binary response to the question, "Do you have a religion?" (responses: "I do not" or "I do"). Religiosity is a multidimensional concept encompassing aspects such as religious belief, practice, and identity, all of which are intertwined (De Jong, Faulkner, and Warland, 1976). Hill and Hood (1999) have collected more than one hundred different scales of measuring various aspects of religiosity, with few-dimensional frameworks like the one by Glock (1962). Although numerous studies (Yang and McPhail, 2023; Lemos et al., 2019) include multiple dimensions in their measurement of religiosity, our study focused primarily on religious affiliation or lack thereof as a representative dimension, leaving other aspects for future exploration. Past research confirms that affiliational status can be considered a measure of religiosity and was used in various studies (Shim, 2021; Orellano and Chuvieco, 2022), proving to be computationally efficient.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single-item operationalization has also limitations: it fails to capture important aspects of religious life like intensity or salience (Glock and Stark, 1965; Hill and Hood, 1999) and potentially mask the internal validation of religious experience (Voas, 2009; Chaves, 2010).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Unit: N (%)

		1997	2004	2014	2021
Sex	Male	789 (48.9%)	768 (51.2%)	750 (50.0%)	750 (50.0%)
	Female	824 (51.1%)	732 (48.8%)	750 (50.0%)	750 (50.0%)
Marital status	Single	256 (15.9%)	408 (23.7%)	355 (23.7%)	479 (31.9%)
	Married	1357 (84.1%)	1092 (72.8%)	1145 (76.3%)	973 (64.9%)
	Divorced	-	-	-	48 (3.2%)
Generation	Gen Z	-	-	-	137 (9.1%)
	Millennial	-	237 (15.8%)	385 (25.7%)	499 (33.3%)
	Gen X	551 (34.2%)	545 (36.3%)	501 (33.4%)	452 (30.1%)
	Boomer	768 (47.6%)	718 (47.9%)	525 (35.0%)	383 (25.5%)
	Silent Gen	294 (18.2%)	-	89 (5.9%)	29 (1.9%)
Religion	Buddhism	290 (18.0%)	355 (23.7%)	280 (18.7%)	219 (14.6%)
	Protestantism	333 (20.6%)	322 (21.5%)	347 (23.1%)	264 (17.6%)
	Catholicism	123 (7.6%)	103 (6.9%)	104 (6.9%)	85 (5.7%)
	Other	16 (1.0%)	12 (0.8%)	4 (0.3%)	6 (0.4%)
	No religion	851 (52.8%)	708 (47.2%)	765 (51.0%)	926 (61.7%)
Education	Primary school or less	233 (14.4%)	164 (10.9%)	-	-
	Middle school	205 (12.7%)	171 (11.4%)	248 (16.5%)	145 (9.7%)
	High school	784 (48.6%)	663 (44.2%)	609 (40.6%)	622 (41.5%)
	College or more	391 (24.2%)	502 (33.5%)	643 (42.9%)	733 (48.9%)
Occupation	Agriculture/forestry/fishery	154 (9.5%)	141 (9.4%)	28 (1.9%)	22 (1.5%)
	Business owner	229 (14.2%)	247 (16.5%)	202 (13.5%)	181 (12.1%)
	Blue collar	278 (17.2%)	320 (21.3%)	369 (24.6%)	556 (37.1%)
	White collar	236 (14.6%)	274 (18.3%)	377 (25.1%)	334 (22.3%)
	Housewife	572 (35.5%)	297 (19.8%)	323 (21.5%)	225 (15.0%)
	Student/unemployed/other	144 (8.9%)	221 (14.7%)	201 (13.4%)	182 (12.1%)
Place of residence	Large city	767 (47.6%)	729 (48.6%)	670 (44.7%)	680 (45.3%)
	Middle-sized/small city	506 (31.4%)	610 (40.7%)	651 (43.4%)	710 (47.3%)
	Village/ rural area	340 (21.1%)	161 (10.7%)	179 (11.9%)	110 (7.3%)

Notes: Unit: N (%)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generational cohort, year of study, and other sociodemographic predictors identified in prior research, such as gender (Argyle and Beit-Hallahmi, 1975; Francis, 1997), marital status (Stolzenberg et al., 1995; Thornton, Axinn, and Hill, 1992), educational level (McFarland, Wright, and Weakliem, 2011), occupation (Sherkat, 2012), and region size (Chalfant and Heller, 1991). Generational cohorts were calculated based on participants' ages and categorized using age brackets defined by the Pew Research Center (2019) taking into consideration its similarity to other generational studies in Korea, as explained before in the Literature section. Although the 2004 sample did not include exact birth years, of the respondents, approximations based on age ranges were used. While acknowledging the fluidity of generational cutoff points, we ensured this did not compromise the integrity of the analysis.

For the first stage of analysis, religious affiliation was categorized into Buddhism, Protestantism, Catholicism, Other, and No Affiliation.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version 25.0,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set at $p<0.05$. Above Table 1 summarizes the data using absolute values and percentages.

Ⅳ. Results

1. Changes in religiosity

The first part of our analysis explored changes in religiosity percentages across generations over time. As shown in Figure 1, only

believers in the Silent Generation have steadily increased over the past 25 years. In contrast, religiosity among Generation X and Boomers initially increased but subsequently declined by approximately 10%.

The most significant change was observed in Millennials, whose religiosity, initially over 40% in 2004, declined continuously to approximately 30% by 2021. Among Korean Generation Z, religiosity has been the lowest of all generations since their inclusion in the study. By 2021, only approximately 20% of individuals in this cohort reported having a religion. This finding aligns with the global trend of Generation Z being the least religious compared to other cohorts (Manalang, 2021). Overall, we observed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ligiosity percentages between the two oldest and two youngest generations from 1997 to 2021. These differences have continued to widen, indicating an intensifying generational gap in religious affil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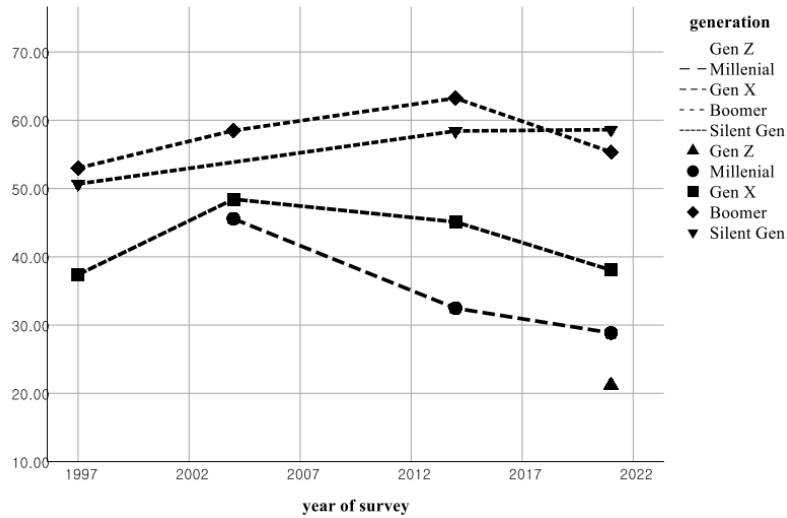

〈Figure 1〉 Level of Religiosity across Generations from 1997 to 2021

2. Changes in religious affiliation across generational cohorts

Next, we analyzed descriptive statistics regarding religious affiliations. Table 2 summarizes the changes in religious affiliation across generational cohorts in Korea from 1997 to 2021, expressed as percentages.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the oldest and youngest generations.

The two oldest cohorts, the Silent Generation and Boomers, have predominantly identified as Buddhists and Protestants over the years, with little change in their religious affiliations, aside from slight fluctuations in membership between these two denominations. While Generation X has generally been non-religious throughout the past 25 years, approximately 20% of this cohort identified as Protestant between 1997 and 2014. However, by 2021, there was a sharp decline in the percentage of Protestants and a corresponding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non-believers.

Similarly, Millennials also showed a decline in Protestant affiliation, but the most significant change for this group was in Buddhism, which dropped from nearly 15% in 2004 to 5% in 2021. Interestingly, the percentage of Catholics remained almost unchanged across all generations. As with religiosity, Generation Z predominantly identifies as “no religion,” with nearly 80% reporting no religious affiliation in 2021, compared to 45% of Boomers and approximately 70% of Millennials.

〈Table 2〉 Changes in religious denominations across generational cohorts 1997 – 2021

Unit: Percentage (%)

		Buddhism	Protestantism	Catholicism	Other	No Religion
1997	Gen X	10.7	19.8	6.5	0.4	62.6
	Boomer	19.8	22.9	9.0	1.3	47.0
	Silent Gen	26.9	16.3	6.1	1.4	49.3
2004	Millennial	14.8	24.1	6.8	0.0	54.4
	Gen X	19.1	22.8	6.1	0.6	51.6
	Boomer	30.1	19.6	7.5	1.3	41.5
2014	Millennial	8.6	19.5	4.4	0.0	67.5
	Gen X	14.4	22.0	8.4	0.4	54.9
	Boomer	29.1	26.3	7.4	0.4	36.8
	Silent Gen	24.7	27.0	6.7	0.0	41.6
2021	Gen Z	4.4	11.7	4.4	0.7	78.8
	Millennial	5.4	19.2	3.8	0.4	71.1
	Gen X	17.0	13.9	6.4	0.7	61.9
	Boomer	26.4	21.4	7.6	0.0	44.6
	Silent Gen	27.6	24.1	6.9	0.0	41.4

3. Logistic regression predicting religiosity

The final part of our analysis involved conducting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to predict religiosity based on generational cohorts and other socioeconomic variables over the past 25 years. The results are presented in Table 3. Regarding generational cohorts, in 1997, only Boomers and the Silent Generation showed higher religiosity than Generation X. By 2021, membership in almost any other generation

was associated with higher religiosity than Generation Z. Specifically, Boomers and the Silent Generation saw 5.5- and 6.5-fold increases in religiosity,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youngest generation. Moreover, the data indicates that not only are older generations becoming more likely to be religious over time, but the odds of this happening also increase each year.

In terms of gender, women were more likely to be religious than men throughout the years, which aligns with previous research (Pew Research Center, 2016). However, while in 1997 women were 2.4 times more likely to be religious, this number decreased to 1.5 in 2021. A statistical comparison of the gender coefficients using the formula suggested by Clogg, Petkova, and Haritou (1995) confirmed that this change was significant ($z = 2.25$, $p = 0.024$), signifying a narrowing gender gap in religious affiliation over time. Subsequently, this shrinking gender disparity implies that the Korean population, in general, is secularizing. Although previous studies from other regions indicate that married people report higher levels of religious importance and greater service attendance than their unmarried counterparts (Marino and Mellencamp, 2022), our results indicate no such correlation in Korea over the last 25 years.

Regarding education, previous research has yielded contrasting conclusions about its relationship with religiosity. Gallup International found that religious individuals tend to have lower levels of education, though they are generally present at all educational levels (2015). In some countries, higher education has been linked to a decline in religiosity, but i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Sweden, New Zealand, and Russia, higher education has positively impacted religiosity due to greater engagement in organizations, including religious ones

(Schwadel, 2015). However, our results indicate that education has not been associated with religiosity in Korea over the past 25 years.

Historically, housewives, students, and unemployed individuals were predicted to be more religious than those employed in agriculture, forestry, or fishery.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which suggests that economic insecurity may correlate with higher religiosity (Norris and Inglehart, 2004). In contrast, by 2021, all occupations were predicted to be more religious than those in agriculture, forestry, or fishing. This shift can be explained by the declining number of Koreans employed in these sectors, particularly as they avoid so-called 3D jobs (dirty, dangerous, and difficult) (Kim and Park, 2006). Finally, the size of the place of residence did not statistically predict religiosity in Korea over the past 25 years.

〈Table 3〉 Logistic Regression Results of Religiosity and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Backgrounds

	1997			2004			2014			2021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Generation[a]												
Millennial	-	-	-	-	-	-	-	-	-	.265	.273	1.304
Gen X	-	-	-	-.144	.233	.866	.565*	.200	1.760	.687*	.305	1.989
Boomer	.789***	.142	2.201	.309	.266	1.362	1.388***	.230	4.007	1.462***	.324	4.313
Silent Gen	.867***	.208	2.401	-	-	-	1.238***	.330	3.449	1.621**	.511	5.059
Sex[b]												
Female	.892***	.158	2.440	.622***	.129	1.863	.562***	.130	1.753	.438***	.125	1.550
Marital status[c]												
Single	-.006	.206	.994	.359	.189	1.432	-.098	.202	.907	.111	.176	1.117
Divorced	-	-	-	-	-	-	-	-	-	-.038	.363	.962
Education[d]												
Middle school	-.351	.220	.704	-.098	.242	.907	-	-	-	-	-	-
High school	-.157	.205	.855	.077	.219	1.080	.142	.181	1.153	-.199	.224	.819
College or more	-.022	.236	.979	.271	.237	1.312	.126	.209	1.134	.011	.256	1.011
Occupation[e]												
Business owner	.485	.257	1.624	.215	.262	1.240	-.094	.441	.910	1.764**	.599	5.838
Blue collar	.350	.253	1.419	.275	.257	1.316	-.026	.432	.975	1.533**	.591	4.634
White collar	.518	.270	1.679	.152	.270	1.164	-.016	.439	.984	1.606**	.601	4.984
Housewife	.496*	.253	1.642	.491	.261	1.634	-.107	.441	.899	1.532*	.605	4.627
Othersr	.679*	.304	1.973	.232	.303	1.261	-.128	.452	.880	1.418*	.616	4.130
Place of residence[f]												
Middle-sized/small city	.040	.120	1.041	-.088	.115	.916	.18	.116	1.199	-.134	.116	.875
Village/ rural area	-.092	.156	.912	-.026	.209	.974	.525*	.183	1.690	.339	.224	1.390
Constant	1.415***	.334	.243	-.869*	.351	.419	-1.188*	.483	.305	2.932***	.672	.053
N		1613			1500			1500			1500	
2Log Likelihood		2104.932			1992.765			1952.302			1872.398	
X^2		7.454			8.666			13.935			8.990	

Note: Reference category: [a]Youngest generation in each year; [b]Male; [c]Married; [d]Graduation of primary school or less; [e]Job in agriculture/forestry/fishery; [f]Large city.

*p < .05; **p < .01; ***p < .001

V. Discussion

This study revealed several key findings about the general differences in religiosity in Korea and how these differences reflect broader social transformations. First, we identified significant widening discrepancies in religiosity, especially between the two oldest and two youngest generations, and these differences have continued to widen over time in Korea. Generation Z exhibited significantly lower religiosity than any previous generation, emphasizing the growing generational gap in religious affiliation. Although the design of this study does not allow for straightforward causal claims, th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generational cohort theory, as distinct generational identities continue to shape patterns of religious affiliation in Korea.

Second, we observed changes in religious affiliations over time across different Korean generational cohorts. While Catholicism remained statistically stable, particularly among older Koreans, Buddhism and Christianity were gradually replaced by "no affiliation" in younger cohorts. Catholicism's resilience can be attributed to its involvement in the democratic movement of the 70s and 80s, as well as its welfare initiatives, which helped it earn high social respect (Lankov, 2014) and can explain its stability across generations and years. In contrast, Protestantism and Buddhism are viewed as less trustworthy by many Koreans due to their involvement in corruption scandals, political controversies and internal conflicts (Hong, 2018; Kim et al., 2019).

Another crucial finding was that older Koreans were more likely to be religious, with increased odds of older individuals being significantly more religious compared to younger ones. This could be due to cohort differences, with older generations growing up in

a more religious environment, or religiosity increasing later in life (Wilhelm, Rooney, and Tempel, 2007; Moberg, 2005). Does this mean that as Korea's population ages, it will also become more spiritual? Not necessarily. Korea's societal levels of religiosity might continue to decline, even when today's younger generations age, since it is known that younger generations worldwide are less religious than their older counterparts (Pew Research Center, 2018).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assumptions of generational cohort theory, as the persistent and growing religious differences between generations point to the potential connection of cohort-specific influences on religious affiliation in Korea.

Regarding sociodemographic factors, only gender and occup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religiosity. Unlike findings from other countries, marital status, education, and place of residence did not significantly predict religiosity among generational cohorts in Korea over the past 25 years. These results reflect broader societal transformations in Korea. First, the growing generational gap in religiosity demonstrates an embrace of secular, individualistic, and postmodern values - a move away from prevalent till now tradition (Benner, 2022). Second, the decline in religiosity among younger generations may also be tied to low trust in religious institutions, particularly amplified by pandemic-era scandals (Kye and Hwang, 2020). Lastly, the churches' hierarchical and sometimes authoritarian cultures, often influenced by Confucianism (Park, 2007) is thought to alienate younger generations, raised in a more democratic environment.

The decreasing gender gap in religiosity reflects another societal change in Korea. Although women are still more likely to be religious than men, their odds have steadily declined from 2.5 in 1997 to 1.5

in 2021. This phenomenon occurs alongside with South Korea's broadly recognized significant gender disparities in various areas and growing women's rights movement (WEF, 2023). Patriarchal Confucian norms, misogyny and gender traditionalism are still widely present in Korean religious institutions, leaving women alienated and misrepresented (Hwang, 2019; Cho, 2022). Both Buddhism and Christianity have been criticized for gender-essentialist norms and male dominance (Jeon, 2023). As women gain autonomy and become increasingly aware of their rights, the patriarchal, exclusionary, and outdated structures of Korean religious organizations lose their appeal.

Lastly, shifts in occupation-related religiosity further underscore broader societal transformations in Korea. Agricultural workers once accounted for a sizeable portion of the workforce; however, they became a minority by 2021. Th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indicating lower odds of religiosity among this group, rather than decline in rural religiosity, points to the widespread avoidance of these jobs by Koreans. Reluctance toward so-called *3D jobs* (dirty, dangerous, or difficult), even amid economic instability, resulted in increasing reliance on foreign workers from South-East Asia (Kim and Park, 2006). At the same time declining birthrates and aging population led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automation technologies, such as AI and robotics, across various industries to address the labor shortage (Harrison, Sakudo, and Eom, 2023), which further align with secular trends.

The findings of our study should be seen in the light of several limitations. First, since the Gallup survey provides repeated cross-sectional data, rather than the panel design, it makes it difficult to distinguish fully between cohort, age, or period-specific effects and their impact on generational differences. Therefore, the study cannot

establish causal relationships and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must be done with caution. Second, the study has used Pew Research Center generation cutoff points which aids cross national comparisons and aligns with previous studies but cannot however fully reflect unique generational experiences in Korea. Third, religiosity was measured using only a binary variable – affiliation, which cannot fully capture multiple dimensions of religiosity, such as beliefs, participation, and personal faith, potentially leading to oversimplification of the result's interpretation. Future research is encouraged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especially by including Korea-specific generational frameworks or multiple dimensions of religiosity measurement.

In sum, our study aligns with global trends, highlighting both secularization and the increase in religious "nones" among youth. It has also demonstrated a growing gap in religiosity between generations,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fluencing religiosity, linking these findings to broader societal transformations. While the precise relationship between generational gaps and religious disparities has not yet been fully explained, prior research has shown that changes in values and beliefs are associated with widening generational divides and social separation (Na and Duckitt, 2003). Similarly, we hypothesize that a larger generation gap may contribute to younger individuals distancing themselves from their parents. Investigating this relationship could serve as a valuable starting point for future studies in the sociology of religion in Korea.

2025년 6월 29일 접수
2025년 8월 19일 수정 완료
2025년 7월 18일 게재 확정

References

Ahn, Sung Mi, and Hyunsook Zin Lee. 2020. “Generational Differences between Nurses Focus on Work Value and Job Engage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9): 199-210.

Alwin, Duane F., & McCammon, Ryan J. 2003. “Generations, cohorts, and social change.” In J. Mortimer & M. Shanahan (Eds.), *Handbook of the Life Course*. Springer.

Argyle, Michael and Benjamin Beit-Hallahmi. 1975. *The Social Psychology of Religion.* Oxford: Routledge & Kegan Paul.

Bae, Eun-Ji & Huh, Keun. 2025. “Perception of Generation Z, Y, X, and Baby Boomers on Expansion of Lawn Uses in South Korea.” *Journal of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28: 97-106.

Bengtson, Vern L., Merril Silverstein, Norella M. Putney and Susan C. Harris. 2015. “Does Religiousness Increase with Age? Age Change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over 35 Year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4(2): 363-79.

Benner, Mats. 2022. “South Korea: Straddling Tradition and Modernity” In *Asia’s Rising Research Dominance: Universities and State Building*. Edward Elgar Publishing.

Berger, Peter L., and Thomas Luckmann.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Berger, Peter L., ed. 1999.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Borowiec, Steven. 2017. “Why Young South Koreans Are Turning Away from Religion.”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features

/2017/5/28/why-young-south-koreans-are-turning-away-from-religion).

Bottan, Nicolas L. and Ricardo Perez-Truglia. 2015. "Losing My Religion: The Effects of Religious Scandals on Religious Participation and Charitable Giv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29: 106-19.

Bruce, Steve. 2002. *God is Dead: Secularization in the West.* Malden, MA: Blackwell.

Bu, Hyang-suk and Song Yi Lee. 2021. "A Study on Koreans' Perception of the Word Kkondae." *Sage Open* 11(4).

Buckingham, David and Rebekah Willett. 2006. *Digital Generations: Children, Young People, and New Media.*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halfant, H. Paul and Peter L. Heller. 1991. "Rural/Urban Versus Regional Differences in Religiosity."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3(1): 76-86.

Chaves, Mark. 2010. "Rain Dances in the Dry Season: Overcoming the Religious Congruence Fallac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9*(1): 1-14.

Cho, Anna. 2022. "Korean Women's Theology and Misogyny." *HTS Theological Studies* 78(2): 1-8.

Clogg, Clifford C., Eva Petkova, and Adamantios Haritou. 1995. "Statistical Methods for Comparing Regression Coefficients Between Model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5): 1261-93.

Crockett, Alasdair and David Voas. 2006. "Generations of Decline: Religious Change in 20th-Century Britai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5(4): 567-84.

De Jong, Gordon F., Joseph E. Faulkner and Rex H. Warland. 1976. "Dimensions of Religiosity Reconsidered: Evidence from a

Cross-Cultural Study." *Social Forces* 54(4): 866-89.

Dimock, Michael. 2019. "Defining Generations: Where Millennials End and Generation Z Begins."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19/01/17/where-millennials-end-and-generation-z-begins/).

Francis, Leslie J. 1997. "The Psychology of Gender Differences in Religion: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Religion* 27(1): 81-96.

Gallup Korea. 2015. *The Religion of Korea 1984-2014.* Gallup Korea Survey Institute.

Gallup Korea. 2021. *Religion of Koreans 1984-2021 (1): Religious Status*. Gallup Korea Survey Institute.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Gilleard, Chris. 2004. "Cohorts and Generations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Social Theory & Health* 2(1): 106-19.

Glock, Charles Y. 1962. "On the study of religious commitment." *Religious Education, 57*(4): 98-110.

Glock, Charles Y. and Rodney Stark. 1965. *Religion and Society in Tension*. Chicago: Rand McNally.

Hackett, Conrad, Caryle Murphy and David McClendon. 2016. *The Gender Gap in Religion Around the World.* Pew Research Center.

Harrison, Scott, Momo Sakudo and Tae Yeon Eom. 2023. "Robots bring profit—and unease—to South Korea's shaky labour market."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 (https://www.asiapacific.ca/sites/default/files/publication-pdf/Insight_NEA_JAN31_V2.pdf).

Hill, Peter C., and Ralph W. Hood Jr. 1999. *Measures of Religiosity*.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Hofstede, Geert, Gert Jan Hofstede and Michael Minkov. 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3rd ed. New

York: McGraw-Hill Professional.

Hong, Seung Min. 2018. "Exegetical Resistance: The Bible and Protestant Critical Insiders in South Korea." *Religions* 9(10): 301.

Hout, Michael and Claude S. Fischer. 2002. "Why More Americans Have No Religious Preference: Politics and Gener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165-90.

Hwang, Jung-Mee. 2019. "Gendering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Public Feminism and Politics of Identity." *Journal of Korean Welfare State and Social Policy* 3(1): 43-65.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145-146.

Jeon, Nanum. 2023. "Swapping Gender Traditionalism: Christianity, Buddhism, and Gender Ideology in South Korea."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62(2): 336-58.

Jones, Janet S., Samantha R. Murray, and Shelley R. Tapp. 2018. "Generational Differences in the Workplace." *Journal of Business Diversity* 18(2).

Kang, In Cheol. 1997. "A study on the Korean 'Religious Nones'". *Society and History* 52: 87-119.

Kang, Won-Taek. 2005. "Generation, Ideology and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n Politics." *Korean Party Studies Review* 4(2): 193-217.

Kasselstrand, Isabella, Phil Zuckerman and Ryan T. Cragun. 2023. *Beyond Doubt: The Secularization of Society* 7. New York: NYU Press.

Kim, Andrew Eungi and Innwon Park. 2006. "Changing Trends of Work in South Korea: The Rapid Growth of Underemployment and Job Insecurity." *Asian Survey* 46(3): 437-56.

Kim, Andrew Eungi. 2005.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Work in Korea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Late 1970s.” *Review of Korean Studies* 8(1): 131-54.

Kim, Chongsuh. 2010. “The Concept of ‘Korean Religion’ and Religious Stud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Religions* 1(1): 23-41.

Kim, Hwa Young. 2024. “A study on generational theory in Korea and Japan.” 日本硏究 60: 227-248.

Kim, Kyungrae, Eunyoung Kim, Wangmo Seo and Cheonghwan Park. 2019. “Some Contemporary Dilemmas of Korean Buddhism: A Critical Review of the Jogye Order’s 2018 Periodic Report.” *Religions* 10(4): 234.

Kim, Na-young. 2024. “Number of Marriages in S. Korea Down 40 pct Over Past 10 Yrs, Driving Down Fertility Rate.” *Yonhap News*. (https://en.yna.co.kr/view/AEN20240303001500320).

Kim, Sebastian C. H. and Kirsteen Kim. 2014. *A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m, Soojin, Juhee Eom, and Jiwon Shim. 2022. “A Comparative Study on Intention to Use Digital Therapeutics: MZ Generation and Baby Boomers’ Digital Therapeutics Use Intentio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5): 9556.

Kim, Woo-Song and Huh, Eun Jeong. 2007. “Comparing consumption-related values and lifestyles of baby boomers, generation X, and generation Y.”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0(4): 31-53.

Kye, Bongoh and Sun-Jae Hwang. 2020. “Social Trust in the Midst of Pandemic Crisis: Implications from COVID-19 of South Korea.”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68.

Lankov, Andrei. 2014. “Why Is Catholicism Important in South Korea?”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14/8/18/why-is-catholicism-important-in-south-korea).

Lee, Jaehyuck. 1998. "Democracy, Social Capital, and Social Trust." *Gyegan Sasang* 37: 65-93.

Lee, Seung Beom. 2023. "Gen MZ and Generational Conflicts in South Korea." *The UOS Times*. (https://time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0588).

Lemos, Carlos Miguel, Gore, Ross Joseph, Puga-Gonzalez, Ivan, Shults, F. LeRon. 2019. "Dimensionality and factorial invariance of religiosity among Christians and the religiously unaffiliated: A cross-cultural analys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PLoS ONE* 14(5): 0216352.

Lim, Patrick and Adrian Parker. 2020. *Mentoring Millennials in an Asian Context: Talent Management Insights from Singapore.* Bingley: Emerald Publishing Limited.

Lipka, Michael. 2015. "Millennials Increasingly Are Driving Growth of 'Nones'."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5/05/12/millennials-increasingly-are-driving-growth-of-nones/).

Lüscher, Kur, and Andrzej Klimczuk, eds. 2017. *Generation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Generational Policy: A Multilingual Compendium, 17 Languages*. Universität Konstanz, Konstanz.

Lyons, Sean and Lisa Kuron. 2014. "Generational Differences in the Workplace: A Review of the Evidence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5(1): 139-157.

Maliepaard, Mieke, Marcel Lubbers and Mérove Gijsberts. 2009. "Generational Differences in Ethnic and Religious Attachment and Their Interrelation. A Study among Muslim Minorities in

the Netherlands." *Ethnic and Racial Studies* 33(3): 451-72.

Manalang, Aprilfaye T. 2021. "Generation Z, Minority Millennials and Disaffiliation from Religious Communities: Not Belonging and the Cultural Cost of Unbelief."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Research on Religion* 17: 1-24.

Mannheim, Karl.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edited by Paul Kecskemeti, 276-320.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Marino, Francesca A. and Kagan A. Mellencamp. 2022. *Marital Status Variation in Religiosity among Older Women and Men.* Family Profiles. Bowling Green, OH: National Center for Family & Marriage Research.

Martin, David. 2005. *On Secularization: Towards a Revised General Theory.* Routledge.

McFarland, Michael J., Bradley R. E. Wright and David L. Weakliem. 2010. "Educational Attainment and Religiosity: Exploring Variations by Religious Tradition." *Sociology of Religion* 72(2): 166-88.

Moberg, David O. 2005. "Research in Spirituality, Religion, and Ag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5(1-2): 11-40.

Na, Eun-Yeong and John Duckitt. 2003. "Value Consensus and Diversity between Generations and Gende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2(1-3): 411-35.

Na, Eun-Yeong, and Yu-Ri Cha. 2014. "Trends of Value Changes in Korea: Comparison of the Survey Results of 1979, 1998 and 2010." *Korean Social Sciences Review* 4(1): 361-414.

Norris, Pippa, and Ronald Inglehart. 2004. *Sacred and Secular: Religion and Politics Worldwide.* Cambridge Studies in Social Theory, Religion an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ellano, Anabel, and Emilio Chuvieco. 2022.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Religious Affiliation, External and Internal Behavioural Factors, and Personal Carbon Footprint". *Religions* 13(5): 416.

Park, Sang Un. 2007.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unday Worship in Korean Protestant Churches: Focusing o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0(1): 51-65.

Park, Sohee and Sunyoung Park. 2024. "Generational differences in work values in the Korean Government sector." *European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48(1/2): 149-61.

Park, Sunyoung and Sohee Park. 2018. "Exploring the Generation Gap in the Workplace in South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21: 276-83.

Patterson, Louise, Seong-O Bae and Jung-Yeon Lim. 2013. "Gender equality in Korean firms: Recent evidence from HR practitioners." Asia Pacific Journal of Human Resources 51(3): 364-381.

Pew Research Center. 2015. *America's Changing Religious Landscape.* United States. (https://www.pewresearch.org/wp-content/uploads/sites/20/2015/05/RLS-08-26-full-report.pdf).

Pew Research Center. 2016. *One-in-Five U.S. Adults Were Raised in Interfaith Homes.* United States.

Pew Research Center. 2018. "The Age Gap in Religion Around the World." Pew Research Center. Retrieved November 13, 2024.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18/06/13/the-age-gap-in-religion-around-the-world/).

Pew Research Center. 2024.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East Asian Societies.*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24/06/19/religion-and-spirituality-in-east-asian-societies/).

Pilcher, Jane. 1994. "Mannheim's sociology of generations: An undervalued

legac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5(3): 481-495.

Rausch, Franklin. 2018. "Catholic Christianity in Korean History."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Asian History.*

Ryder, Norman B.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6): 843-861.

Schermerhorn, John R. 2013. *Management.* 12th ed. Hoboken, NJ: John Wiley and Sons.

Schwadel, Philip. 2015. "Explaining Cross-National Variation in the Effect of Higher Education on Religiosit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4(2): 402-18.

Seong, Shinhyung. 2024. "Formation of Korean Christianity through the Banning of Ancestral Rites". *Religions* 15(3): 280.

Sherkat, Darren E. 2012. "Religion and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In *Religion, Work and Inequality*, edited by Lisa A. Keister, John McCarthy and Roger Finke, 75-102.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Work.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Shim, Jae-Mahn. 2021. "Religiosity and Individual Agency: Denominational Affiliation, Religious Action, and Sense of Control (SOC) in Life" *Religions,* 12(2): 117.

Sleziak, Tomasz. 2013. "The Role of Confucianism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Annual of Oriental Studies - Rocznik Orientalistyczny* LXVI: 27-46.

Song, Francis Jae-ryong. 2019. "Why Young Adult Believers Are Turning Away from Religions: With a Focus on Religious Congregations in Downtown Seoul." *Religions* 10(9): 497.

Statistics Korea. 2024. "KOSTAT Statistics Plus. Vol. 25, Spring 2024." Daejeon: Statistics Korea.

Stolz, Jörg, Oliver Lipps, David Voas and Jean-Philippe Antonietti.

2024. "Can We Explain the Generation Gap in Churchgoing?"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63(4): 809-29.

Stolzenberg, Ross M., Mary Blair-Loy and Linda J. Waite. 1995. "Religious Participation in Early Adulthood: Age and Family Life Cycle Effects on Church Member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1): 84-103.

Thornton, Arland, William G. Axinn and Daniel H. Hill. 1992. "Reciprocal Effects of Religiosity, Cohabitation, and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3): 628-51.

Twenge, Jean M., Julie J. Exline, Joshua B. Grubbs, Ramya Sastry and W. Keith Campbell. 2015. "Generational and Time Period Differences in American Adolescents' Religious Orientation, 1966-2014." *PLOS ONE* 10(5): e0121454.

Voas, David. 2009. "The Rise and Fall of Fuzzy Fidelity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

Wilhelm, Mark O., Patrick M. Rooney and Eugene R. Tempel. 2007. "Changes in Religious Giving Reflect Changes in Involvement: Age and Cohort Effects in Religious Giving, Secular Giving, and Attendan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6(2): 217-32.

WIN Gallup International. 2015. *Losing Our Religion: Two Thirds of People Still Claim to Be Religious.* WIN/Gallup International.

Woo, Hai Ran. 2016. "Fluid religion as contemporary religious phenomena". *Religion and Culture* 30: 33-65.

World Economic Forum. 2023. *Global Gender Gap Report 2023.* Geneva: WEF.

Wuthnow, Robert. 2007. *After the Baby Boomers: How Twenty- and Thirty-Somethings Are Shaping the Future of American Relig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Yang, Fenggang. and McPhail, Brian. L. 2023. "Measuring Religiosity of East Asians: Multiple Religious Belonging, Believing, and Practicing." *J Sci Study Relig* 62: 221-241.

Yi, Sung B. 2020. "Generational Differences In South Korea: Impacts On The U.S.- ROK Alliance" Master's thesis, Naval Postgraduate School.

Yoon, Sang-Chul. 2009. "Generation Politics and Political Cleavage: Appearance and Fadeout since 1997." *Economy and Society* 81: 61-88.

Young, Carl F. 2014. *Eastern Learning and the Heavenly Way: The Tonghak and Chondogyo Movements and the Twilight of Korean Independence*. University of Hawai'i Press.

Yu, Chai-Shin. 2012. *The New History of Korean Civilization*. Bloomington: iUniverse.

한국사회의 변화와 세대별 종교성 차이

레나타 아니엘라 지오브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요 약

이 연구는 한국 내 세대별 종교성 차이를 평가하고, 이러한 변화가 보다 광범위한 사회학적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97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갤럽 반복 단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세대 집단과 기타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바탕으로 종교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는 종교성에 있어 지속적인 격차가 존재하며, 그 간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더 높은 종교성 수준을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1997년에는 베이비붐 세대만이 젊은 세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종교성을 보였으나, 2021년에는 모든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더 높은 종교성을 보였다. 이러한 세대별 추세는 단순한 연령이나 생애주기 효과를 넘어서, 변화하는 문화적 가치, 개인주의의 확산, 청년층의 세속화 경향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한국의 종교 지형이 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급속한 근대화와 유교 전통이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세대별 종교성은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사회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종교성, 세대 차이, 종교 동향, 세대간 격차, 한국 사회, 사회 변동

한국사회 제26집 2호(2025년): pp.71-118

한국 기업의 고령 가족 돌봄 지원제도*

김 수 한** · 우 하 진***

요 약

한국 사회는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의 가족친화정책은 여전히 저출산 대응과 자녀 돌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비해 고령자 돌봄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응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기업의 고령 가족 돌봄 지원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 맞벌이 부부의 부모 돌봄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과 외국계 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고령 가족 돌봄 지원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충처리 제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가정 지원, 여성휴게공간과 수유실 설치 등 다양한 돌봄 요구를 수용하는 조직문화가 제도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생애 전반의 다양한 돌봄 요구를 반영하는 통합적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령자 돌봄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향과 가족친화정책의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주제어: 고령화, 가족 돌봄, 다양성, 가족친화제도, 기업

---

* 이 연구의 일부는 2024년 6월 20일 아산사회복지재단 창립 47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복지와 공동체〉, 2024년 12월 17일 〈2024 Tri-University Conference: Population, Family and Social Problems in East Asia〉에서 발표되었다. 논평을 주신 서울시립대학교 이준영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정소연 교수께 감사드린다. 심사과정에서 세심하고 유익한 제언을 주신 논평자들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kimsoohan9@korea.ac.kr)

*** 공동저자,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appletea7546@korea.ac.kr)

Ⅰ. 서론

노인 돌봄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한국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70년 3.1%에서 2000년 7.2%로 늘었고, 2024년에는 19.2%로 증가했다. 2025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3%에 달해, 고령자의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통계청, 2025a). 최근 발간된 UN 보고서에서는 2050년 한국의 65세 인구 비율이 약 40%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United Nations, 2023). 고령 인구의 증가는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고, 직장인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령화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와 돌봄에 대한 가족의 어려움이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인지능력이 감소하고, 치매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건강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2023년 실시된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86.1%가 만성질병이 있고, 노인 1명당 평균 2.2개의 만성질병이 있다(강은나·김혜수·정찬우·김세진·이선희·주보혜·황남희·김경래·이혜정·최경덕, 2023). 2020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17%가량이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고 응답했으며, 2023년 조사에서는 이미 돌봄 지원을 받는 노인 중에서도 18.3%가 돌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강은나 외, 2023; 김여진, 2023).

고령 부모 혹은 고령 배우자 돌봄에 대한 가족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업과 일터의 복지 제도는 충분하지 않다.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의 가족 관련 복지정책은 출산과 육아의 책임이 있는 부모의 일-가족 양립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한국 기업에서 제공하는 가족친화제도 및 정부의 가족친화기업인증 사업은 임신기 단축 근로, 출산휴직, 보육 및 수유 시설, 육아휴직, 자녀양육수당, 취학자녀 돌봄 등을 제공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원정, 2020). 반면 배우자 돌봄 및 고령자 부모 돌봄과 관련된 복지에 적극적인 기업은 드물다.

학계 및 연구자들의 관심도 자녀 돌봄에 편중되어 있다. 일-가족 양립과

일-삶 균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하는 부모, 특히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어려움과 이를 줄이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중년 이후 노동자들이 겪는 고령 가족 돌봄의 부담은 여전히 정책과 연구의 주요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다. 노동자들의 고령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기업의 제도적 대응은 드물고, 관련 제도의 실태와 도입 조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역시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고령 가족 돌봄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를 지원하는 기업 복지 제도의 도입 여부와 결정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론적·정책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고령자 돌봄은 성별에 따라 불균형하게 분담되고 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가사 지원, 외출 동행, 식사 준비, 신체 기능 유지 지원 등 모든 돌봄 영역에서 딸이나 며느리로부터 돌봄을 받는 노인들의 비율이 아들이나 사위를 통해 돌봄을 받는 비율보다 현저히 높았다(강은나 외, 2023). 가정 내 고령자 돌봄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 상황은 고령 인구의 확대와 맞물려 가족 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 고령자 돌봄 부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과 경력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경력 단절과 노동시장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저출생 중심 가족정책의 그늘에 가려진 '고령 가족 돌봄'에 주목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고령자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될 수 없는 문제이며,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령 가족 돌봄 제도의 도입 여부와 그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내에서 해당 제도가 어떤 제도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수용되는지를 조직사회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와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고령 가족 돌봄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고령 부모 돌봄 부담의 분담 실태와 성별·연령별 특성을 기초 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둘째, 일본과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제도적 대응 사례를 검토하여, 고령자 돌봄 정책의 제도화 수준과 기업의 대응 방식,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을 분석한다. 셋째,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을 통해 고령 가족 돌봄 제도의 도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특히 기업의 규모, 산업 분야, 인적 구성, 조직문화 등 다양한 특성이 제도 도입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 설계와 정책 지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령 가족 돌봄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중심에 두고, 기업의 제도적 대응과 역할을 조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고령화와 고령자 돌봄의 제도적 배경

1. 인구 고령화 추세와 사회적 의미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지만, 한국은 그 속도와 규모 면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례에 속한다. 한국은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14%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2024년에는 20%를 초과하며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특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은 불과 7년 4개월 만에 이루어졌는데, 일본(10년), 이탈리아(20년) 등 주요국의 소요 기간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른 수준이다(동아일보, 2024년 12월 25일). 통계청은 2035년에는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통계청, 2023).

노인 비율의 급증은 돌봄이 필요한 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비율은 2008년 30.7%에서 2017년 51.0%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항목 중 1개 이상의 제약을 경험한 노인의 비율은 같은 기간 11.4%에서 8.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김여진, 2023), 전반적인 노인 인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의 절대적인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렇듯 급속한 고령화는 단지 인구 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돌봄 수요의 구조적 전환을 초래한다. 과거에는 가족 돌봄의 중심이 자녀 양육에 있었다면, 이제는 고령 부모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부담이 함께 중요해지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 자녀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의존도가 증가하고, 돌봄 기간도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령자 돌봄 문제는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고령자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중년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Henle, Fisher, McCarthy, Prince, Mattingly, and Clancy, 2020).

특히, 고령자 돌봄의 책임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여성 구성원이 주된 돌봄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Kim, Ingersoll-Dayton, and Kwak, 2013). 따라서 고령자 돌봄 문제는 가족 내부의 문제를 넘어 젠더 불평등, 노동시장 이탈, 노동자의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 고령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기업 정책

고령 가족 돌봄은 더 이상 가족 개인에게만 전가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특히 중장년 직장인들이 부모의 돌봄을 병행하며 겪는 이직, 휴직, 경력 단절 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인적 자원 손실로 직결되며,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고령자를 돌보는 직원의 다수가 45~65세의 전일제 근로자로, 기업의 입장에서 이들의 이탈은 심각한 숙련 인력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Kossek, Perrigino, and Lautsch, 2023). 기업이 제공하는 고령자 돌봄 프로그램은 조직의 생산성 유지에 기여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때 결근, 이직률 증가, 생산성 하락 등의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Murphy and Cross, 2021; Nogues and Tremblay,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족정책은 여전히 출산율 제고와 자녀 돌봄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령 가족 돌봄에 대한 제도화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공공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주로 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경증 노인이나 일상적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 결국 중년 노동자들이 부모를 돌보며 직장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기업 내 제도는 거의 부재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

이에 반해, 일본과 미국 등 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자 돌봄을 기업의 인사·복지 전략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직원의 돌봄 부담 완화와 숙련 인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해 왔다. 이렇게 노동자의 고령자 돌봄 문제에 주목하는 국가의 기업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고령자 돌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근무 정책 측면에서는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원격근무, 가족 돌봄 휴가, 근로 시간 단축, 초과근무 제한 등의 제도는 고령자를 돌보는 직원들이 업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제도들은 자녀 돌봄 등 다른 유형의 부양 책임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기업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돌봄 지원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Lockwood, 2003). 예를 들어, 일본의 고용주들은 고령 가족을 돌보는 직원을 위해 가족 1인당 최대 93일의 무급 돌봄 휴가를 제공하며, 근로 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Wang, Shimmei, Yamada, and Osawa, 2013).

둘째, 경제적 혜택 측면에서는 돌봄으로 인한 소득 손실이나 건강 관련 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급여 외 지원이 제공된다. 예컨대,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Adobe)와 코넬대학교 등의 조직은 부양자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세전 지출 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 FSA)를 운영하여 직원들이 일정 금액을 별도로 저축하고 이를 돌봄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 제공에는 직원이 고령자 돌봄에 필요한 구체적 자원과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정보기술 기업 IBM은

직원이 주변 노인 돌봄 시설을 직접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적절한 시설의 목록을 제공하는 '노인 돌봄 소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업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는 요양보호소와 재활시설에 관한 정보, 노인 돌봄 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와 컨설팅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기업은 직장 내에 주간 노인 돌봄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역 사회 기반의 자녀·노인 돌봄 및 네트워킹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미국의 의류 제조 기업 스트라이드 라이트(Stride-Rite)는 자녀뿐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세대 간 주간 돌봄 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통신 기업 AT&T는 '가족 돌봄 개발 기금'을 통해 공동체 기반의 돌봄 시설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Neal and Wagner, 2002).

3. 고령자 돌봄에 관한 국내외 연구

1) 고령자 돌봄에 관한 국내 연구

최근 고령자 돌봄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선행 연구의 주요한 특징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누가 고령자에 대한 돌봄을 수행하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배우자가 주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며(이순미·김혜경, 2009; 차승은·정선이, 2021), 고령자의 자녀나 형제자매들도 공동으로 돌봄을 수행한다(김은정·이신영, 2010; 김주현, 2016; 최희경, 2011). 둘째, 남성들의 역할과 행동에 주목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강수향·김지선, 2019; 문현아·차승은, 2020; 문현아, 2021; 조명아·김주현, 2021). 특히, 노부모를 돌보는 '아들'의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및 질적연구를 통해 남성의 전통적인 젠더 인식과 행동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출산과 자녀 돌봄에 관한 부담이 주로 여성들의 몫이었다면, 노부모 돌봄에 있어서는 남성들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점이다. 셋째, 노인 돌봄이 여성 돌봄 제공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연구가 있다(류한별·김가현, 2022; 박영란·강순화, 2008; 최경덕·안태현, 2019). 이 연구들은 부모와 고령

자에 대한 복지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성인 자녀의 스트레스와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을 보여준다.

기업의 고령 가족 정책 도입과 활용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다. 선행연구는 주로 개인과 가족구성원이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수행하는 노인 돌봄 실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국 단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가족친화 정책과 제도가 노인 돌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가족복지가 어떠한 기여와 제약이 있는가에 주목한 연구는 부족하다. 국내의 많은 연구는 사례연구와 질적연구의 관점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노인 돌봄을 수행하는 중장년 맞벌이 부부의 경험을 파악하는 데 제한적이다. 또한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복지, 노년학,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노인 돌봄에 접근했으며 기업 및 제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연구자의 관심 부족뿐 아니라 실제 기업 제도의 범위와 운영 방식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의 일-가족 균형 정책은 고령 부모 및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장인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가령,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일자리 정책이 대표적인 예로, 이들 정책은 주로 출산 및 자녀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령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있다(노사발전재단, 2025). 2025년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직장 내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제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실질적인 사용률은 낮은 편이다(신우리·전기택·주재선·강민정·최진희·김효경·이기재, 2024; 이은주·곽서희·박수경, 2024).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조사들이 임신, 출산, 자녀 양육과 같은 가족 지원 복지 제도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 있다. 여성가족패널, 여성관리자패널, 노동패널, 사업체패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수집하는 대규모 조사에는 노인돌봄과 관련된 조사는 매우 제한적이다.

기존 연구는 고령자 가족 돌봄과 관련된 기업 제도를 별도로 묻는 문항이 없고, 자녀 돌봄과 고령 가족 돌봄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해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이 자녀인지, 고령자 가족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고령 가족 돌봄에 대한 기업 지원 제도의 특성과 영향력을 명확히 파악하려면, 자녀 돌봄과 고령 가족 돌봄을 분리해 조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자녀 돌봄과 고령 가족 돌봄은 각각 다른 요구와 어려움이 있으며, 각각의 필요에 따른 지원 제도 역시 구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고령자 돌봄에 관한 해외 연구

고령자 돌봄 지원 제도에 관한 해외 연구는 주로 근로자 자신과 자녀 등 모든 부양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 제도에 관한 것이다(Barrah, Shultz, Baltes, and Stolz, 2004; Brown and Pitt-Catsouphes, 2013; Pavalko and Henderson, 2006; Schneider, Trukeschitz, Muhlmann, and Ponocny, 2013; Shoptaugh, Phelps, and Visio, 2004; Zuba and Schneider, 2013 등). 반면, 구체적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고령자 돌봄 지원 제도와 그 도입 요인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Burch, Dugan, and Barnes-Farrell, 2019; Lam, Nielsen, Sprigg, and Kelly, 2022).

고령자 돌봄 지원 제도를 다루는 연구의 첫 번째 유형은 돌봄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특성과 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경우이다. 고령자 돌봄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징(Lahaie, Earle, and Heymann, 2013), 근로자가 직면하는 심리적·신체적·경제적 부담과 어려움(Arksey, 2002; Lam et al., 2022; Lozano, Martinez-Ramos, and Pilotti, 2016; Murphy and Cross, 2021; Pavalko and Henderson, 2006), 고령자 돌봄 제도 시행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Burch et al, 2019; Lam et al., 2022) 등이 다루어졌다.

위의 연구들은 고령자 돌봄이 일-가정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며, 고령자 돌봄으로 인한 부담이 직원 개인을 넘어 가족적, 조직적, 사회적 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Clancy, Fisher, Daigle, Henle, McCarthy, and Fruhauf, 2020). 예를 들어, 고령자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어려움과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조직의 맥락에서 고령자 돌봄의 책임은 가정-일 개입(family interference with work)을 만들고, 낮은 직무 만족도와 높은 결근율로 이어진다(Gignac, Kelloway, and Gottlieb, 1996). 이 외에도 고령자 돌봄은 근로자의 낮은 업무 성과, 높은 긴장감, 직업 불안정성,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 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Barling, MacEwen, Kelloway, and Higginbottom, 1994; Burch et al., 2019; Lockwood, 2003; Trukeschitz, Schneider, Muhlmann, and Ponocny, 2013).

그러나 고령자 돌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다. 직장생활과 고령자 돌봄을 병행하는 여성이 평균적으로 돌봄에 활용하는 시간은 남성보다 길며(Hammer and Neal, 2008; Neal and Wagner, 2002), 돌봄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다(Dembe and Partridge, 2011; Dembe, Partridge, Dugan, and Piktialis, 2011). 고령자 돌봄 수행이 직장에서의 업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여성에게만 통계적으로 유효했고, 남성에게는 유효하지 않았다(Gignac et al., 1996). 또한 여성 근로자, 저학력자, 1세대 이민자는 상대적으로 고령자 돌봄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다. 여성들은 가족 돌봄을 위한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급여와 직업적 혜택의 측면에서 남성보다 더 큰 손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고령 가족 돌봄을 위해 업무 부담이 덜한 직업을 찾거나, 상근에서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Lahaie et al., 2013).

한편으로, 유연근무를 비롯한 고령자 돌봄 관련 정책의 도입은 일-가정 갈등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유연근무는 돌봄 제공자의 근로 시간 유지(Pavalko and Henderson, 2006), 역할 갈등 완화, 스트레스 감소(Brown and Pitt-Catsouphes, 2013; Lozano et al., 2016), 결근율 감소(Zuba and Schneider, 2013)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외에도 무급 가족 돌봄 휴가와 같은 가족친화정책이 존재하는 직장은 고령자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Pavalko

and Henderson, 2006), 여성 관리자들의 돌봄 수행을 촉진한다(Kalysh, Kulik, and Perera, 2016).

고령자 돌봄 지원 제도를 다루는 연구의 두 번째 유형은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특징에 대해 분석한 경우이다. 먼저 기업의 자산, 근로자 수(기업 규모), 산업 등의 조직적 속성은 고령자 돌봄 지원 제도의 도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고령자 돌봄 지원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비용과 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고령자 돌봄 지원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Barr, Johnson, and Warshaw, 1992; Chung, 2020; Dembe, Dugan, Mutschler, and Piktialis, 2008; Dembe and Partridge, 2011; Galinsky et al., 2008; Goodstein, 1995; Liebig, 1993).

산업의 특성 역시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각 산업의 업무 성격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연근무나 휴가·휴직 등의 활용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Chung, 2020). 금융업과 정보·통신업 기업은 고령자 돌봄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제조업, 소매·유통업, 건설업 기업의 경우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arr et al., 1992; Chung, 2020; Dembe and Partridge, 2011; Galinsky et al., 2008).

다음으로, 기업의 인적 구성, 조직문화, 다른 가족친화정책의 유무, 기업 다양성에 대한 인식 등 기업의 내부적 특성 또한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직 내 여성 근로자 비율은 고령자 돌봄을 포함한 가족 친화 정책의 도입과 관련된 변수로 분석되었다. 일부 연구는 여성이 가정에서 여전히 주요한 돌봄 제공자이기 때문에, 기업 내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가족친화정책과 고령자 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Liebig, 1993; McNamara, Pitt-Catsouphes, and Brown, 2013). 반면,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존재한다(Bloom, Kretschmer, and Van Reenen, 2011; Chung, 2019; Goodstein, 1995). 이에 대해, 고용주는 가족친화정책의 도

입으로 인해 여성 근로자의 노동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는 지점이 지적되기도 했다(Chung, 2020).

마찬가지로 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고령자 돌봄을 제공하는 주요 연령층인 4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정책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조직 내에서 4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고령자 돌봄 지원 정책 도입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한 연구도 있으나(Goodstein, 1995), 다른 연구에서는 40~54세의 중년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돌봄 휴가 사용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McNamara et al., 2013).

또한, 조직 차원에서 고령자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경영 철학에 반영하는 기업은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자들이 가족친화적인 지원 조치(family-friendly arrangements)를 요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나 플랫폼이 존재하는 경우, 제도의 도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ung, 2020). 실제로 직원 대상 설문조사나 초점 집단 면접을 통해 돌봄 지원 수요를 파악한 기업들은 비교적 다양하고 체계적인 고령자 돌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oodstein, 1995). 이런 유형의 기업들은 일-가정 갈등에 대한 조직적 민감성이 높고, 가족 돌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기업문화의 일부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Liebig, 1993).

이에 더해, 일-가족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직원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가족 돌봄의 어려움을 더욱 폭넓게 인식하고 있으며, 고령자 돌봄 지원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업은 특정 집단의 필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보다, 더 많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제도와 관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Moen, Kojola, and Schaefers, 2017). 직접적인 수혜자가 제한적인 제도는 미수혜자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도 도입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서 고령자 돌봄을 수행하는 직원이 소수일 경우, 기업은 고령자 돌봄 제공자만을 위한 맞춤형 제도보다는 더 많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포괄적 가족 돌봄 제도를 선호할 수 있다(Liebig, 199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집단에 대해 포용적인 조직문화는 복지적 성격의 제도 도입과 실행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Murphy and Cross, 2021). 예컨대, 이미 자녀 돌봄, 유연근무, 가족 친화 제도 등을 운영하는 조직은 비슷한 성격의 제도에 대한 조직 내 저항이 낮고, 고령자 돌봄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Arksey, 2002). 또한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운용 중인 기업일수록 고령자 돌봄 지원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Goodstein, 1995). 즉, 특정 집단을 위한 지원 제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포용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복지 제도의 수용에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문헌들을 종합할 때, 고령자 돌봄 지원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1) 기업의 규모, 자산, 산업 분야 등의 구조적 요인, (2) 조직의 인적 구성(직원의 성비와 연령별 비율), (3) 조직 내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창구의 존재 여부, (4) 조직 내 가족친화적 정책 운영 여부와 조직문화의 포용성 등이 있다.

Ⅲ.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령 부모 돌봄 현황

1. 돌봄이 필요한 고령 부모를 둔 맞벌이 부부

기업의 제도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부에서 고령자 돌봄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년기 맞벌이 부부는 생계유지, 자녀 양육, 고령 부모 돌봄이라는 복합적인 책임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은 고령자 돌봄이 더 이상 가족만의 사적 영역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동안의 정책과 연구가 주로 자녀 돌봄에 집중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로 불리는 40~50대가 자녀와 부모를 함께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은 전일제 노동에 종사하는 동시에

부모의 병간호, 외래 진료 동행,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이런 이중 부담은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노동시장 참여의 지속성과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절에서는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 내에서 고령 부모 돌봄이 어떤 방식으로 분담되고 조정되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부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고령 부모 돌봄이라는 추가적인 책임이 어떻게 현실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향후 돌봄 정책과 기업의 복지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는 노동과 돌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업주부 가구나 단독 부양자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가 직면하는 경험은 고령자 돌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낸다. 또한 고령 가족의 범주에는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절의 분석은 고령 가족 돌봄 중에서도 특히 '부모 돌봄'에 초점을 맞춘다. 사용된 조사 자료가 부모 돌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배우자 돌봄은 주로 노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본 장의 분석 범위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하는 〈여성가족패널〉에는 성인 여성 응답자에게 "남편의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신지" 및 "본인의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신지"를 묻는 문항이 있다. 이 문항을 이용하여 부부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고령 부모 돌봄에 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패널〉 조사에 포함된 맞벌이 부부의 수는 2010년 4,329명, 2012년 4,028명, 2014년 3,645명, 2016년 4,357명, 2018년 3,916명, 2020년 3,389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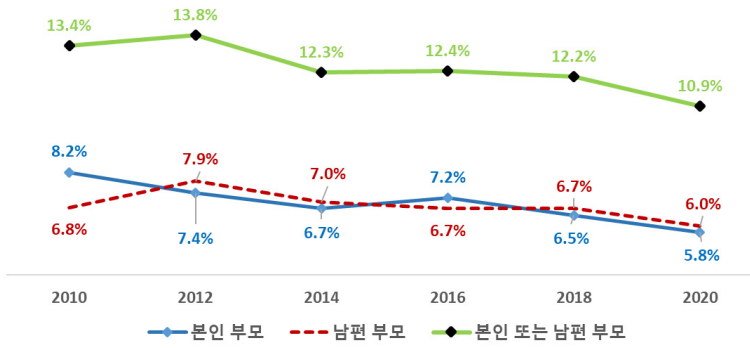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2010년-2020년

〈그림 1〉 맞벌이 부부가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둔 비율, 2010년-2020년

〈그림 1〉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맞벌이 부부 중 연로하거나 건강이 안 좋은 부모님을 둔 맞벌이 부부의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여성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파란색), 남편의 부모님(빨간 점선), 여성 응답자 또는 남편의 부모님(초록색)으로 나누어 연로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맞벌이 부부 중에서 여성 본인의 부모님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2010년 8.2%, 2012년 7.9%, 2014년 7.0%, 2016년 7.2%, 2018년 6.7%, 2020년 5.8%이다. 맞벌이 부부 중에서 남편 부모님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비율은 2010년에 6.8%, 2012년 7.4%, 2014년과 2016년 6.7%, 2018년, 6.5%, 2020년 6.0%이다. 돌봄이 필요한 부모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인 혹은 남편의 부모님의 경우 2010년에 13.4%, 2012년 13.8%, 2020년 10.9%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님의 연령 증가로 인한 사망으로 고령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10% 이상의 맞벌이 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돌봄이 필요한 건강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추세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8.8% 정도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김여진, 2023).

2. 돌봄 담당자의 특성 변화

그렇다면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둔 맞벌이 부부 중에서 실제 돌봄에 참여하는 부부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직장과 일로 인하여 직접 부모를 돌볼 수 없다면, 누가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가? 여성가족패널 문항에는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돌봄을 담당하는 부양자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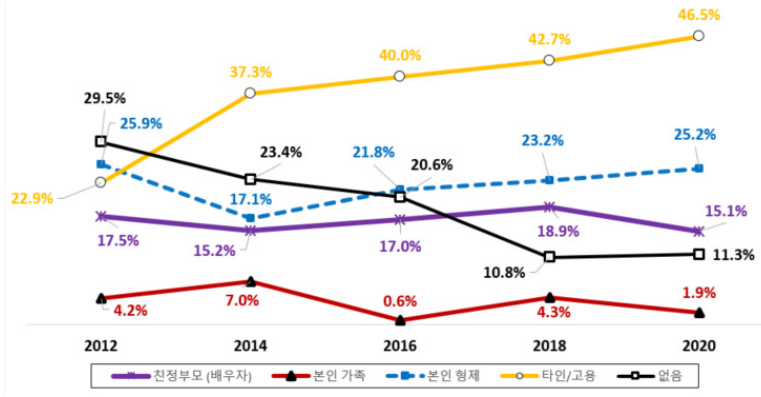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2012년-2020년

〈그림 2〉 맞벌이 부부의 친정부모를 돌보는 주체, 2012년-2020년

〈그림 2〉는 맞벌이 부부의 부모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성 배우자의 부모를 누가 돌보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맞벌이 부부의 부모 돌봄 참여 비율이 가장 낮다는 점이다. 맞벌이 부부가 친정 돌봄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2012년 4.2%, 2014년 7%, 2016년 0.6%, 2018년 4.3%, 2020년 1.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친정 부모 중 본인의 배우자를 직접 돌보는 비율은 2012년 17.5%에서 2020년 15.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맞벌이 여성의 형제들이 돌봄에 참여하는 비율은 2014년 17.1%, 2016년 21.8%,

2018년 23.2%, 2020년 25.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돌봄 제공자가 없다는 응답은 2012년 29.5%에서 2020년 11.3%로 감소했다. 노인 돌봄 정책으로 인해 돌봄 제공자의 부재 문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타인 혹은 고용에 의한 돌봄은 2012년 22.9%에서 2020년 46.5%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0년 기준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 되었다.

〈그림 3〉은 맞벌이 부부의 부모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성 배우자의 부모를 누가 돌보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부모 돌봄 참여 비율이 가장 낮다는 점이 〈그림 2〉와 유사하다. 남편의 부모 중 본인의 배우자를 직접 돌보는 비율(붉은색 선과 세모)은 2012년에 12.4%에서 시작해 2020년에는 10.8%로 감소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가 남성 배우자의 부모 돌봄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줄어듦을 보여준다. 남성 배우자의 부모 돌봄에 남편의 형제가 참여하는 비율(파란색 선)은 2012년과 2020년 모두 18.1%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검은색 선)은 2012년 27.1%에서 2020년에는 15.1%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타인이나 고용인에 의한 돌봄(노란색 선)의 비율은 2012년 18.1%에서 2020년에는 47.6%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맞벌이 부부 중 상당수가 외부 도움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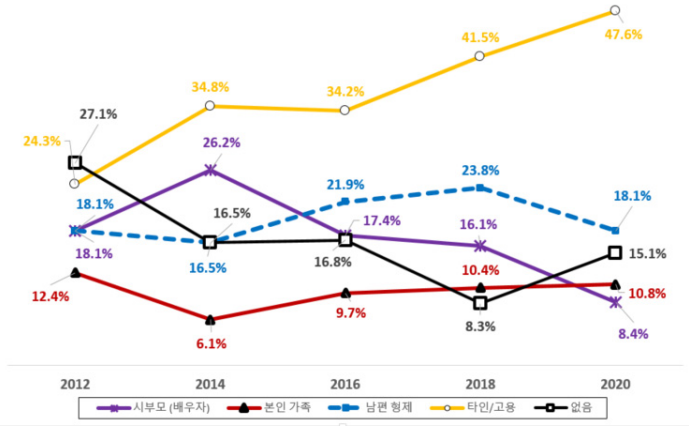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2012년-2020년

〈그림 3〉 맞벌이 부부의 시부모를 돌보는 주체, 2012년-2020년

〈그림 2〉와 〈그림 3〉은 공통으로, 한국의 맞벌이 부부가 돌봄이 필요한 친정 부모 또는 시부모를 직접 돌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령의 여성이 배우자를 돌보는 비중이 높은 경향은 기존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는데(이순미·김혜경, 2009; 차승은·정선이, 2021), 본 자료에서도 맞벌이 부부의 노부모 돌봄에서 유사한 패턴이 확인된다. 즉, 고령자의 돌봄은 주로 맞벌이 자녀보다는 배우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 노인의 형제자매나 자녀들이 공동으로 돌봄을 분담하는 모습도 나타난다(김은정·이신영, 2010; 김주현, 2016; 최희경, 2011). 이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직장생활과 고령 가족 돌봄을 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장 내에서 고령 부모 돌봄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봄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돌봄 책임의 외주화 또는 배우자 중심의 돌봄이 지속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부모 돌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맞벌이 부부가 부모를 직접 돌보는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타인이나 고용인에 의해 돌봄을 제공하는 비율은 아내와 남편 부모 모두에게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부모 돌봄의 책임이 가족 내부로부터 외부의 전문 서비스로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맞벌이 부부는 부모 돌봄을 점차 외부에 의존하게 되었는가? 가장 주요한 요인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긴 노동 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여가 시간은 물론 가족 돌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유럽과 한국의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한 다층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유급 부모휴가나 부성휴가 제도가 제공되더라도 돌봄 시간 확보에 실패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이 개인의 돌봄 수행을 제약하며, 가족 외부의 제도나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박미진, 2020).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족 내에서 돌봄을 전담해 왔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정 내 돌봄 역할 분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돌봄을 가족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형제자매와의 분담 또는 외부 인력과 서비스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고령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돌봄이 충분히 제공되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노동으로 인해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공적인 돌봄 지원 공급에는 한계가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비하여, 노동시장 내의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들이 고령자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제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Ⅳ. 연구자료 및 방법

1. 연구자료

한국 기업의 고령 가족 돌봄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다양성연구소에서 국내 상장기업 및 외국계 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수집한 〈국내 민간기업 현황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기업에서 고령자 가족을 위한 돌봄 제도 제공 여부를 조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다양성연구소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2023년 10월 기준 한국에서 운영 중인 2,645개 상장사와 외국계 기업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가 조사, 리서치 회사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10개 산업에 분포한 기업 규모를 반영하여 표집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연락처를 확보한 1,463개 기업 중 177개가 응답하여, 최종 응답률은 12.1%를 보였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기업의 다양성 제도 및 관련 실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문항 작성에 참여했다. 설문지에는 고령자 직원 및 고령자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의 존재 여부를 포함하여, 인적 구성, 채용 제도, 직원 교육, 평가 및 보상, 조직문화, 복지 제도, 기업 전략 등 다양한 영역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 가족 돌봄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고령자 직원 및 고령자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 존재 여부'를 묻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문항은 고령자 본인뿐만 아니라 고령 가족을 둔 직원을 위한 조직 차원의 제도적 대응 여부를 포괄적으로 묻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예'로 응답한 기업을 고령 가족 돌봄 제도를 도입한 기업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해당 문항은 제도의 구체적 유형이나 활용 조건, 급여 지급 여부, 지원 기간 등을 식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 존재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조사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조사 전문업체인 Kstat 리서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응답 대상은 이들 기업의 인사 담당자이다. 최종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국내 상장기업 178개, 외국계 기업 22개이며, 국내 상장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100인 이하 기업 86개, 101~299인 기업 54개, 300인 이상 기업 38개가 포함되었다. 업종별로는 식음료 제조 16개, 화학제품 제조 22개, 의약품 제조 23개, 전자부품 제조 26개, 도소매 및 판매 25개, 소프트웨어 개발 17개, ICT 서비스 12개, 금융보험 12개, 영상방송광고 7개, 과학기술연구 17개 기업이 조사되었다.

2. 측정 및 기술통계

〈표 1〉과 〈표 2〉는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측정 방법과 기술통계 값을 보여준다. 독립변수는 2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에 "고령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 휴직 및 복지 제도"가 있는지 이항변수(0/1)로 물었다. 조사된 기업 중 고령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 휴직 및 복지 제도를 제공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46%였다.

〈표 1〉 변수 측정

변수	측정에 사용한 문항
고령 가족 돌봄제도	고령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 휴직 및 복지제도가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직원을 위한 업무보조기구(인공와우, 점자정보 단말기, 점자키보드 등)를 제공한다
고충처리 제도	회사에서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한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 평가기준	육아휴직자를 위한 평가 기준(육아휴직 기간 경력인정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한부모 가정 복지제도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제도가 있다
직장어린이집	임직원 대상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된다
여성휴게공간 및 수유시설	임직원 대상 여성휴게공간 및 수유시설이 있다
정규직 여성비율	전체 직원 중 정규직 여성의 비율
재택/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육아휴직 근무경력 포함	육아휴직이 근무경력에 포함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을 시행하고 있다
고령 직원 업무 편의 근무 환경	고령 직원의 업무 편의를 고려한 근무 환경(큰 글씨/간접조명 제공, 과로 방지 스케줄 조정, 휴식시간 등)을 제공한다
고령 퇴직자 교육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 퇴직자를 위한 생애설계 또는 재취업 교육이 마련되어 있다
50대 및 60대 직원 비율	전체 직원 중 50대 및 60대 연령 직원의 비율
인사제도 공식화	보상 및 승진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다 인사관리는 대체로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 및 승진 결정 기준을 공개한다
300인 이상 기업	직원의 수가 300인 이상
전체 근로자 수 (로그)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 수 (로그)
자산 총액 (로그)	기업의 총 자산 (로그)
산업_제조 및 기술	제조업, IT업종
산업_의료 및 제약	의료 및 제약 산업
산업_서비스_도소매	서비스업, 도소매
산업_정보 및 통신	정보, 통신 산업

〈표 2〉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고령 가족 돌봄제도	0.460	0.500	0	1
장애인 편의시설	0.510	0.501	0	1
고충처리 제도	0.760	0.428	0	1
남성 육아휴직 제도	0.775	0.419	0	1
육아휴직자 평가기준	0.595	0.492	0	1
한부모 가정 복지제도	0.100	0.301	0	1
직장어린이집	0.170	0.377	0	1
여성휴게공간 및 수유시설	0.375	0.485	0	1
정규직 여성비율	0.302	0.166	0	0.698
재택/원격근무제	0.290	0.455	0	1
육아휴직 근무경력 포함	0.825	0.381	0	1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0.265	0.442	0	1
고령 직원 업무 편의 근무 환경	0.165	0.372	0	1
고령 퇴직자 교육	0.135	0.343	0	1
50대 및 60대 직원 비율	0.176	0.137	0	0.833
인사제도 공식화	2.960	1.198	0	4
300인 이상 기업	0.230	0.422	0	1
전체 근로자 수 (로그)	4.882	1.444	1.792	9.930
자산 총액 (로그)	24.834	2.024	16.811	30.623
산업_제조 및 기술	0.240	0.428	0	1
산업_의료 및 제약	0.125	0.332	0	1
산업_서비스_도소매	0.185	0.389	0	1
산업_정보 및 통신	0.155	0.363	0	1

선행 연구를 토대로 고령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구조적 요인, 조직의 인적 구성, 조직 내 제도 및 정책의 요인을 변수로 설정했다. 기업 규모(직원 수), 자산 규모, 산업 유형 등 조직의 기본 특성은 통제변수로 포함하고, 돌봄 친화적 제도 및 직원 복지 제도를

독립변수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조사 기업 200개 중 고용 규모가 300명을 넘는 기업은 23%이다. 업종별로는 제조 및 기술 분야가 24%, 의료 및 제약 분야가 12.5%, 서비스와 도소매 분야가 18.5%, 정보 및 통신 분야가 15.5%이다. 전체 근로자 수(로그)의 평균은 4.882, 자산 총액(로그)은 평균 24.834이다. 인적 구성의 경우, 정규직 여성 비율은 평균 30.2%로 조사되었고, 50대 및 60대 직원 비율은 평균 17.6%이다.

다음으로 기업 제도의 경우, 재택/원격근무제는 29%의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직원에 대한 고충처리 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76%의 기업에서 운영한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77.5%의 기업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육아휴직자를 위한 평가 기준은 59.5%의 기업에서 갖추고 있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 근무경력 포함은 82.5%의 기업에서 인정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평균적으로 17%의 기업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여성휴게공간 및 수유시설은 37.5%의 기업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기업에서만 존재했다.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춘 기업은 51%이다. 고령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은 26.5%, 고령 직원 업무 편의 근무 환경은 16.5%, 고령 퇴직자 교육은 13.5%의 기업에서 시행 중이다. 인사제도 공식화 수준은 4점 만점에 2.96점이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기업 조직의 특성이 고령자 돌봄을 위한 제도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0/1의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 측정되었을 때 주로 사용되는 회귀분석 방법이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left(\frac{p}{1-p}\right)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cdots + \beta_n X_n$$

여기서 p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고, (1 - p)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p는 특정 기업에서 고령 가족을 위한 돌봄 제도를 도입할 확률이며, p/(1 - p)는 사건이 발생할 승산(odds) 값이다.

V. 분석 결과

1. 모형 설명

〈표 3〉은 고령 가족 돌봄을 위한 제도 존재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모형1은 기업 직원 규모, 자산 규모, 산업 등 통제변수만 모형에 포함한 것이다. 모형2는 모형1의 통제변수에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였다. 모형2에 포함된 변수들은 고충처리 제도, 남성 육아휴직 제도, 한부모 가정 복지 제도,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 평가 기준, 직장어린이집 존재, 여성휴게공간 및 수유시설, 재택/원격근무 실시 여부, 육아휴직 근무경력 포함,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인사제도 공식화,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등이다. 모형3에는 기업이 고령자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지와 관련된 변수를 추가했다. 고령 직원 업무 편의 근무 환경 제공, 고령 퇴직자 교육, 50대 이상 직원 비율 등이 모형3에 추가된 구체적 변수들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크기와 자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출 가능성이 증가한다(조상미·박은주, 2011; Barr et al., 1992; Dembe et al., 2008; Dembe and Partridge, 2011; Galinsky et al., 2008; Goodstein, 1995, Liebig, 1993). 하지만 고령자를 위한 돌봄 제도 제공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기대가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다(〈표 3〉 참고). 기업의 산업적 특징 및 동일 업종에 속한 다른 기업들의 행동이 고령자 가족 돌봄을 위한 제도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우선 의료 및 제약업종에 속한 기업에서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았다. 돌봄, 의료, 보건 업종이 가지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고령 가족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업의 제도에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모형1과 모형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는 사업은 제조 및 기술업(모형1), 정보 및 통신업(모형1 및 모형2)으로 나타났다. 제조 및 기술업, 정보 및 통신업의 기업들은 다른 산업보다 고령 가족 돌봄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모형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 참고).

〈표 3〉 고령 가족 돌봄을 위한 제도 존재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3(오즈비)
고령직원 업무편의 근무환경			0.047	1.05
			(0.562)	
고령 퇴직자 교육			-0.352	0.7
			(0.684)	
50대 이상 직원 비율			-0.564	0.57
			(1.653)	
고충처리 제도		1.146*	1.139*	3.12
		(0.492)	(0.499)	
남성 육아휴직 제도		1.235*	1.228*	3.41
		(0.548)	(0.549)	
한부모 가정 복지제도		1.932*	1.950*	7.03
		(0.84)	(0.845)	
육아휴직자 평가기준		0.38	0.392	1.48
		(0.43)	(0.437)	
직장어린이집		0.259	0.453	1.57
		(0.513)	(0.612)	
여성휴게공간 및 수유시설		0.886*	1.077**	2.94
		(0.372)	(0.243)	
정규직 여성비율		-1.601	-1.746	0.17
		(1.26)	(1.347)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3(오즈비)
재택/원격근무제		-0.201	-0.136	0.87
		(0.454)	(0.468)	
육아휴직 근무경력 포함		0.289	0.277	1.32
		(0.518)	(0.521)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0.197	-0.127	0.88
		(0.429)	(0.451)	
인사제도 공식화		0.234	0.237	1.27
		(0.174)	(0.181)	
장애인 편의시설		0.383	0.365	1.44
		(0.398)	(0.402)	
300인 이상 기업	-1.040	-1.685*	-1.655*	0.19
	(0.582)	(0.721)	(0.735)	
전체 근로자 수 (로그)	0.379	0.423	0.407	1.50
	(0.239)	(0.297)	(0.303)	
자산 총액 (로그)	-0.004	-0.047	-0.017	0.98
	(0.13)	(0.161)	(0.169)	
산업_제조 및 기술	1.225**	1.009	1.055	2.87
	(0.461)	(0.549)	(0.576)	
산업_의료 및 제약	1.666**	1.855**	1.865**	6.46
	(0.565)	(0.664)	(0.685)	
산업_서비스_도소매	0.529	0.297	0.313	1.37
	(0.474)	(0.57)	(0.585)	
산업_정보 및 통신	1.077*	1.295*	1.26	3.53
	(0.503)	(0.625)	(0.66)	
상수	-2.915	-1.253	-1.802	0.16
	(2.71)	(3.888)	(4.144)	
관찰 기업수	193	193	192	
Pseudo R2	0.114	0.283	0.282	

주: *** p < .001, ** p < .01, * p < .05;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2. 고령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한국 기업의 특징

〈표 3〉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충처리 제도,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운영,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제도, 여성휴게공간 및 수유시설의 유무가 고령 가족 돌봄 정책 도입과 유의미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도들이 잘 정착된 기업일수록 가족 돌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고령 가족 돌봄 지원 정책 도입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부모 가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적 복지 제도를 갖춘 기업에서 고령자 돌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조직의 전반적인 가족 친화적 문화와 제도의 수준이 고령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배경 조건임을 시사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의 회귀계수를 오즈비(Odds Ratio) 형태로 환산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오즈비는 회귀계수의 자연상수 지수($\exp(\beta)$)로 계산되며, 1보다 큰 경우 해당 변수가 종속변수의 발생 확률을 증가시킴을 의미하고, 1보다 작은 경우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제도의 회귀계수는 1.950로 나타났다. 오즈비 약 7.03($\exp(1.950)$)에 해당하며,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고령 가족 돌봄 제도를 도입할 오즈가 약 7배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회귀계수는 1.228로, 오즈비는 약 3.41이며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제도 도입 오즈가 약 3.4배 더 높다. 고충처리 제도의 경우 회귀계수는 1.139, 오즈비는 약 3.12로, 이 제도가 존재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돌봄 제도를 도입할 오즈가 약 3.1배 더 높다. 여성휴게공간 및 수유시설의 회귀계수는 1.077로 나타났으며, 오즈비가 약 2.94에 해당한다. 즉, 해당 시설을 보유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고령자 돌봄 제도를 도입할 오즈가 약 2.9배 더 높다. 반면, 300인 이상 기업 여부의 회귀계수는 -1.655($p=0.024$), 오즈비는 약 0.19로, 대기업일수록 고령자 돌봄 제도를 도입할 오즈가 유의미하게 낮다.

산업군별로는 의료 및 제약 분야의 회귀계수가 1.865(p=0.006)로, 오즈비는 약 6.46에 이르며,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이 돌봄 제도를 도입할 오즈가 다른 산업에 비해 약 6.5배 더 높음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발견의 의미와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1) 고충처리 제도

고충처리 제도를 갖춘 기업은 고령 가족 돌봄을 위한 제도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직원들이 고령자 돌봄의 어려움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영진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자녀 돌봄 제도는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으나, 고령자 돌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여전히 고용주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자 돌봄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 돌봄 정책을 도입한 기업들은 인사 부서나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고령자 돌봄 정책이 부족한 경우는 이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인식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Liebig, 1993). 제도 마련의 출발점이 '직원 요구의 인식 여부'에 있음을 시사한다(Chung, 2020).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며, 이것은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조직문화를 반영한다(Ramesh, Ireson, and Williams, 2017). 실제로 국내 한 기업의 사례에 따르면, 경영진과 직원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고충처리 제도를 통해 가족친화적인 제도가 적극적으로 마련되었다(김수한, 2023). 이처럼 고충처리 제도는 직원과 경영진 간의 소통 창구 기능을 하며, 고령자 돌봄과 같은 구체적 요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것은 고령자 돌봄 지원 정책의 도입이 단지 제도 설계나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기업 내 의사결정자들이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얼마나 명확히 인

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영진과 관리자에게 돌봄 지원의 수요와 효과에 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정책 도입의 핵심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2)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

남성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 고령 가족 돌봄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족 돌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돌봄을 조직 차원의 공통 과제로 인식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은 개인의 돌봄 참여 인식뿐 아니라, 일과 가족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에도 기여한다는 선행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Shin and Kim, 2022). 이와 같은 변화는 자녀 돌봄을 넘어 고령 부모 돌봄까지 포괄하는 복지 정책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직 내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성별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Petts, Mize, and Kaufman, 2022; Pizarro and Gartzia, 2024). 조직이 돌봄 책임을 특정 성별에 국한하지 않고, 남성 역시 돌봄 주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모성휴가를 갖추고 있지만, 공식적인 부성휴가 정책을 갖춘 기업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아버지를 위해 특화된 부성휴가 정책이 존재하는 경우, 조직이 직원의 다양한 돌봄 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조직들은 돌봄을 성별이 아닌 모든 직원의 공통 과제로 인식하며, 포용적인 조직문화는 고령자 돌봄과 같은 다양한 복지 정책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Murphy and Cross, 2021). 특히 아버지의 돌봄 역할을 장려하는 직장 문화는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인다. 부성휴가 사용에 우호적인 분위기와 특화 정책은 남성 직원의 실제 휴가 사용률과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동시에 높이는 요인이다. 아버지를 위한 정책의 존재는 돌봄이 '적절하고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며, 남성의 돌봄 책임을 조직 내 규범으로 자리 잡게 한다.

3)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성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고령 가족 돌봄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해당 기업은 구성원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포용적 조직 문화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한정하지 않고, 고령 가족 돌봄처럼 복합적이고 개인화된 사회적·가족적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고령자 돌봄 정책의 도입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기업이 지향하는 다양성과 포용성(Diversity & Inclusion)의 가치가 제도 설계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관한 포용적인 기업의 문화와 제도가 고령자 돌봄 정책 도입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을 뒷받침할 국내 실증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해외 사례를 통해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부모 및 보호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지침(Directive EU 2019/1158)」은 가족돌봄휴가의 적용 대상을 자녀, 부모, 배우자는 물론이고, 각국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 '동거인'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보다 더 나아가, 친척, 친구, 이웃 등 '가까운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돌봄휴가 대상자로 인정하며, 네덜란드는 법률혼·사실혼 배우자, 위탁 아동, 동일 거주지의 지인 등 사회적 유대에 기반한 관계까지 제도에 포함하고 있다(이은주 외, 2024). 또한 캐나다는 중병, 중상해, 임종 단계에 있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일을 중단하는 경우, 돌봄 대상이 법적 가족일 필요는 없으며, 단지 "근로자가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허민숙, 2022). 법적 관계보다 정서적 유대와 실질적 돌봄 책임을 기준으로 제도 대상을 정의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은 가족 개념의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도 고령 가족 돌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1인 가구의 급증과 비친족 동거의 확산이라는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제도의 수혜 대

상을 확장하는 것은 단지 포용성의 확대를 넘어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4) 모성 지원을 넘어서

여성휴게공간 및 수유실을 갖춘 기업에서 고령 가족 돌봄을 위한 정책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인프라는 임신·출산기 여성의 필요를 넘어 모든 직원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가족 돌봄 수요를 제도에 반영하려는 조직의 태도를 반영한다. 여성휴게공간이나 수유실 같은 제도는 특정 시기의 여성만을 위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이 돌봄 자체를 조직 차원에서 제도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돌봄 친화적 인프라를 갖춘 기업은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돌봄 요구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운영하는 기업일수록 고령자 돌봄 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헌은 본 연구의 발결을 뒷받침한다(Goodstein, 1995). 이미 포용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특정 집단을 위한 지원 제도를 보유한 기업은 새로운 복지 제도 도입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Arksey, 2002; Murphy and Cross, 2021). 특히 고령 가족 돌봄은 임신·출산과 달리 아직 제도화 수준이 낮고, 돌봄의 주체, 시점, 강도가 다양하므로 이를 정책화하려는 조직의 문화적 성향과 제도화 의지가 정책 도입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해석은 미국 보건복지부의 보고서(Grochowski, Lamont, and Dey, 2024)에서도 뒷받침된다. 보고서는 직원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자조모임(Employee Resource Groups; ERGs), 외부 돌봄 정보 연계 등은 기업이 돌봄을 단순한 사적 책임이 아니라 공적 제도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도입되는 특성임을 강조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돌봄 친화적 기업은 단지 특정 가족 구성원이 아닌 모든 생애 단계와 관계 유형의 돌봄 부담을 조직이 공적으로 대응해야 할 책무로 이해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또한 클랜시 등(Clancy et al., 2020)은 생애주기 기반 복지 정책을 도입한 조직일수록 다양한 가족 형태와 삶의 단계를 포괄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고령 가족 돌봄과 같이 제도화가 어려운 영역에서도 정책 설계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 된다고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고령 가족 돌봄 정책의 도입은 단지 특정 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기업이 '돌봄'을 제도화할 수 있는 가치로 수용하는 정도, 그리고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기업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5) 기타 요인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나 자산이 클수록 직원 복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조직적 여력이 크다고 여겨진다(조상미·박은주, 2011; Barr et al., 1992; Dembe and Partridge, 2011; Dembe et al., 2008; Galinsky et al., 2008; Goodstein, 1995; Liebig, 1993 등).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크기나 자산 규모는 고령 가족 돌봄 제도 도입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3〉 참고). 복지 제도 일반에 적용되는 기대가 고령자 돌봄과 관련된 제도에 직접적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과 동일 업종 내 기업들의 제도 운영 관행이 고령 가족 돌봄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 및 제약 업종에 속한 기업의 경우, 고령자 가족 돌봄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보건·돌봄 영역의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고령 가족 돌봄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높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인식이 기업 제도 설계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모형 1과 모형 2에서는 제조 및 기술 업종과 정보통신 업종에 속한 기업 역시 고령자 가족 돌봄 제도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 3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산업 특성이 일정 수준까지는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문화, 리더십, 성별 구성 등 다른 조직적 변수

들이 함께 고려될 때 그 효과가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업 내 고령 직원의 인구학적 구성은 고령 가족 돌봄 제도의 도입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예컨대, 고령 직원을 위한 업무 편의 조치, 퇴직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또는 50대 이상 직원 비율 등의 변수는 고령자 가족 돌봄 관련 휴가·휴직 제도와 복지 제도 제공 여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장애인 편의 시설 제공 여부, 직장어린이집 운영, 재택·원격근무제도 운영, 육아휴직 근무경력 인정,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여부 등의 변수는 기업의 가족 친화성 또는 포용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모델에 포함되었으나, 이들 역시 고령 가족 돌봄 제도 도입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서 가족 돌봄 관련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도 존재하지만, 분석 결과 여성 직원 비율 증가는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조직 내 여성 직원의 비율과 40세 이상 직원의 비율 등 조직의 인구학적 구성이 고령 가족 돌봄 제도의 도입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응한다 (Bloom et al., 2011; Chung, 2019; Goodstein, 1995).

이 결과는 일부 연구의 기존 발견과는 상반된다. 예를 들어, 조상미와 박은주(2011)는 간병휴업제도 도입에 있어 사업장 규모와 연봉제 시행 여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으며, 해외 일부 연구에서도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고령자 돌봄 관련 제도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Barr et al., 1992; Lockwood, 2003).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특히 금융 및 정보통신 산업이 고령자 돌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차이를 보인다(Barr et al., 1992). 고령자 돌봄 정책의 도입이 단순한 조직 특성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제도의 맥락적 수용성과 제도에 대한 조직 내부 인식, 실천 주체의 이해도와 같은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VI. 결론 및 토론

한국 사회는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의 가족 돌봄을 위한 제도는 여전히 출산과 육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반면, 배우자나 고령 부모 돌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자 돌봄에 대한 기업과 일터에서의 지원이 부족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직접 고령 부모를 돌보는 비율은 매우 낮고, 주로 고령 배우자나 형제자매, 혹은 외부 인력에 의해 돌봄이 수행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돌봄 책임이 가족 내부에서 외부 서비스로 이전되는 '돌봄 외주화' 현상을 반영하며,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은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고령자 돌봄은 성별에 따라 불균형하게 분담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딸이나 며느리에게서 돌봄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아들이나 사위보다 현저히 높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 인구의 확대는 가족 내 돌봄 자원의 부족을 가중하며, 여성의 경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고령자 돌봄 부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저해하고, 노동시장 이탈과 경력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기업은 고령자 돌봄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활용해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고령자 돌봄 제공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2023년 국내 2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고령 가족 돌봄 정책을 운영하는 기업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직장인의 고령 가족 돌봄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충처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직원들의 고령 가족 돌봄에 대한 요구와 제안을 성공적으로 수렴하는 통로가 된다. 한국 기업에서 고충처리 제도는 직원의 의견이 기업 정

책에 반영될 수 있는 소통의 창구이며, 고령 가족 돌봄과 관련된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는 기업 내에서 가족 돌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남성 직원이 많아질수록 고령 가족 돌봄을 포함한 포괄적인 복지 정책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직장 내 성평등과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Shin and Kim, 2023).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확산은 단지 육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령 가족 돌봄과 같은 다른 형태의 돌봄 필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작동한다. 기업이 고령 가족 돌봄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제도가 존재하는 기업이 고령 가족 돌봄 정책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기업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그에 따른 돌봄의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한 포용성을 높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제도를 제공하는 기업은 육아뿐만 아니라 고령 가족 돌봄과 같은 다른 형태의 돌봄 요구에도 주목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휴게공간 및 수유실을 갖춘 기업에서 고령 가족 돌봄을 위한 정책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당 시설은 모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가족 돌봄 수요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려는 기업의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성휴게공간과 수유실을 통해 마련된 지원 체계는 직장 내 포용적 문화를 촉진하고, 구성원이 상호 지원과 협력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이러한 기반은 고령 가족 돌봄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포용 역량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고령자 돌봄 제도를 단지 고령자를 위한 복지 수단으로 이해하는 협소한 시각을 넘어서야 함을 강조한다. 고령 가족 돌봄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은 개별 제도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돌봄 수요를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조직문화와 제도에 반영하고 있었

다. 이들 기업은 고령자 돌봄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한부모 가정 지원, 여성 휴게공간 마련 등 상호 연계된 실천을 통해 가족 돌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포용적 조직문화를 형성했다. 본 연구의 발견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기업 정책이 특정 구성원을 위한 단편적 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025년 기준, 한국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고령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에게 긴급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최대 1년 이내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제도 이용이 불가하며, 근로자 이외에 고령자의 직계비속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도의 사용을 거절할 수 있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제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5). 실제로 각 제도에 대해 20% 이상의 기업이 '전혀 사용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했으며,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실질적인 활용률 또한 낮은 수준이다(통계청, 2025b).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돌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업일수록 노동자의 고령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고령 가족 돌봄 제도는 단순한 복지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과 포용적 인사전략의 한 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과 정착에는 현실적 제약 또한 존재한다. 특히 인사·복지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고령자 돌봄 지원제도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크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수적이다. 단계적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 사업 운영, 인건비 및 복지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공공-민간 협력 모델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고충처리 제도의 존재가 기업의 고령자 돌봄

지원 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근로자와의 소통 창구를 원활하게 유지하며 고령자 돌봄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데부터 시작하여, 이를 토대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과 인적 자원이 충분한 기업의 경우, 돌봄 관련 휴가·휴직의 보장이나 직접적인 돌봄 비용 지원과 같은 제도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은 지역 수준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직원 간의 가족돌봄 자조모임을 만들거나, 정부와 연계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근로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돌봄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고령자 가족 돌봄 제도의 제도화를 추진했으며, 정부가 민간 기업의 실천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돌봄휴가, 근로 시간 단축, 유연근무, 외부 서비스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지원이 도입되었으며, 2023년 기준 돌봄휴업제도와 돌봄휴가제도를 규정한 사업장이 각각 72.8%, 69.9%에 달한다. 또한 돌봄휴업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을 통해 93일까지 임금의 67% 상당의 휴업수당이 제공된다. 반면, 한국의 현행 가족 돌봄 지원 제도는 근로자가 무급으로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득 보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이은주 외, 2024). 이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사례에서 정부 주도의 제도 설계는 제도 보급과 실행 기반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Wang et al., 2013).

그러나 단순한 제도 보유만으로는 실질적 활용을 담보할 수 없다. 캐나다의 사례에서 고령자 돌봄 관련 제도를 도입한 고용주는 11.8%에 달하지만, 실제 활용률은 0.3%에 불과하다(Zeytinoglu, Cooke, and Mann, 2010). 제도 인지도 부족, 조직문화 저항, 업무 부담 등 비제도적 요인이 실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령 가족 돌봄 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제도 설계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조성, 인식 개선, 정부의 정책적 인센티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이지연·박종석·김수한, 2024). 특히 중소기업 대상의 실천 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층적 접근이 병행될 때, 제도 확산과 실효성 확보라는 이

중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포용적 조직문화를 나타내는 제도적 특성과 고령 가족 돌봄 제도의 도입 간에는 역인과(reverse causality)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포용적 조직문화가 돌봄 제도 도입을 이끌었을 가능성뿐 아니라 돌봄 제도의 도입이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패널자료나 질적 연구의 병행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에 사용된 설문자료는 고령 가족 돌봄 제도의 '존재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제도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질적 운영 수준은 식별하기 어렵다. 예컨대, 동일하게 '제도가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일부는 일회성 안내자료 제공에 그칠 수 있으며, 다른 일부는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 간병비 지원, 외부 서비스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제도 수준의 질적 편차를 포착할 수 없는 점은 분석 해석의 제약으로 작용한다.

제도 정보의 한계는 설문 자료의 문제뿐 아니라 제도 환경에서 비롯되는 제약에서도 나타난다. 자녀 돌봄과 관련한 제도(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는 법령에 따라 적용 대상, 기간, 급여 체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고령 가족 돌봄의 경우에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법정 권리가 마련되어 있으나, 급여 지급 의무는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유급 여부, 부가 혜택, 운영 방식 등은 기업 재량에 크게 의존하며, 제도 설계의 구체성, 적용 범위, 지원 수준에서 기업 간 이질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몇 가지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고령자 돌봄 제도의 세부 항목별 설계 내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직원 대상 조사나 사례 연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에 대한 다층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고령 가족 돌봄과 같은 새로운 복지

영역이 조직문화와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사례 연구나 혼합 방법론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법·제도적 가이드라인 마련 수준, 인센티브 구조, 산업별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연구가 병행되어야 기업 실천의 제도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6월 15일 접수
2025년 8월 20일 수정 완료
2025년 7월 16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강수향·김지선. 2019. “노부모를 돌보는 아들의 돌봄 수행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1(4): 203-233.

강은나·김혜수·정찬우·김세진·이선희·주보혜·황남희·김경래·이혜정·최경덕. 2023.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20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김수한. 2023. “한국 기업의 다양성 우수 사례: CJ제일제당에서 배우는 5가지.” 「Diversitas」 제38호.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김여진. 2023.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청.

김원정. 2020. “가부장적 가족주의 유재와 한국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도입.” 「한국여성학」 36(1): 95-137.

김은정·이신영. 2010. “노인의 가족유형별 돌봄서비스 이용의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2(2): 1-30.

김주현. 2016. “한국여성 노인의 가족 돌봄과 생활만족도.” 「한국인구학」 39(2): 49-70.

노사발전재단. 2025. “2024년 일터혁신 실태조사.”

동아일보. 2024. “인구 20%가 65세이상 ‘초고령사회’ 됐다.” 2024년 12월 25일.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24/130718017/2

류한별·김가현. 2022. “성인자녀의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2(4): 93-109.

문현아·차승은. 2020. “가족의 노인 돌봄 경험과 딜레마: 누가 돌보고 어디에서 돌봐야 하는가.” 「가족과 문화」 32(1): 102-131.

문현아. 2021.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 모색: 남성의 가족돌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7(3): 33-63.

박미진. 2020. “남성의 돌봄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노동시간 특성에

따른 부모·부성휴가제도 효과의 차이 분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영란·강순화. 2008. "여성의 취업 및 취업상태 변화가 노인 돌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42: 99-121.
신우리·전기택·주재선·강민정·최진희·김효경·이기재. 2024.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이순미·김혜경. 2009. "남성노인의 배우자 돌봄에 대한 연구: 부부가구 노인의 생애서사 분석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4): 63-94.
이은주·곽서희·박수경. 2024.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 돌봄 지원제도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지연·박종석·김수한. 2024. "한국 조직문화가 남녀 관리자의 유연근무 활용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36(2): 134-168.
조명아·김주현. 2021. "싱글 아들의 노부모 돌봄 경험과 돌봄 의식." 「가족과 문화」 33(1): 1-36.
조상미·박은주. 2011. "기업복지제도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197-226.
차승은·정선이. 2021. "근거이론 접근을 통해 본 노년기 여성의 배우자 돌봄 경험." 「가족과 가족치료」 29(1): 59-87.
최경덕·안태현. 2019. "비공식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 39(1): 39-71.
최희경. 2011. "노인 돌봄과 노동의 양립을 위한 가족 지원 정책 연구." 「한국사회정책」 18(4): 271-298.
통계청. 2023. "2023 고령자 통계."
_____. 2025a. "2025 장래인구추계."
_____. 2025b. "일가정양립실태조사."
허민숙. 2022. "가족 다양성의 현실과 정책 과제: 비친족 친밀한 관계의 가족 인정 필요성." 「NARS 현안분석」 251. 국회입법조사처.
Arksey, Hilary. 2002. "Combining Informal Care and Work: Supporting

Carers in the Workplace."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10(3): 151-161.

Barling, Julian, Kathryn E. MacEwen, E. Kevin Kelloway, and Susan F. Higginbottom. 1994. "Predictors and Outcomes of Elder-Care-Based Interrole Conflict." *Psychology and Aging* 9(3): 391-397.

Barr, Judith K., Katrina W. Johnson, and Leon J. Warshaw. 1992. "Supporting the Elderly: Workplace Programs for Employed Caregivers." *The Milbank Quarterly* 70(3): 509-533.

Barrah, Jaime L., Kenneth S. Shultz, Boris Baltes, and Heidi E. Stolz. 2004. "Men's and Women's Eldercare-Based Work-Family Conflict: Antecedents and Work-Related Outcomes." *Fathering: A Journal of Theory, Research & Practice about Men as Fathers* 2(3): 305-330.

Bloom, Nick, Tobias Kretschmer, and John Van Reenen. 2011. "Are Family-friendly Workplace Practices a Valuable Firm Resour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2(4): 343-367.

Brown, Melissa and Marcie Pitt-Catsouphes. 2013. "Workplace Characteristics and Work-to-Family Conflict: Does Caregiving Frequency Matter?"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6(5): 452-460.

Burch, Katrina A., Alicia G. Dugan, and Janet L. Barnes-Farrell. 2019. "Understanding What Eldercare Means for Employees and Organizations: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ork, Aging and Retirement* 5(1): 44-72.

Chung, Heejung. 2019. "'Women's Work Penalty' in the Access to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across Europe."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5(1): 23-40.

_____. 2020. "Company-Level Family Policies: Who Has Access to It and What Are Some of Its Outcomes?" pp.535-573 in Rense Nieuwenhuis and Wim Van Lancker(eds.) *The Palgrave Handbook*

of Family Policy.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Clancy, Rebecca L., Gwenith G. Fisher, Kelsie L. Daigle, Christine A. Henle, Jean McCarthy, and Christine A. Fruhauf. 2020. "Eldercare and Work Among Informal Caregivers: A Multidisciplinary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35: 9-27.

Dembe, Allard E., Elizabeth Dugan, Phyllis Mutschler, and Diane Piktialis. 2008. "Employer Perceptions of Elder Care Assistance Programs." *Journal of Workplace Behavioral Health* 23(4): 359-379.

Dembe, Allard E. and Jamie S. Partridge. 2011. "The Benefits of Employer-Sponsored Elder Care Programs: Case Studi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Journal of Workplace Behavioral Health* 26(3): 252-270.

Dembe, Allard E., Jamie S. Partridge, Elizabeth Dugan, and Diane S. Piktialis. 2011. "Employees' Satisfaction with Employer-Sponsored Elder-Care Programs." *International Journal of Workplace Health Management* 4(3): 216-227.

Galinsky, Ellen, James T. Bond, Kelly Sakai, Stacy S. Kim, and Natalie Giuntoli. 2008. *National Study of Employers*. New York, NY: Families and Work Institute.

Gignac, Monique A. M., E. Kevin Kelloway, and Benjamin H. Gottlieb. 1996. "The Impact of Caregiving on Employment: A Mediational Model of Work-Family Conflict." *Canadian Journal on Aging/La Revue Canadienne du Vieillissement* 15(4): 525-542.

Goodstein, Jerry. 1995. "Employer Involvement in Eldercare: An Organizational Adaptation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6): 1657-1671.

Grochowski, Julie, Helen Lamont, and Judy Dey. 2024. *Identifying*

Employer Supports for Family Caregivers of Older Adults (Issue Brief). Washington, DC: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ammer, Leslie B. and Margaret B. Neal. 2008. "Working Sandwiched-Generation Caregivers: Prevalence,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The Psychologist-Manager Journal* 11(1): 93-112.

Henle, Christine A., Gwenith G. Fisher, Jean McCarthy, Mark A. Prince, Victoria P. Mattingly, and Rebecca L. Clancy. 2020. "Eldercare and Childcare: How Does Caregiving Responsibility Affect Job Discrimination?"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35(1): 59-83.

Kalysh, Kateryna, Carol T. Kulik, and Sanjeewa Perera. 2016. "Help or Hindrance? Work-Life Practices and Women in Management." *The Leadership Quarterly* 27(3): 504-518.

Kim, Jeungkun, Berit Ingersoll-Dayton, and Minyoung Kwak. 2013. "Balancing Eldercare and Employment: The Role of Work Interruptions and Supportive Employer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2(3): 347-369.

Kossek, Ellen Ernst, Matthew B. Perrigino, and Brenda A. Lautsch. 2023. "Work-Life Flexibility Policies from a Boundary Control and Implementation Perspective: A Review and Research Framework." *Journal of Management* 49(6): 2062-2108.

Lahaie, Claudia, Alison Earle, and Jody Heymann. 2013. "An Uneven Burden: Social Disparities in Adult Caregiving Responsibilities, Working Conditions, and Caregiver Outcomes." *Research on Aging* 35(3): 243-274.

Lam, Winnie Wing Yee, Karina Nielsen, Christine A. Sprigg, and Ciara M. Kelly. 2022. "The Demands and Resources of Working Informal

Caregivers of Older People: A Systematic Review." *Work & Stress* 36(1): 105-127.

Liebig, Phoebe S. 1993.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Employer-Sponsored Eldercare Programs: Implications for Employed Caregivers." *Journal of Women & Aging* 5(1): 59-78.

Lockwood, Nancy R. 2003. *The Aging Workforce: The Reality of the Impact of Older Workers and Eldercare in the Workplace*. SHRM Research Department.

Lozano, Yvonne M., Gloria P. Martinez-Ramos, and Maura Pilotti. 2016. "Assessing Caregivers' Needs in the Workplace: A Pilot Study." *Educational Gerontology* 42(7): 465-473.

McNamara, Tay K., Marcie Pitt-Catsouphes, and Melissa Brown. 2013. "Employer Policies for Dependent Care: The Role of Internal Demographics."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25(2): 192-211.

Moen, Phyllis, Erik Kojola, and Kate Schaefers. 2017. "Organizational Change Around an Older Workforce." *The Gerontologist* 57(5): 847-856.

Murphy, Caroline and Christine Cross. 2021. "Blurred Lines: Work, Eldercare and HR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32(7): 1460-1485.

Neal, Margaret B. and Donna L. Wagner. 2002. "Working Caregivers: Issu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Aging Network." *Program Development Issue Brief commissioned by the Administration on Aging,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ogues, Sarah Marie and Diane-Gabrielle Tremblay. 2023. "Keeping Carers from the 'Precariat': Availability of Carer-Friendly Workplace Policies for Employees with Adult and Elder Care Responsibilities in Quebec."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43(5/6): 521-536.

Pavalko, Eliza K. and Kathryn A. Henderson. 2006. "Combining Care Work and Paid Work: Do Workplace Policies Make a Difference?" *Research on Aging* 28(3): 359-374.

Petts, Richard J., Trenton D. Mize, and Gayle Kaufman. 2022. "Organizational Policies, Workplace Culture, and Perceived Job Commitment of Mothers and Fathers Who Take Parental Leave." *Social Science Research* 103: 1-16.

Pizarro, Jon and Leire Gartzia. 2024. "Paternity Leave: A Systematic Review and Directions for Research."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34(1): 1-18.

Ramesh, Shruti, Rachelle Ireson, and Allison Williams. 2017. "International Synthesis and Case Study Examination of Promising Caregiver-Friendly Workplaces." *Social Science & Medicine* 177: 52-60.

Schneider, Ulrike, Birgit Trukeschitz, Richard Muhlmann, and Ivo Ponocny. 2013. ""Do I Stay or Do I Go?"-Job Change and Labor Market Exit Intentions of Employees Providing Informal Care to Older Adults." *Health Economics* 22(10): 1230-1249.

Shin, Hwajin and Soohan Kim. 2022. "Overcoming Women's Isolation at Work: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ractices on Female Managers' Workplace Relationships." *International Sociology* 37(3): 330-354.

_____. 2023. "Motherhood and Mentoring Networks: The Unequal Impact of Overwork on Women's Workplace Mentoring Networks." *Sociological Perspectives* 66(3): 434-454.

Shoptaugh, Carol F., Jeanne A. Phelps, and Michelle E. Visio. 2004. "Employee Eldercare Responsibilities: Should Organizations Care?"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19: 179-196.

Trukeschitz, Birgit, Ulrike Schneider, Richard Muhlmann, and Ivo Ponocny. 2013. "Informal Eldercare and Work-Related Strain."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8(2): 257-267.

United Nations. 2023. *World Social Report 2023: Leaving No One Behind in an Ageing World*.

Wang, Frank T. Y., Masaya Shimmei, Yoshiko Yamada, and Machiko Osawa. 2013. "Struggling for Recognition: Working Carers of Older People in Japan and Taiwan." pp.89-104 in Teppo Kroger and Sue Yeandle(eds.). *Combining Paid Work and Family Care: Policies and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Bristol: Policy Press.

Zeytinoglu, Isik U., Gordon B. Cooke, and Sara L. Mann. 2010. "Employer Offered Family Support Programs, Gender and Voluntary and Involuntary Part-Time Work." *Relations Industrielles/Industrial Relations* 65(2): 177-195.

Zuba, Martin and Ulrike Schneider. 2013. "What Helps Working Informal Caregivers? The Role of Workplace Characteristics in Balancing Work and Adult-Care Responsibiliti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4: 460-469.

Eldercare Support Policies in Korean Workplaces: Corporate Responses to Family Care Responsibilities in a Super-Aged Society

Kim, Soohan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Woo, Hajin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Abstract

As South Korea is rapidly becoming a super-aged society, eldercare is emerging as a major challenge for working adults. Yet, most family-friendly polici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focus on childcare and fertility, with limited attention to eldercare. This study examines how companies respond to eldercare needs and identifies organizational factors linked to policy adoption. It draws on case exampl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survey data from 200 publicly listed and foreign-invested firms in Korea. The analysis shows that firms with inclusive practices—such as grievance handling systems, paternity leave, support for single-parent households, and facilities like women's rest areas and nursing rooms—are more likely to adopt eldercare policies. In contrast, company size and financial capacity have no significant impac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ldercare policies are shaped less by resources and more by organizational culture.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integrated family policies that reflect diverse caregiving needs across the life course in an aging society.

Key Words: aging society, family caregiving, family-friendly policies, diversity, corporations

한국사회 제26집 2호(2025년): pp.119-145

이중화 시대 작업장 민주주의의 재구성*

강 민 형**

요 약

21세기 자본주의 노동 세계에서 불안정 노동의 확산은 노동의 불안정화와 노동시장 이중화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증대시켰다. 불안정 노동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노동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저항 운동이 어떻게 작업장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계기로 이어졌는지 분석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연구는 불안정 노동과 이중화 시대 작업장 민주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작업장 민주주의의 부상과 쇠퇴를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오늘날 작업장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안정 노동자를 포괄하는 산업 시민권의 확대와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과 배달 플랫폼 노동자 운동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중화 시대 작업장 민주주의를 향한 노동운동의 궤적을 추적한다.

주제어: 불안정 노동, 산업 시민권, 자율성, 경제 민주주의, 노동운동

---

* 이 논문은 2023년 전북대학교 신임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논문의 초고는 2023년 8월 한국이론사회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귀중한 논평을 해 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철식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mkang@jbnu.ac.kr

Ⅰ. 서론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학 연구자들은 노동의 불안정화 현상에 주목하였다. 불안정 노동은 표준 고용 관계를 특징짓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산업안전, 보건 등에 관한 일련의 노동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고용 안정과 기업 복지, 단체 교섭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Agarwala, 2018; Betti, 2018; 이주희, 2011). 21세기 자본주의에서 불안정 노동자는 전 세계 노동자 계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 사이 전 세계 노동자의 약 60~65%는 취약 노동자, 실업자, 빈곤층 등의 글로벌 산업 예비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대적 과잉인구의 비중이 대략 30% 이하인 선진 산업국가에서도 임금 노동자 중 상당수가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Jonna & Foster, 2016). 이들은 고용 불안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차별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불안정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21세기 자본주의 노동 사회는 노동시장 이중화와 작업장 이중구조화, 노동운동의 파편화를 경험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탈규제와 유연화로 인해 선진 산업국과 신흥 산업국 모두에서 1990년대부터 노동권과 사회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였고(스탠딩, 2014), 이는 상대적인 고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서비스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dualization)로 이어졌다(Emmenegger, Häusermann, Palier & Seeleib-Kaiser, 2012). 또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고 이들 간 임금 격차를 통해 자본의 수익성을 증진하려는 작업장 이중 구조의 심화를 초래하였다(Silver, 2003; Zhang, 2011). 나아가 이러한 이중화는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를 희생시켜 대규모 수출 제조업이나 고숙련 서비스 산업의 핵심 노동력을 보호하려는 사용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계급 간 연합을

강화하여 노동운동의 파편화를 촉진하기도 한다(Palier & Thelen, 2010).

그런데 노동의 불안정화와 노동시장 이중화가 필연적으로 노동운동의 약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불안정 노동자는 착취와 차별을 수동적으로 감내하기보다는 집단 저항을 스스로 조직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자 운동에 관한 선행 연구는 전 지구적 규모로 형성된 불안정 노동자가 자발적인 조직화와 집단 저항을 통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해 왔고 작업장과 지역사회에서 기존에 형성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조직과의 연대를 통해 사용자와 국가로부터 양보를 얻어냈음을 강조한다(Atzeni, 2016; Milkman, 2006; Mosoetsa, Stillerman & Tilly, 2016). 특히 불안정 노동자는 노동자-시민으로서 사용자로부터의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등 전통적인 노동권보다는 국가로부터의 복지 확대를 얻어냄으로써 사회권의 확대를 꾀하는 새로운 노동 정치를 시도하며 공적 공간에서의 상징적 투쟁을 통해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노동자의 연합적 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Agarwala, 2013; Chun, 2009). 이와 같은 21세기 불안정 노동자 운동의 부상은 20세기 중반 복지국가와 산업 시민권의 제도화에 비견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급 타협의 가능성에 관한 학술적 관심을 증가시켰다.

이 연구는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노동시장 이중화의 심화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 자본주의 노동 세계에서 작업장 민주주의를 어떻게 재구축할 수 있을지 이론적, 실천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Ⅱ장에서는 작업장 민주주의의 부상과 쇠퇴를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오늘날 노동의 불안정화와 이중화 경향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작업장 민주주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논증한다. Ⅳ장에서는 산업 시민권의 확장과 노동과정의 자율성 확보의 측면에서 21세기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운동인 자동차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과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 운동의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비공식 불안정 노동자의 저항 운동이 어떻게 작업장과 노동조합 내에서 노동자의 민주적 참여와 자율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는지 설명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Ⅴ장에서는 이 연구가 작업장 민주주의 이론의 재구성과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에 관한 경험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연구의 의의를 밝힌다.

Ⅱ. 작업장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1. 산업 시민권과 경제 민주주의의 제도화

이 장에서는 작업장 민주주의 개념을 이론적, 역사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노동시장 이중화로 인해 산업 시민권과 일터 민주주의가 어떻게 쇠퇴하였는지 조명한다. 작업장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노동 세계의 이해당사자로서 노동자의 정치적 성원권을 인정하고 고용 안정과 단체교섭에 대한 노동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민주적 참여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Ferreras, Battilana & Méda, 2022: 32~34; 박명준, 2022: 40~42). 작업장 민주주의는 일하는 사람의 고용과 생계 안정, 복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기업의 사적 소유와 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의 완화를 지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업장 민주주의는 영국의 사회학자인 마셜(T. H. Marshall)이 제시한 사회적 시민권으로서 산업 시민권의 제도화와 미국의 정치학자인 달(Robert Dahl)의 경제 민주주의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우선 사회적 시민권으로서 산업 시민권은 임금, 노동 조건 등 작업장 생활과 연관된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민주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마셜은 「시민권과 사회계급」에서 산업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공민권의 확대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지만 19세기와 20세기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인해 노동계급이 보통 선거권을 획득하였고 노동자의 생계와 사회경제적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적 시민권을 쟁취하였음을 강조한다(Marshall, 1992: 8~13, 27~28). 20세기 중반 선진 산업국가에서 노동조합의 강력한 조직력과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사민주의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 덕분에 산업 시민권은 정치적 시민권에 상응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정착되었고 노사관계 시스템의 일부로 인정받았다(Marshall, 1992: 40). 이는 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과 더불어 공동 협의권 및 공동결정권과 같은 노동자 참여권을 보통 선거권이나 납세의 의무와 같은 노동자-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의무로 제도화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전후 산업 시민권의 제도화는 지구적 차원의 대규모 노동운동의 부상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이미 1차 세계대전 직후 작업장 평의회 운동을 통해 현장에 대한 통제권을 노동자들이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나(일리, 2008: 221) 역사상 전례 없었던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노동 소요는 미국과 서유럽의 각국 정부와 사용자가 케인즈주의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산업 민주주의의 원칙을 수용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Andreas, 2019: 228~231). 현장 노동자들의 비공인 파업에 직면하여 국가와 자본은 완전고용,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 인상, 단체 교섭의 제도화를 받아들였고, 노조에 양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전투성을 낮추고자 하였다(Silver, 2003: 151~154). 이는 파업의 감소와 더불어 노조 조직률의 상승과 노동자들의 교섭력 증대로 이어졌고, 적어도 글로벌 북반구 지역에서 20세기 중후반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 타협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Hyman, 2016: 14).

이처럼 마셜이 제안한 사회적 시민권으로서 산업 시민권 개념이 노사관계와 계급 갈등의 정치적 제도화를 강조하였다면, 로버트 달은 기업 내 의사 결정에서 노동자의 민주적 참여 가능성에 보다 주목하였다. 그는 「경제적 민주주의에 관하여」에서 1인 1표를 통해 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지배-종속 관계로 인해 자본주의 기업 내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다(달, 2011: 65~66). 그는 국민국가와 같은 정치 공동체뿐 아니라 기업 조직과 작업장에서도 민주적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달, 2011: 120~125). 그리고 노동자 자주 관리 기업이나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같은 협동조합 기업을 작업장 민주주의의 원칙을 구현한

경험적 사례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노동자의 민주적 권리와 기본권을 자본주의 경제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은 사용자 혹은 자본가가 일터에서 행사하는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고 권위주의적 통제를 약화하며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대항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Ferreras, 2023).

일터에서 경제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노동자 참여제도의 확산과 공고화는 1960년대 후반 서유럽에서 노동자 파업의 부상을 배경으로 한다. 1960년대 후반 평조합원이 주도하는 비공인 파업(wildcat strikes)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총연맹과 산별노조, 사용자와 정부는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 민주주의 제도를 수용하였다(Streeck, 1995: 321~324). 노동자 경영참가 제도의 도입은 1950년대 서유럽에서 시작되었지만, 작업장 평의회 제도의 확산과 공동결정제도를 통한 기업 이사회 차원의 노조 대표성 강화는 197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빌리 브란트 정부는 1960년대 말 노동의 인간화 구상을 제안하였고 이는 1970년대 생산과정의 합리화에 맞서 노동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작업 환경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조와 사민당 주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Müller, 2025). 또한 사용자는 현장에서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대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노동자 협의 구조 내에 노조를 끌어들여 노사관계를 통한 거시경제 조정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Dukes & Streeck, 2023: 55~56). 이처럼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 네오코포라티즘적 계급타협 모델의 확산은 완전고용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서 임금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을 연계하여 노조의 영향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2.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작업장 민주주의의 쇠퇴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부상은 노동-자본 간 계급 타협에 기반을 둔 전후 노사관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미국과 서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북반구 지역의 경제위기는 1980년대 자본의 수익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불안정 노동의 증가로 이어졌다.

1970년대 이후 선진 산업국에서 제조업 고용의 감소는 실업률의 증가를 낳았고 경제의 세계화는 기업 간 경쟁을 심화시켜 비용 감소를 위한 정리해고와 노사관계의 유연화를 촉진하였다. 노조 조직률이 쇠퇴하고 완전고용이 유지되지 못하는 가운데 글로벌 북반구 각국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노동시장의 탈규제와 사영화 등 노동 유연성 확대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다.

1980년대 이후 노동의 인간화를 비롯한 작업장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구상은 점차 약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 산업국 경제에서는 유연생산방식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자동화 등 생산방식 혁신과 함께 다기능화를 통해 노동자의 기능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조직 노동의 교섭력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노동자 참여에 기반을 둔 생산 합리화와 자율적 작업 조직 설계 등 노동의 인간화 구상을 실현하기보다는 수량적 유연성 확보를 통한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었다(Llanos-Reyes & Horstmann, 2025). 특히 제조업에서 하도급 생산의 확대는 일터에서 균열을 형성하였고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고 직무 안정을 누리는 노동자의 규모와 비중을 축소하였다(Weil, 2014). 그 결과, 유연생산방식의 도입은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자율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 내부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조건의 악화와 더불어 노동과정의 재테일러화를 촉진하였다(Schumann, 1998).

이러한 변화는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산업 시민권 박탈과 노동과정에서 자율성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 표준 고용 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고용계약과 노사관계는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였고 노동자에게 산업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와 자본은 산업 시민으로서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지닌 성원권을 박탈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하도급 노동자와 같은 간접고용을 확대하여 법적 사용자와 실질적 사용자를 분리하거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의 노동자성을 부정함으로써 실현된다(Kalleberg, 2011; 82~104). 따라서 21세기 자본주의에서 불안정 노동은 작업장에서 산업 시민권을 노동자에게 부여

하지 못하는 개별적인 고용계약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슈트렉(Wolfgang Streeck)은 20세기 중반 산업 시민권은 노동자의 고용계약이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리·의무와 결합하여 있었고 작업장과 노조는 노동자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공간이었음을 강조한다(Dukes & Streeck, 2023: 68~73).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 불안정 고용은 노동자에게 사회적 지위와 산업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는 파편화된 계약으로 전락하였다. 이처럼 권리를 박탈당한 불안정 노동자의 증가는 신자유주의 시대 고용관계의 시장화가 일터에서 민주주의의 쇠퇴를 어떻게 가속하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표 1〉 참조).

〈표 1〉 산업 시민권의 부상과 쇠퇴

사민주의 시대 산업 시민권	신자유주의 시대 고용계약의 시장화
고용 계약과 사회적 지위의 결합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고용 계약
고용/직업(종신 고용)	일(불안정 노동)
집단 계약(노조의 단체 교섭)	개별 계약(미조직 노동자)
민주적 권위, 정치화, 사민주의	시장 권위, 사영화, 신자유주의

출처: Dukes & Streeck(2023: 68)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자신의 직무와 일에 대한 통제 권한을 잃고 노동과정에서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다. 노조로 조직되지 못한 다수의 서비스 산업 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 조건, 노동시간, 작업 계획 등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노조 교섭력의 쇠퇴와 더불어 일터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가 공고화됨에 따라 오늘날 자본주의 기업의 작업장은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작업 수행 방식을 결정하는 등 경영진의 특권이 관철되는 영역으로 변모하였다(Malleson, 2013: 616~617).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사용자의 통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노조의 대항권력으로서 직무 규제력과 노동과정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요컨대, 신자유주의의 부상에 따른 노동의 불안정화는 작업장 민주주의 제도의 형해화를 낳았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고용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조 조직률은 감소하였고 기업에서 정치적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작업장에서 노동자 참여가 제한되고 현장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됨에 따라 다수의 노동자는 노동과정에서 직무 규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나아가 노조로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간 균열이 노동시장과 일터에서 심화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성 격차가 발생하였고 이는 노동운동의 연대 약화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동운동의 변화는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 계급 타협을 통해 형성되었던 작업장 민주주의와 노동자 참여를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의 의제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작업장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인가? 본 연구는 불안정 노동의 시대 작업장 민주주의의 이론적 재구성을 통해 21세기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민주적 참여에 기반을 둔 노동의 탈상품화 전략을 새롭게 기획하고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달성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일터에서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이론적 재구성 전략을 밝히고 사례 연구를 위한 분석 틀을 제안한다.

Ⅲ. 노동의 불안정화와 작업장 민주주의: 이론적 재구성과 분석 틀

21세기 자본주의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거대 기업은 개별 노동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수많은 노동자를 위계적 관계로 편입하였다. 특히 오늘날 거대 기업은 임시직, 계약직, 하도급 노동자 등 다수의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여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비용 절감을 달성하나 이들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1] 불안정

1) 예컨대, 한국의 재벌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도급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지만, 이들의 법적 사용자는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은 사실상 대기업 사용자에 의존하여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종속적 관계에 기반을 둔 권리 주장은 불가능하며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작업장에서의 산업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제약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작업장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에 직접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규정하는 기존의 산업 시민권 개념에서 벗어나 불안정 노동자를 작업장 내 민주적 의사 결정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산업 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불안정 노동이 지배적인 고용관계로 자리 잡은 오늘날 자본주의 기업에서 하도급,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신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거대 기업의 경영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을 작업장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의무를 지닌 기업의 민주적 주체(corporate demos)로서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Stehr, 2023: 519~520).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일하는 시민으로서 법적 종사상 지위와 관계없이 기업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산업 시민권을 행사하고 작업장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Landemore & Ferreras, 2016: 56).

다른 한편으로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작업 계획, 노동 조건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현장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20세기 전반 생디칼리즘의 영향을 받았던 미국의 신노조운동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들은 때로는 파업을 불사하면서 노동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통해 작업장에서 경영진의 권한을 제약하고자 노력하였다(Montgomery, 1979: 98~101; Kimeldorf, 1988: 27~29). 따라서 오늘날 사용자의 명령과 지시, 직무 통제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현장에 대한 통제권과

이지 대기업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자본이 소유·통제하는 음식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라이더들은 플랫폼 업체를 위해 일하지만 배달 대행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독립 계약자이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지위를 지닌다.

작업장 주권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탐색하는 논의는 작업장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Eidlin & Uetricht, 2018: 73~74).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불안정 노동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표준과 규범으로 정착된 21세기 자본주의 노동 세계에서 작업장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작업장에서의 시민권과 노동과정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활용하여 작업장 체제의 이념형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장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 운동의 동학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 공장 체제의 역사적 변동에 관한 안드레아스(Andreas, 2019)의 논의를 활용하여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작업장 체제의 네 가지 이론적 유형을 제안한다. 여기서 가로축은 노동과정에서의 자율성을, 세로축은 산업 시민권의 제도화 정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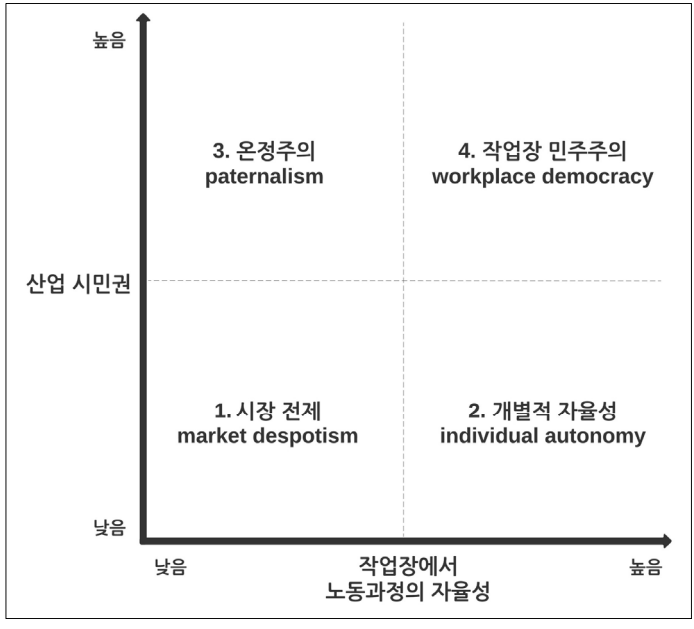

출처: Andreas(2019: 13)

〈그림 1〉 작업장 체제의 이념형: 산업 시민권과 노동과정의 자율성

첫 번째 유형은 일터에서 노동자의 산업 시민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억압과 통제를 경험하는 상황을 지시한다. 이는 노동자에 대한 물질적 양보가 부재한 가운데 현장에서 관리자의 일방적인 통제가 관철되고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시장 전제(market despotism)라 불리는 작업장 체제로 개념화된다(Burawoy, 1985: 88-90). 이러한 시장 전제 혹은 전제적 노동 통제는 20세기 중반 선진 산업국가에서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노동-자본 간의 계급 타협을 계기로 점차 사라졌으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노동력의 재상품화로 인해 21세기 자본주의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자율성을 누리며 작업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갖지만, 일터에서 노동자의 산업 시민권과 정치적 성원권이 약한 작업장을 가리킨다. 이러한 작업장 체제는 노동자의 개별적 자율성(individual autonomy)을 특징으로 한다. 노동자들의 이직이 잦으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과정에서 높은 자율성을 발휘하는 고임금-고숙련의 IT산업 개발자나 엔지니어 직군에서 주로 발견된다.

세 번째 유형은 노동자의 산업 시민권과 작업장 성원권을 보장하나 노동과정에서의 자율성이 낮은 작업장 체제를 지시한다. 노동자들은 종신 고용, 직무 안정, 단체 교섭권을 보장받지만, 전문직과 달리 업무에서 자율성이 낮고 기업 경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유형의 노사관계는 이직률을 낮추고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노동자의 집단 저항을 약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양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온정주의(paternalism) 작업장 체제(Murray & Schwartz, 2015; Brown, 2000) 혹은 헤게모니 체제(hegemonic regime)로 개념화할 수 있다.[2] 이러한 작업장 체제는 오늘날

2) 온정주의는 노동-자본 간 계급 타협이 형성되기 이전(예컨대, 20세기 전반기 미국 포드 사의 사용자와 흑인 노동자 간의 온정주의적 관계) 혹은 이러한 거시-역사적 타협이 붕괴한 이후에도 등장하는 로컬 혹은 작업장 차원의 미시적 타협의 경험을 분석하는 데 사용 가능하다. 대조적으로 마이클 부라보이의 헤게모니 공장 체제 개념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용자가 노동자로부터 자본의 지배력에 대한 동의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특수한 국면에 등장했던 전

기존에 노조로 조직되어 있던 제조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의 노사관계에서 주로 발견된다.

네 번째 유형은 작업장 민주주의로 일터에서 노동자의 산업 시민권과 노동과정의 자율성이 동시에 보장되는 작업장 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가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을 지향한다. 예컨대, 페레라스는 21세기 거대 기업에서 기업 경영의 민주적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주주와 기업 중역이 참여하는 주주 이사회와 함께 기업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노동 이사회를 설치하는 '양원제 기업'(bicameral firm)을 작업장 민주주의의 모델로 제시하였다(Ferreras, 2023).

이상에서 논의한 분석 틀을 활용하여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운동을 사례로 하여 시장 전제적 작업장 체제를 경험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어떻게 산업 시민권을 확대하고 노동과정에서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는지 작업장 민주주의를 향한 노동운동의 분기하는 경로를 설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두 단계에 걸친 질적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던 문헌 자료와 인터뷰를 활용하였다.[3] 첫 번째 현지 조사는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현지 조사 기간에 이루어졌다. 당시 수집된 완성차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에 관한 문헌 자료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수행되었던 17명의 자동차 산업 노동자 및 노동운동 활동가에 대한 심층 면접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현지 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운동의 조직화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라이더유니온에 대한 사례 연구로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021년 6월과 12월, 2022년 12월에서 2023년 4월 사이에 진행되었던 7명의 배달 라이더와 노조 활동가에 대한 심층 면접과 이 기간 수집되었던 라이더유니온의 공식 자료와 노조 내부 문건 등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후 노동-자본 간 계급 타협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헤게모니 공장 체제 대신 온정주의를 작업장 체제의 이념형으로 제안한다.

3) 심층 인터뷰에 관한 기본 정보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Ⅳ. 작업장 민주주의를 향한 노동운동의 궤적

이 장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운동인 2000년대 한국 자동차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과 2020년대 배달 산업 플랫폼 노동자의 저항 운동을 비교한다. 한국의 완성차 공장에서는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사내 하도급 업체를 통해 채용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10여 년 동안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 운동은 배달의 민족 등 대형 배달 플랫폼 업체가 음식 배달 산업을 재편하였던 2010년대 후반 본격화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배달 플랫폼 산업으로 새롭게 유입됨에 따라 2020년대 초반 노동조합의 성장과 노조 운동의 영향력 확대가 두드러졌다.[4] 이처럼 자동차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와 배달 산업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업적 특성과 노동과정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비공식 고용 관계에 놓여 있으며 작업장에서의 낮은 고용 안정과 산업시민권의 부재를 경험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1. 자동차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

한국 완성차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시장 전제적 작업장 체제에서 산업 시민권의 부재와 노동과정에서의 낮은 자율성을 경험하였다. 한국의 완성차 업체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만여 명이 넘는 정규직 노동자를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등으로 공장을 떠났고, 경기가 회복되자 이들의 빈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웠다(인터뷰 #1). 완성차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며 사실상 동일

4) 이들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기업에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한다는 점에서 독립 계약자의 신분을 유지한다(김철식, 2025).

업무를 수행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았고 열악한 노동 조건과 전제적 노동 통제에 시달리고 있었다(Lee & Frenkel, 2004).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으며 현장의 인력 배치나 라인 속도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할 권한 또한 없었다. 관리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반말을 사용하였고 안전화와 장갑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야근과 특근을 강제하고 연차나 휴가 사용을 강하게 통제하였다(인터뷰 #11). 심지어 라인 속도를 맞추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업 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장에서의 비인간적 대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높은 이직률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 초반 지역 노동운동 활동가와 학생운동 출신 노동자들은 완성차 대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독자적인 노조 조직화에 나섰다. 주로 20~30대 남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차별과 착취 경험에 대한 높은 불만 때문에 조직화 캠페인에 호응하였고 상당수는 노조에 가입하였다(인터뷰 #3). 비록 비정규직 노조가 완성차 대기업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저항은 부당한 이유로 계약 해지되었던 비정규직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지키고 현장에서 관리자의 전제적 노동 통제를 막아내고 임금 인상, 휴가비 지급 등 사용자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시작된 불법파견 철폐 투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은 산업 시민권의 확대를 요구한 불안정 노동자의 집단 저항의 성격을 지닌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비롯한 완성차 대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생산직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내 하도급 업체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생산 공정에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노조의 조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인터뷰 #5). 이는 작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치적 성원권을 쟁취하여 이들의 노동권과 사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규직화 투쟁에서 정규직 노동조합 내 전투적 소수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업장 투쟁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노조가 현장에서 조직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현장투, 2005; Kang, 2023). 이처럼 노조 내부의 현장 민주주의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연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주도한 불법파견 투쟁이 지속되는 동력이 되었고, 이들이 제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의 주요 요구 사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산업 시민권 확대를 위한 완성차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2010년대 정규직화 전환이라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의장 라인 사내하청 노동자에 관한 불법파견을 인정함에 따라 2010년 11월에서 12월 사이 25일 동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 투쟁이 벌어졌다(인터뷰 #2). 사용자인 현대자동차 측은 이러한 비공인 파업을 약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수용하였다(인터뷰 #7). 그리고 2012년부터 신규 채용 형식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하여 2021년까지 9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파견 투쟁과 정규직 전환의 경험은 2010년대 중반 한국지엠과 같은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하였다(인터뷰 #13). 이처럼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는 완성차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통해 작업장에서 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의 임금과 고용조건, 노동 환경의 개선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시장 전제 체제(유형 1)에서 온정주의 노사관계(유형 3)를 거쳐 작업장 민주주의 체제(유형 4)로의 전환을 지향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그림 1〉 참조).

2. 배달 플랫폼 노동자 운동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동차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기업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며 작업장에서 산업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음식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배달 라이더는 법적으

로 자영업자 혹은 독립 계약자에 해당한다. 플랫폼 업체는 식당과 라이더,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촉진하는 제3자로 스스로를 규정하여 배달 라이더를 자사의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라이더에 대한 플랫폼 업체의 사용자성을 부정한다(Ravenelle, 2019: 196-202). 음식 배달 노동자들은 도시 공간과 도로를 자신의 작업장으로 삼아 개별적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한다. 비록 완성차 대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조립 라인에서 관리자의 명령과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으나, 이들은 GPS 추적 기술을 비롯한 감시 기술의 영향을 받으며 일감 배분과 배달 단가를 결정하는 배차 알고리즘의 통제 속에서 작업을 수행한다(박수민, 2023). 따라서 노동과정에서 플랫폼 라이더의 자율성과 통제 권한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완성차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결정할 권한을 관리자와 사측이 갖는 것처럼, 플랫폼 업체는 알고리즘을 통해 앱에 접속한 노동자에게 끊임없이 주문을 배정하고 노동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이를 수락 혹은 거절한다. 이 과정에서 라이더들은 알고리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이터 노동에 참여하며 동시에 안정적인 수입을 거두기 위해 단시간 내 배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받는다.

2010년대 후반 등장한 한국의 배달 플랫폼 노동자 운동은 배달 라이더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위험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 시민권으로 요구하는 집단 저항의 성격을 지닌다. 예컨대, 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 라이더의 노동권과 사회권 보장을 목표로 한 제도 개혁을 요구하였고 산재 전속성 폐지와 같은 산재보험 확대 적용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라이더유니온은 노조 출범 직후부터 라이더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요구하였고 우분투 재단의 지원을 받아 배달 라이더의 차량 수리비를 지원하는 공제회를 운영하였다. 대다수 라이더는 배달 일을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직접 구입하고 사고 비용 역시 라이더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높은 유상보험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오토바이 자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배달 라이더들의 열악한 상황에서 라이더유니온은 산재 상담과 공제회 운영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에 대한 소속감과 효능감을 높이고 나아가 안전 배달료와 같은 정책 대안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인터뷰 #19, #22).

특히 배달 플랫폼 노동자 운동은 노동과정에 대한 라이더의 자율성과 통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알고리즘 설명권을 요구하였다. 예컨대, 라이더유니온은 배달 라이더가 참여하는 배차 알고리즘 검증 실험 캠페인을 조직하였다. 노조는 연구자 집단과의 협업을 통해 실시간 배달료 알고리즘이 피크 시간에 라이더의 노동 공급을 늘리고 신호 위반을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박정훈, 2023: 157~187). 이를 통해 배달 플랫폼의 배차 알고리즘은 사실상 라이더에 대한 취업 규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알고리즘이 노조와 플랫폼 업체 간 단체교섭 혹은 사회적 대화의 의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인터뷰 #18). 이러한 전략은 플랫폼 기업의 간접적 노동 통제가 관철되는 전제적 작업장 체제(유형1)에서 노동과정에서 노동자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하여(유형 2) 궁극적으로 플랫폼 산업에서 공식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배달 라이더의 산업 시민권을 확립하려는 시도(유형 4)로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런데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산업 시민권을 확대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당사자로서 이들의 민주적 참여를 증대하려는 시도는 현재까지 제한적 성공을 거두었다. 예컨대, 서비스연맹 산하 배달 플랫폼 노조는 2019년 '플랫폼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배달의민족 플랫폼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과 준-노사관계적 교섭 구조를 형성하였다(김정훈, 2025). 이는 사회적 대화와 단체 교섭을 병행하면서 라이더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추진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민간 자율 협약 차원에서 진행된 사회적 대화는 라이더의 노동 조건의 변화 등 현장의 현안에 대해 노사 간 협의를 촉진하지 못하였고 협약의 구속력 역시 취약하였다. 또한 2022년 교섭대표노조인 배달 플랫폼 노조와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 간의 임금 협약 체결 이후 실거리제 도입을 통해 사실상 임금을 삭감했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조 리더십에 따라 단체 교섭의 실질적 성과는 미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라이더의 노동시장 입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라이더 간 경쟁을 통해 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대형 플랫폼 업체가 자동차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상응하는 온정주의적 작업장 체제로 이행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는 매우 낮다. 이는 작업장 민주주의를 향한 노동운동의 전략과 경로는 산업과 업종, 고용관계와 노동과정의 성격에 따라 상이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불안정 노동의 확산, 노동력 이중화의 심화, 노동운동의 파편화는 21세기 자본주의 노동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며, 이러한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에 있다. 오늘날 노동의 불안정화는 역사적으로 20세기 중반 노동자-시민의 권리로 확립되었던 산업 시민권의 쇠퇴를 낳았다. 이 논문은 21세기 자본주의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장 민주주의를 이론적, 실천적으로 어떻게 재구축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한국과 글로벌 사회의 불안정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정치적 성원권과 산업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고 노동과정에서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 시장 전제적 작업장 체제로의 회귀 속에서 노동의 불안정화와 이중화를 극복하고 작업장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받는 불안정 노동자에게 산업 시민권을 부여하고 생산과정과 노동과정에서 이들의 자율성과 통제권을 인정하며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요청된다.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인 완성차 대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과 배달 플랫폼 노동자 운동 간의 비교를 통해 이 연구는 작업장 민주주의를 향한 노동운동의 궤적이 산업 시민권과 자율성의 확대의 차원에서 상이한 경로(완성차 공장에서 산업 시민권 확대를 통한 온정주의-헤게모니 작업장 체제로의 이행과 플랫폼 산업에서 노동과정의 자율성 강화)로 분기하였음을 규명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 작업장 민주주의의 재구성은 노동운동이 쇠퇴하는 '탈동원화된 계급 사회'(Westheuser & Della Porta, 2022)에서 불평등과 이중화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저항운동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후 사민

주의 시대 산업 시민권의 쟁취와 작업장 민주주의의 구축은 노동자 저항의 성과이자 노자 간 계급 타협의 역사적 산물이었다. 이는 계급 투쟁의 제도화 테제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 갈등의 빈도와 강도를 낮추어 노동자 투쟁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1960년대 말 미국과 유럽에서의 비공인 노동자 파업의 물결에서 알 수 있듯이, 급진적 대중 운동은 포드주의 계급 타협에 반기를 들면서 현장 노동자와 평조합원의 작업장 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 요구를 작업장 안팎에서 전면에 내세웠고, 이는 1970년대 이후 노동의 인간화 프로젝트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작업장 민주주의의 약속은 폐기되었고 지구적 차원에서 시장 전제적 작업장 체제로의 회귀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21세기 자본주의에서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의 성장은 선진 산업국과 신흥 산업국 모두에서 노동자 저항 운동이 재등장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작업장에서 새로운 계급 타협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이 연구는 오늘날 작업장 민주주의의 재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불안정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업 시민권의 확장과 노동자의 자율성과 통제권 강화를 통한 작업장 주권의 확립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안정 노동자의 자기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운동의 전망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통한 노조 재활성화 전략(Voss & Sherman, 2000)과 급진적 노조 활동가의 현장 리더십 강화를 통한 노동자 조직화 전략(McAlevey, 2016)은 노조 민주주의의 실질적 강화를 통한 작업장 민주주의의 재구축 전략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작업장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이론화하는 작업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 불안정 노동자 운동 내부의 동학과 조직화 경험,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역할에 대한 더 많은 경험 연구가 필요하다.

2025년 6월 30일 접수
2025년 8월 21일 수정 완료
2025년 7월 30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김정훈. 2025. “플랫폼 산업에서의 권력자원 구축 전략: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 연맹 배달 플랫폼 지부 비교 연구.”「플랫폼 자본과 노동: 자본의 새로운 전략과 노동의 응전」. 책과나무. pp. 256-284.

김철식. 2025.「경계에 선 노동: 디지털 자본주의와 새로운 노동권의 모색」. 파이돈.

달(Robert A. Dahl). 2011.「경제적 민주주의에 관하여」. 배관표 역. 후마니타스.

박명준. 2022. “들끓는 일터, 방황하는 민주주의: 한국의 일터민주주의에 관한 시론적 문제제기.” 박태주·박명준 편.「우리는 민주주의로 출근한다」. 재단법인 공공상생기금.

박수민. 2023. “앱과 거리를 연결하는 배달노동자: 디지털 경제 시대의 혼종적 작업장.”「경제와사회」 139: 232-269.

박정훈. 2023.「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 배달 사고로 읽는 한국형 플랫폼 노동」. 한겨레출판.

스탠딩(Guy Standing). 2014.「프레카리아트」. 박종철출판사.

이주희. 2011. “고진로(High Road) 사회권 패러다임: 표준고용관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탐색적 시론.”「동향과 전망」 82: 244-279.

일리(Geoff Eley). 2008.「더 레프트 The Left 1848~2000: 미완의 기획, 유럽 좌파의 역사」. 유강은 역. 뿌리와이파리.

현장투. 2005.「제3기 사업보고서」. 미간행 자료집.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자료)

Agarwala, R. 2013. *Informal Labor, Formal Politics, and Dignified Discontent in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garwala, R. 2018. “From Theory to Praxis and Back to Theory: Informal Workers’ Struggles against Capitalism and Patriarchy in India.” pp. 29-57 in R. Agarwala and J. J. Chun (eds.) *Gendering Struggles against Informal and Precarious Work (Political Power and*

Social Theory Volume 35). Emerald Publishing Limited.

Andreas, J. 2019. *Disenfranchised: The Rise and Fall of Industrial Citizen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tzeni, M. 2016. "Beyond Trade Unions' Strategy? The Social Construction of Precarious Workers Organizing in the City of Buenos Aires. *Labor History*, 57(2): 193-214.

Betti, E. 2016. "Gender and Precarious Labor in a Historical Perspective: Italian Women and Precarious Work between Fordism and Post-Fordism.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89: 64-83.

Brown, C. 2000. "The Role of Employers in Split Labor Markets: An Event-Structure Analysis of Racial Conflict and AFL Organizing, 1917-1919." *Social Forces* 79(2): 653-681.

Burawoy, M. 1985. *The Politics of Production.* London: Verso.

Chun, J. J. 2009. *Organizing at the Margins: The Symbolic Politics of Labor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Dukes, R. and Streeck W. 2023. *Democracy at Work: Contract, Status and Post-Industrial Justice.* Cambridge: Polity.

Eidlin, B., & Uetricht, M. 2018. "The Problem of Workplace Democracy." *New Labor Forum* 27(1): 70-79.

Emmenegger, P., S. Häusermann, B. Palier, & M. Seeleib-Kaiser. 2012.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erreras, I. 2023. "Democratizing the Corporation: The Bicameral Firm as Real Utopia." *Politics & Society* 51(2): 188-224.

Ferreras, I., Battilana, J. and Méda, D. 2022. *Democratize Work: The Case for Reorganizing the Econom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yman, R. 2016. "The Very Idea of Democracy at Work." *Transfer: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22(1): 11-24.

Jonna, R. J., & Foster, J. B. 2016. "Marx's Theory of Working-Class Precariousness." *Monthly Review*, 67(11): 1-19.

Kalleberg, A. L. 2011. *Good Jobs, Bad Jobs: The Rise of Polarized and Precarious Employment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1970s-2000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Kang, M. 2023. "The Formalization of Informal Workers at Hyundai Motor Company." *Politics & Society* 51(1): 108-134.

Kimeldorf, H. 1988. *Reds or Rackets?: The Making of Radical and Conservative Unions on the Waterfro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andemore, H., & Ferreras, I. 2016. "In Defense of Workplace Democracy: Towards a Justification of the Firm-State Analogy." *Political Theory* 44(1): 53-81.

Lee, B. H., & Frenkel, S. J. 2004. "Divided Workers: Social Relations between Contract and Regular Workers in a Korean Auto Company."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8(3): 507-530.

Llanos-Reyes, C., & Horstmann, A. 2025. "From the Policy of Humanization to Labour Flexibilization: The Case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rom the 1970s to the 1980s)." *Labor History*: 1-17. (online first)

Malleson, T. 2013. "Making the Case for Workplace Democracy: Exit and Voice as Mechanisms of Freedom in Social Life." *Polity* 45(4): 604-629.

Malleson, T. 2014. *After Occupy: Economic Democracy for the 21st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arshall, T. H. 1992.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pp. 1-57 in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cAlevey, J. 2016. *No Shortcuts: Organizing for Power in the New Gilded 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ilkman, R. 2006. *LA Story: Immigrant Workers and the Future of the US Labor Movemen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Montgomery, D. 1979. *Workers’ Control in America: Studies in the History of Work, Technology, and Labor Struggl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soetsa, S., Stillerman, J., & Tilly, C. 2016. “Precarious Labor, South and North: An Introduction.”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89: 5-19.

Müller, S. 2025. “Social Democracy at High Tide: The Humanization of Work in Postwar West Germany.” *Labor* 22(1): 85-99.

Murray, J. and Schwartz, M. 2015. “Moral Economy, Structural Leverage, and Organizational Efficacy: Class Formation and the Great Flint Sit-down Strike, 1936-1937. *Critical Historical Studies* 2(2): 219-259.

Palier, B., & Thelen, K. 2010. “Institutionalizing Dualism: Complementarities and Change in France and Germany.” *Politics & Society* 38(1): 119-148.

Ravenelle, A. 2019. *Hustle and Gig: Struggling and Surviving in the Sharing Econom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chumann, M. 1998. “New Concepts of Production and Productivity.”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19(1): 17-32.

Silver, B. J. 2003. *Forces of Labor: Globalization and Workers’ Movements since 18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ehr, P. 2023. "The Boundary Problem in Workplace Democracy: Who Constitutes the Corporate Demos?" *Political Theory* 51(3): 507-529.

Streeck, W. 1995. "Works Councils in Western Europe: From Consultation to Participation." pp. 313-350 in J. Rogers and W. Streeck (eds.) *Works Councils: Consultation, Representation, and Cooperation in Industrial Relation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Voss, K., & Sherman, R. 2000. "Breaking the Iron Law of Oligarchy: Union Revitalization in the American Labor Mov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2): 303-349.

Weil, D. 2014. *The Fissured Workplace: Why Work Became So Bad for So Many and What Can Be Done to Improve It.* Harvard: Harvard University Press.

Westheuser, L., & Della Porta, D. 2022. "Class without Consciousness. The Politics of Demobilized Class Societies. *Berliner Journal für Soziologie,* 32(2): 165-172.

Zeitlin, M., & Stepan-Norris, J. 1992. "The Insurgent Origins of Union Democracy." pp. 250-273 in G. Marks, and L. Diamond (eds.) *Reexamining Democracy: Essays in Honor of Seymour Martin Lipset*. Sage Publication.

Zhang, L. 2011. "The Paradox of Labor Force Dualism and State-labor-capital Relations in the Chinese Automobile Industry." pp. 107-137 in Kuruvilla, S., Lee, C. K. and Gallagher, M. (eds.) *From Iron Rice Bowl to Informalization: Markets, Workers, and the State in a Changing Chin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부록〉 인터뷰 정보

번호	종사상 지위	인터뷰 날짜	산업/기업	노동운동 역할
1	노동운동 활동가	2017. 9. 20.	자동차/현대차	지역 노동단체 대표
2	정규직(해고자)	2017. 10. 30.	자동차/현대차	공장위원회 대표
3	비정규직(해고자)	2017. 10. 31.	자동차/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사무국장
4	정규직(해고자)	2017. 11. 1.	자동차/현대차	정규직 전환 노동자
5	노동 변호사	2017. 11. 6.	자동차/현대차	지역본부 법률센터
6	현장 관리자	2017. 11. 30.	자동차/현대차	사내하청업체 관리자
7	노동운동 활동가	2017. 12. 1.	자동차/현대차	현장 조직 활동가
8	정규직 노동자	2017. 12. 1.	자동차/현대차	전 노조 대의원
9	정규직(은퇴)	2018. 1. 12.	자동차/현대차	전 노조 부위원장
10	노동운동 활동가	2017. 9. 8.	자동차/현대차	울산지역 진보정당 당직자
11	노동운동 활동가	2017. 10. 16.	자동차/현대차	지역 노동단체 사무국장
12	정규직 노동자	2018. 1. 11.	자동차/기아차	전 노조 대의원
13	비정규직(해고자)	2017. 12. 17.	자동차/한국GM	전 비정규직 노조 위원장
14	정규직 노동자	2017. 12. 22.	자동차/한국GM	현장 조직 참여
15	비정규직 노동자	2017. 12. 23.	자동차/한국GM	전 비정규직 노조 위원장
16	정규직 노동자	2018. 1. 10.	자동차/한국GM	전 노조 대의원
17	정규직 노동자	2018. 1. 17.	자동차/한국GM	현 노조 대의원
18	플랫폼 노동자	2024. 9. 6.	음식 배달 플랫폼	노조 위원장
19	플랫폼 노동자	2021. 12. 27.	음식 배달 플랫폼	노조 조합원
20	플랫폼 노동자	2021. 12. 28.	음식 배달 플랫폼	노조 조합원
21	플랫폼 노동자	2022. 12. 22.	음식 배달 플랫폼	노조 지부 사무국장
22	플랫폼 노동자	2023. 2. 6.	음식 배달 플랫폼	노조 지부장
23	플랫폼 노동자	2023. 2. 6.	음식 배달 플랫폼	노조 부위원장
24	노동운동 활동가	2023. 4. 6.	음식 배달 플랫폼	노조 정책국장

참고: 인터뷰 참여자의 지위는 인터뷰 당시를 기준으로 함

Reconstructing Democracy at Work in an Era of Dualization

Minhyoung Kang
Department of Soci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roliferation of precarious labor in the twenty-first-century capitalism has heightened scholarly attention on precarious workers' movements resisting labor insecurity and dualization. While considerable research has explored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new labor politics led by non-regular workers, there remains a relative lack of analysis on how these movements contribute to strengthening workplace democracy. This study seeks to address this gap by examining bot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ossibilities for workplace democracy in an era marked by labor precarization and dualization. To this end, it provides a historical analysis of the rise and decline of workplace democracy and argues that strengthening workplace democracy requires expanding the concept of industrial citizenship to include precarious workers as part of the corporate demos, as well as securing workers' autonomy in the workplac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non-regular workers' organizing in auto assembly factories and platform workers' movements in the food delivery sector, this study also traces the trajectory of labor movements toward greater workplace democracy.

Key Words: Precarious work, industrial citizenship, autonomy, economic democracy, labor movements

한국사회 제26집 2호(2025년): pp.147-183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정책의 의의와 한계: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박 정 민* · 송 현 구** · 라 수 현***

요 약

본 연구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개인의 심리적 병리로 환원하지 않고, 과도한 경쟁, 제도적 단절, 사회적 시민권 박탈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사회문제로 파악한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사회적 배제 담론을 이론적 틀로 설정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그리고 4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을 분석하였다.

히키코모리로 불렸던 이 현상은 현재 한국 청년 약 2.4%, 24만 명 이상이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 수단의 상실에 따른 도피주의적 반응이자,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년을 단순한 복귀 대상이 아닌 시민적 권리 회복의 주체로 바라볼 필요성을 강조한다.

2023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정안을 기점으로 정부는 고립·은둔 청년을 정책 대상에 포함시켰고, 2024년부터 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청년 발굴, 상담, 사회기술훈련, 진로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 지역은 비대면 발굴, 산업연계, 또래지원단, 시민교육 등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정책은 여전히 청년을 제도 내로 '복귀'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구조적 불평등 해소나 당사자 참여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립·은둔 청년 정책이 단기적 자립이 아닌, 시민권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고립·은둔 청년, 아노미 이론, 사회적 배제, 청년 정책, 청년미래센터, 시민, 참여

* 제1저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pjmin@knou.ac.kr
** 공동저자,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박사과정, thdgusrn1993@gmail.com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조교수, shla@dankook.ac.kr

Ⅰ. 서론

인간은 누구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자 한다(Erikson, E. H. & J. M. Erikson, 2020). 인간은 전 생애 발달 가운데 가족이나 또래 집단, 국가와 같은 사회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데, 그중 특히 청년기는 또래 집단을 통해 특정한 세대에 대한 의식이나 정서를 공유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형성해 가는(Levinson, Darrow, Klein, Levinson, & Mckee, 1996) 중요한 시기이다. 보통 청년기는 '방황과 갈등의 시기'라고 일컫기도 하고, 어른도 아이도 아닌 시기이기에 자기를 탐색하여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자기와 세상 사이의 힘겨운 싸움이 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은둔으로 들어가 사회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가 최근 한국 청년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일본말로 '히키코모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하며 장기간 방이나 집에서 나오지 않고 지내는 사람'을 뜻하는데, 6개월 이상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고 집에만 머무르며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을 지칭하면서 소개되었다(Saito, 1998). 초기에는 주로 일본의 특이한 문화적 현상으로 간주되었으나 사회적 변화와 함께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대두되면서 오늘날에는 국제적인 정신건강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Kato, Kanba, & Teo, 2019). 은둔형 외톨이의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 혹은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면서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는 행동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행동이 당사자에게 고통감을 초래하였거나 기능 손상을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Wenger GC & V. Burholt, 2004). 최근에는 은둔 행동을 단순히 개인적 특성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와 지지가 단절된 상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고립·은둔 청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김성아 외, 2023).

한국사회에서 고립·은둔 청년은 19~34세 청년의 2.4% 정도인 약 24만

4천 명 규모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세정 외, 2022).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데, 현시대 많은 청년은 타인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자신의 공간으로 숨어버리고 있다. 그들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청년기를 고립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 이처럼 고립·은둔 청년은 청년기에 시작되는 경향이 있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청년이 교육 및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거시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진다(김성아 외, 2023). 따라서 많은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초기 연구는 심리적·정신의학적 분야에서 많이 진행되었다. 고립·은둔 청년은 전 생애에 이어질 수 있으며 한 번 시작된 은둔 생활은 쉽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노가빈 외, 2021),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질환에 취약하다는 점 때문이다(Kato et al., 2012; Li & Wong, 2015). 고립·은둔 청년은 주로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생활하기 때문에 운동이 부족하고 비만을 포함한 만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크며, 고립된 생활은 사회적 자원의 부족으로 이어져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든다(Li & Wong, 2015). 실제로 고립·은둔 청년 집단에서 가장 흔한 정신질환은 우울장애이며, 불안장애 중에서는 사회공포증, 광장공포증이 가장 높았다. 성격장애를 진단 평가한 결과에서는 회피성 성격장애, 조현성 성격장애가 가장 흔하였으며 고립·은둔 청년 중에서 50%가 자폐 고위험군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정신의학적 평가 결과는 고립·은둔 청년 현상은 새로운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내면적으로 우울 증상, 사회공포증상,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인지, 성격상 대인관계 어려움 및 자폐 성향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질적 증후군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정진영 외, 2023).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정신의학적 설명만으로는 고립·은둔 청년 현상의 복합성과 확산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고립과 은둔은 단지 개인의 내면 문제나 가족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쟁 중심 사회 속에서

청년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자기책임, 자기관리, 성공 압박 등 구조적 요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적 가치 아래 청년에게 '스스로를 브랜딩하고 성과를 내는 자율적 주체'가 되기를 요구하면서, 실패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청년에게는 사회적 낙인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실패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며, 사회적 관계에서 철수하게 되는 것이다(박소진, 2009). Standing(2011)이 지적하듯, 이러한 구조는 불안정한 삶의 조건을 일반화하며, 청년을 사회의 '프레카리아트'[1]로 재편성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2023년부터는 기본계획 수정안에 고립·은둔 청년이라는 용어를 명시하기 시작하면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작년 8월부터는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전담 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시범적으로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실시하는 시범 사업들이 2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곧 시범 사업 1주기를 맞이하는 올해 여름이 시범 사업에 대한 분석 및 중간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립·은둔 청년 현상을 단순한 개인적 병리나 심리적 요인으로 환원하지 않고, 사회구조와 개인 심리 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살펴보고,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미래청년센터 사업들을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확인하고,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1) 이탈리아어 '프레카리오(precario, 불안정한)'와 독일어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무산 노동계급)'를 합성한 신조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일상적인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저숙련·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등을 총칭한다(오마이뉴스, 2017.11.15., 〈"새로운 노동계급 '프레카리아트', 그들을 구해야 한다"〉).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고립·은둔 청년' 개념의 다차원적 이해 : 개념적 분화와 사회학적 재구성

1) '히키코모리'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개념의 확장과 보편화

고립·은둔 청년 현상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 개념에서 출발한다. 히키코모리는 초기에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하며 장기간 방이나 집에서 나오지 않고 지내는 사람'으로 정의되었으며, 6개월 이상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은둔하는 상태를 지칭했다(Saito, 1998). 당시에는 일본의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비롯된 특이 현상으로 간주되었으나,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장되었고, 오늘날에는 국제적인 정신건강 문제이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Kato, Kanba, & Teo, 2019).

한국 사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2000년대부터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소개된 이 현상은 점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김성아, 2021). 특히 청년층에서 증가가 두드러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인구의 약 2.4%에 해당하는 24만 4천 명이 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그 규모를 더욱 크게 보아, 2021년 기준 전체 청년 인구의 5%에 달하는 약 54만 명이 고립·은둔 상태에 있다고 추산하기도 한다(정세정 외, 2022; 김성아 외, 2023). 불과 2년 전 조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도 보고되는 등(정세정 외, 2025) 이 문제가 더 이상 일부 개인의 일탈이나 병리 현상이 아닌,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구조적 위기임을 시사한다(김재희·이지연, 2024). 이처럼 문제의 규모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현상으로 확대되면서, 초기 심리학적 접근만으로는 현상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분석의 초점을 개인의 내면에서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구조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행동적 '은둔'과 관계적 '고립'의 구분

고립·은둔 청년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개념적 분화가 필수적이다. 많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개인적 은둔'과 '사회적 고립'을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은둔(reclusion)'은 주로 행동 중심적 관점에서 정의되는 개념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방과 같은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 물리적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유민상 외, 2021). 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개념에서 파생된 '은둔형 외톨이'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은 관계 중심적이고 다차원적인 사회학적 개념이다. 이는 물리적 상태와는 무관하게, 개인을 지지해 줄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나 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하여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유민상 외, 2021). 즉, 매일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정서적 유대나 실질적 지지를 받을 관계가 없다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은둔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태에 대한 대처 방식이거나 그 심화된 결과로 나타나는 가시적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Achterbergh et al., 2020).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결정적이다. '은둔'에만 초점을 맞추면 "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가?"라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질문에 머무르기 쉽다. 그러나'사회적 고립'으로 분석의 틀을 확장하면, "왜 이 청년은 기댈 곳 하나 없는 관계의 사막에 내몰렸는가?"라는 사회 구조적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병리를 넘어 사회 시스템의 실패를 조명하는 사회학적 탐구의 출발점이 된다.

한편, 이들 개념은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와도 구별된다. 니트는 교육, 고용, 훈련 등 주요 사회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지위' 중심의 경제학적 개념이다(유민상 외, 2021). 니트 상태가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두 개념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니트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네트워크나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1〉은 이들 핵심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표 1〉 고립·은둔 관련 핵심 개념 비교

개 념	정 의	관 점	특 징
은둔형 외톨이 (Hikikomori/ Reclusion)	6개월 이상 집 등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며 사회적 교류를 회피하는 상태 (Saito, 1998)	행동 중심적, 심리학적	물리적 고립, 사회 활동 회피. 개인의 심리적 고통과 기능 손상에 초점
사회적 고립 (Social Isolation)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망 및 지지체계가 부재하여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다차원적 상태 (유민상 외, 2021)	관계 중심적, 사회학적	물리적 비구금 상태에서도 발생 가능. 사회적 연결의 양과 질, 지지체계의 부재를 강조
니트 (NEET)	교육, 훈련, 고용 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 (유민상 외, 2021)	지위 중심적, 경제학적	주요 사회 제도 참여 여부로 개인을 정의. 고립의 원인이자 결과일 수 있음

2. 선행연구의 주요 관점과 그 한계

1) 정신의학적 접근 : 개인의 병리(病理)에 대한 탐구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초기 연구와 현재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점은 정신의학적 접근이다. 이 관점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내면, 즉 심리적 특성과 정신적 취약성에서 찾는다. 대표적으로 '취약한 자기애(vulnerable narcissism)'가 핵심 기제로 설명된다(Iwakabe, 2020). 웅대한 자기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타인의 비판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존감의 상처를 피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사회적 철수, 즉 은둔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치심(shame)'이라는 감정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치심은 사회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타인에게 드러났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감정으로, 자신을 가치 없고 열등한 존재로 느끼게 만든다(Lewis, 1971). 한국 사회처럼 사회적 기준이 높고 획일적인 환경에서 청년들은 학업, 취업, 외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극심한 수치심에 압도되기 쉽다(Gausel et al., 2012; Lewis, 1971). 은둔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Sarchione et al., 2015).

또한, 정신의학적 연구들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높은 비율로 특정 정신질환을 동반한다고 보고한다. 우울장애, 사회불안장애, 광장공포증 등이 흔하게 나타나며, 성격장애 중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해 관계를 회피하는 회피성 성격장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정진영 외, 2023; 장원빈·문의정, 2024).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은둔 청년의 약 50%가 자폐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접근은 은둔 현상을 다양한 정신병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질적 증후군'으로 규정한다. 이처럼 개인의 병리에 초점을 맞추는 '의료적 패러다임'은 임상적 치료에는 유용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귀속시켜 사회구조적 맥락을 간과하는 한계를 지닌다(김성아, 2021).

2) 사회학적 전환: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주목

정신의학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최근 연구들은 분석의 초점을 개인에서 사회로 전환하는 '사회학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 관점은 청년의 고립·은둔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병리현상(social pathology)'(김재희·이지연, 2024)이자, '가족과 사회 시스템의 병리'(노가빈 외, 2021)로 규정한다. 즉, 청년의 고립은 사회가 그들을 포용하고 지지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학적 접근의 핵심 논리 중 하나는 생애주기적 관점(life-course

perspective)을 통한 '누적적 불이익(accumulated disadvantage)'의 개념이다. 청년의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아동·청소년기부터 축적된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청년기의 특정'촉발 요인(trigger)'과 만나 폭발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유민상, 2023; 노가빈 외, 2021). 연구에 따르면, 청년기 고립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상당수가 아동기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기의 가정 내 학대나 정서적 방임, 부모의 이혼, 잦은 전학,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괴롭힘 경험 등은 안정적인 애착과 사회적 기술 형성을 방해하여 이후의 사회적 관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취약성을 안고 성장한 청년들은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압력에 직면하며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다. 극심한 입시 경쟁에서의 좌절, 그리고 특히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취업 실패는 청년들에게 깊은 무력감과 사회에 대한 불신을 안겨준다(유민상, 2021). 비정규직, 임시직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불안정은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요한 시간적, 금전적 자원을 박탈하며 고립을 심화시킨다. 또한, 안정된 직장과 정착을 중시하는 부모 세대와의 가치관 충돌은 최후의 보루여야 할 가족 내 지지체계마저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사회학적 관점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발생하는 경로를 재구성한다. 즉, 거시적 수준의 구조적 압력(과도한 경쟁, 불안정 노동)이 미시적 수준의 관계 실패(가족 갈등, 또래 관계 단절)를 야기하고, 이것이 개인에게 '사회적 고립'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초래하며, '은둔'은 이 고통에 대처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가 되는 인과적 연쇄 과정을 밝혀낸다. 이 모델에서 개인의 병리는 원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실패의 최종적인 결과물이다.

3. 이론적 틀: 아노미 이론과 사회적 배제

1) 머튼(Merton)의 아노미 :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

고립·은둔 청년 현상을 설명하는 유용한 사회학적 이론으로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의 아노미(Anomie)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머튼은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문화적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때 사회 구성원들이 긴장 상태를 겪으며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한국 사회는 '성공적인 삶'이라는 문화적 목표를 매우 강력하게 제시한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업하며,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표준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경쟁 심화와 경제 침체 속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높은 수준의 교육, 안정적 일자리)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목표와 수단 사이의 극심한 괴리는 청년들에게 극도의 긴장과 좌절을 안겨준다. 머튼이 아노미 이론에서 제시한 동조(conformity), 혁신(innovation), 의례주의(ritualism), 도피주의(retreatism), 반역(rebellion) 등 다섯 가지 적응 양식 중, 고립·은둔 청년의 상태는 '도피주의'에 가장 가깝게 해석될 수 있다. 도피주의는 사회가 제시하는 문화적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사회로부터 물러나는 적응 방식이다. 즉, 이길 수 없는 경쟁의 장에서 스스로 퇴장함으로써 아노미적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 저항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사회적 배제 : 관계망의 단절과 사회적 시민권의 약화

아노미 이론이 경제적 성공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 괴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이론은 분석의 범위를 더욱 확장한다.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빈곤이나 실업 상태를 넘어, 개인이 사회의 주류 경제, 정치, 문화생활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는 다차원적인 과정을 의미한다(강신욱 외, 2005). 이는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즉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이 박탈되는 상태를 말한다.

고립·은둔 청년들은 단지 직업이 없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친구, 동료, 지역사회와의 관계망이 단절되어 있고, 위기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하며, 사회적 신뢰와 호혜성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이 고갈된 상태에 있다. 여러 연구에서 청년의 사회적 배제는 경제,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Burchardt et al., 1999; 선승아, 2021). 이들은 사회로부터 배제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 문제를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은, 이를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나 일탈이 아닌, 사회 통합의 위기이자 시민권의 문제로 격상시켜 국가와 공동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임을 분명히 하는 효과를 가진다.

3) 분석틀

고립·은둔 청년 정책을 두 가지 이론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적용하여 정책이 청년에게 제도적 수단(institutional means)을 복원하거나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분석한다. 즉, 단순히 복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제공해야 할 공정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사회적 배제 담론의 관점에서 정책이 청년의 사회적 시민권 회복과 참여 보장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는 경제적·관계적·정치적 권리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통합의 문제로, 청년이 정책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주체로 재위치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미래센터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한다.

4. 문제제기 : 정책 분석의 필요성과 연구 방향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드러난 고립·은둔 청년 문제의 복합성과 구조적 성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한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023년 정부가 '청년 복지 5대 과제'의 하나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책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박승민, 2025). 이러한 노력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기존 정책들은 대부분 이미 심각한 고립·은둔 상태에 진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예방적 접근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지원체계가 파편적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도 나타난다. 특히 단기적 지원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부재하여 청년들이 다시 고립 상태로 돌아가는 '재고립'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유민상 외, 2021). 실제로 고립·은둔 경험 청년의 45.6%가 사회복귀 시도 후 재고립을 경험했다는 통계는 현재의 정책 접근 방식이 가진 한계를 보여준다(김성아 외, 2023). 따라서 개별 정책의 나열을 넘어,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전반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의 구성으로 진행된다. 3장에서는 한국 청년정책의 전반적인 수립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년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추적한다. 5장에서는 현재 정책 집행의 구체적 사례로서 4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청년미래센터' 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향후 고립·은둔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Ⅲ. 청년정책 수립 과정

한국의 청년정책은 과거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전환의 중심에는 「청년기본법」의 제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과정이 자리 잡고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 청년정책의 법적·제도적 틀이 마련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의 순서로 나누어 그 역사적 흐름과 주요 움직임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청년정책의 법적 토대 : 「청년기본법」 제정 과정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단편적인 시혜나 지원의 대상을 넘어, 청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 정책의 파트너로 세우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청년 관련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거의 유일했으며, 이는 청년 문제를 '일자리' 문제로만 한정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오재호, 2020; 전경숙, 2021). 그러나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는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사회적 관계, 문화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오재호, 2020).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입법 노력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3건의 '청년발전기본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과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회기 만료로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이송림, 2020). 하지만 이러한 실패는 오히려 청년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입법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15년 서울특별시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고,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본격적인 논의는 20대 국회에 들어서며 재개되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

수의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전경숙, 2021).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20년 1월 9일,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2월 4일 공포되어 8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제3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의 헌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제13조), 5년 단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제8조), 그리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9조)을 의무화함으로써, 청년정책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2. 청년정책의 청사진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기본법」 제8조는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 시행 원년인 2020년 12월 23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심의·확정했다(관계부처 합동, 2020; 김달원, 2020).

이 기본계획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는 과거의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청년을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다양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격차를 완화하며,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20). 계획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 걸쳐 20개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러한 기본계획은 고정된 문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수정·보완되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국정 기조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 3월 29일,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이 심의·의결되기도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3).

3. 정책의 실행과 구체화 : 연도별 시행계획

5개년 기본계획이 청년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면, 연도별 시행계획은 그 방향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담아내는 실행 계획도(action plan)이다. 「청년기본법」 제9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시작된 2021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1년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첫해로, 3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308개 과제, 약 23.8조 원 규모로 정책의 첫발을 내디뎠다(관계부처 합동, 2021).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지원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새로운 정책 도입에 중점을 두었다. 2022년 시행계획은 376개 과제, 약 24.6조 원 규모로 수립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확대·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관계부처 합동, 2022). 2023년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가 반영되기 시작한 시기로, 390개 과제, 약 25.4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민관협력을 통한 일 경험 제공과 청년도약계좌 신설 등 자산 형성 지원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관계부처 합동, 2023). 2024년 시행계획은 356개 과제, 약 27.0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과제 수는 일부 조정되었으나 예산 규모는 증가했다.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고, 청년 주거 및 자산 형성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4). 2025년

시행계획은 351개 과제, 약 26.5조 원 규모로 수립되었으며, 미래내일 일경험 확대, 청년주택드림 대출 신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 기존 정책의 심화와 더불어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5). 또한 매년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 해 계획에 환류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Ⅳ. 고립·은둔 청년정책 수립 및 변화과정

앞에서 청년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을 탐색하며 「청년기본법」의 제정과 이를 근거로 수립 및 시행된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나타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며 지원 정책의 변화 과정과 현황,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정책 기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분석하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가 설립되는 과정까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2020년 발표된 1차 청년 기본계획에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볼 때 고립·은둔 청년을 명시하는 내용은 없으며, ‘NEET 청년’ 또는 ‘청년 1인 가구’와 같이 고립·은둔 상태와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정책만이 존재했다. 적어도 1차 청년 기본계획이 발표된 당시에는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지금과 같은 인식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1차 청년 기본계획 내 지원 방안을 평가하면, 은둔과 고립 과정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방안은 마련되었으나,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은 부재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유민상 외, 2021).

고립·은둔 청년이 본격적인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차 청년 기본계획의 수정안이 발표되면서다. 수정된 기본계획에는 '고립·은둔 청년'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명시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접적인 지원 대상으로 언급되었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은 물론이고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배경으로 코로나19 펜데믹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으며, 특히 각종 방역 지침 등으로 인한 사회관계망 축소와 고립 현상이 대두되던 시기였다. 이를 반영하듯 출범 이후 2022년 10월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에서는 정책의 추진 배경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청년의 복합 위기를 제시했다. 특히 같은 해에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 고립·은둔 청년이 약 54만 명에 달한다는 결과가 발표되며,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일례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볼 때, 2020년부터 서서히 연구가 증가하였으며 2022년부터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곽미선, 박지영, 2024). 이렇듯 코로나 펜데믹 이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높아진 관심이,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제시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본에서는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 청년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와 발굴 및 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제시한다.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는 처음 제시되는 정책 방향이기에 지원 내용의 구체성이 다소 빈약한 편이다. 하지만 수정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첫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한편 이후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도출된 것을 보면, 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청년정책 시행계획 내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 수립되며, 이 계획에서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2020년 발표한 1차 청년 기본계획에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행계획에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없었다. 그러나 2023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정안에서 고립·은둔 청년이 지원 대상으로 언급되며, 같은 해 시행계획부터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도출되었다. 2023년 시행계획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2023년 중 완료하는 것으로 일정을 세웠다.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실태조사는 2023년 11월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로 제출되었다. 또한 기존에 진행하던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체계 구축」 과제에 고립·은둔 전담 인력을 10명 배치하였다.

2024년 시행계획에서부터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Ⅳ-2-2-2.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과제로 본격화되었다. 2024년도부터 고립·은둔 청년 지원이 별도의 과제로 본격화된 배경으로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2022년 실시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모형 개발 연구」와 2023년 실시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도출하기에 충분한 연구가 축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증대된 관심을 생각할 수 있다. 2023년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제시하며 고립·은둔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추진했다. 2024년 시행계획에서 신설된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지원 전담센터 4곳 설치, 전담 인력 총 32명 배치,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총 13억 900만 원이다. 기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가족센터에서

전담한 것과 달리,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담센터를 새롭게 신설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2024년 8월 14일 인천과 울산, 충북, 전북에 취약청년 지원을 전담으로 하는 청년미래센터가 개소하였다.

2025년 시행계획에서도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기조는 이어졌다. 특히 2024년 운영에서 성과 목표를 무려 216%의 실적으로 초과 달성하며, 사업을 점차 확장하는 기조로 이어졌다. 이에 사업예산이 2024년도 13억 900만 원에서 15억 6천만 원으로 증대되었으며, 4개 광역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계획으로 삼았다. 또한 2025년 중으로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며, 실제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3월 25일 제정되었다. 이상 2023년부터 각 계획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나타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 〈표2〉과 같다.

〈표 2〉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

연도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 (원)	사업결과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실시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실시	1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및 결과 발표
	보호종료아동자립 지원체계 구축	자립준비청년 대상 고립·은둔 청년 전담인력 배치	4.63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고립·은둔 전담인력 10명 배치
2024년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13.09	청년지원센터 4곳 신설
	보호종료아동자립 지원체계 구축	자립준비청년 대상 고립·은둔 청년 전담인력 배치	4.75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고립·은둔 전담인력 10명 배치
2025년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시범사업 전국확대 로드맵 마련, 전국확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고립·은둔 참여자 중 회복자 고용센터로 연계	15.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보호종료아동자립 지원체계 구축	자립준비청년 대상 고립·은둔 청년 전담인력 배치	4.75	

자료: 2023~2025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부터 신규로 운영하는 「Ⅳ-2-2-2.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과제의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이 과제는 청년층의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위해 각계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예산 규모는 2024년 13억 9백만 원이며 2025년에는 15억 6천만 원으로 예산이 확장되었다. 예산 내역은 고립·은둔 지원 전담 인력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이며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형태이다. 여기서 과제의 성과지표를 살펴볼 때, 이 과제는 성과지표로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인원을 제시하며 320명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320명을 목표치로 제시한 근거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54만 명에 달하는 고립·은둔 청년의 수와 10억이 넘는 예산 규모를 볼 때 신규사업임을 감안해도 매우 낮은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과지표의 기준을 고립·은둔 회복 프로그램 참여 신청으로 설정한 점도 우려할 수 있는데, 과제에서 제시하는 회복 프로그램이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제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하거나, 지속적인 관계 경험을 제공하기보다는, 일회적인 초기상담 또는 각종 활동에 그치고 있기에 실효성을 의심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의 실적이 당초 계획을 상회하였으나, 대부분 초기상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박승민, 2024).

Ⅴ.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의 사업 운영과 평가

앞서 설정한 분석틀에 따라, 본 장에서는 청년미래센터의 사업을 검토한다. 즉,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근거해 센터가 청년에게 ‘제도적 수단의 복원’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사회적 배제 담론의 관점에서 ‘시민권 회복과 참여 보장’을 촉진하는지 평가한다. 이 두 기준을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단순한 복귀 지원 기관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앞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2023년 보건복지부가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하며 고립·은둔 청년 및 가족돌봄 청년을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 공식화하였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기관으로 '청년미래센터'가 신설되었다. 청년미래센터는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구조이다. 4개 광역시·도에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개발한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될 예정이다. 2024년 12월 기준, 청년미래센터는 초기 상담 목표치(320명)를 초과한 575명의 청년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초기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운영을 평가할 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일회성 제공에 그치며 고립·은둔을 유발하는 사회적 결핍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4개 시도 청년미래센터의 공통사업

청년미래센터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발굴과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청년미래센터는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발굴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목적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고립·은둔 청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공공지원 체계와의 연결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안으로 재포섭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 생활권역 중심의 기초조사를 결합하고 있으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 복지관, 청년단체 등과의 연계망을 통해 사례 발굴을 활성화한다. 특히 위기군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역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운영하며, 조기경보체계를 함께 구축하고 있다(강시온 외, 2024).

청년미래센터는 또한 심층상담과 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개인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자립을 위해 필요한 다층적

자원을 연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차 초기상담 이후 심층상담을 진행하여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다학제 팀이 사례회의를 통해 복합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병행함으로써 참여자의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유지한다.

더 나아가 청년미래센터는 사회기술훈련(Social Skills Training)을 중심으로, 예술·원예·동물매개 프로그램 등 정서회복을 돕는 치유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진로설계 워크숍이나 자격증 연계 과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청년미래센터는 의료·복지·주거 연계 사업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생활기반을 안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정신건강 치료를 연계하고, 주거취약 청년에게는 자립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단기보호시설과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위기대응망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미래센터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발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한다. SNS, 지역 언론, 유튜브, 팟캐스트 등을 활용하여 대중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복 경험을 가진 고립·은둔 청년의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 공감형 홍보 방식을 통해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변화의 주체로 재위치시키려 한다.

2. 지역별 특화사업

청년미래센터의 지역별 특화사업은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이는 지역 내 산업구조나 생활환경, 청년문화의 차이를 고려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천 청년미래센터는 온라인 발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접근 방식을 특화하고 있다. 이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대면상담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초기 발견과 상담신청을 온라인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NS, 청년포털, 카카오 채널 등을 연계한 실시간 채팅상담을 함께 운영하며, 장기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적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인천 센터는 가족의 지지망을 회복하기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고립·은둔 청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족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주거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연계를 통한 주거안정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울산 청년미래센터는 지역 산업구조를 활용한 직업훈련 연계 프로그램을 특화하였다. 조선업, 자동차부품 산업 등 울산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직업체험·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1). 산업단지와 협약을 체결하고 직업훈련을 연계함으로써 제도적 수단의 현실적 결핍을 메우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울산 센터는 또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통해 발굴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을 직접 방문하여 선별검사·홍보·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개입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년정신건강센터와 협력하여 병원이나 단기보호시설로의 이송체계를 갖춘 위기대응망을 마련함으로써, 중증위기군을 대상으로 한 집중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충북 청년미래센터는 또래지원단을 운영해 회복경험이 있는 청년을 멘토로 선발하고, 고립·은둔 청년과의 1:1 동행상담이나 경험공유 활동을 통해 정서적 지지망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상호성과 회복적 관계형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계망 모델과 맥을 같이하며, 고립·은둔 청년이 스스로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충북 센터는 아울러 농촌권에서의 발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의 이동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자원을 결합한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주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주택을 우선 연계하고, 생활기술 교육과 병행하여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역량을 높이려는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참여형 시민교육을 결합해, 고립·은둔 청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속감을 회복하고 권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조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사회적 배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집단적·공동체적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ilver, 1994). 특히 전북 센터는 민주시민교육과 사회문제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청년이 수동적 복지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적극적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 자립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창업교육, 현장실습 등을 제공하며, 고립·은둔 청년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도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 청년미래센터는 공통사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지역 고유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청년 문제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지속성과,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표 3〉 지역별 청년미래센터 특화사업 요약

지역	특화 프로그램	사업 목적	추진 방식
인천	가족돌봄 청년 지원사업	가족의 지지망 강화 및 돌봄 부담 경감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 집단 프로그램 등을 통한 관계 개선
	지역사회 자립망 구축 프로젝트, 울타리 플레이 로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자립 및 관계망 형성 지원	지역사회 기관 및 기업과 협업하여 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 및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제공
울산	지역산업 연계 직업훈련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실질적 직업 복귀 및 고용 촉진	조선·자동차 등 지역산업 현장 실습, 기업 협약 통한 취업연계
충북	자조모임, 청년 이음터	신뢰성 높은 정서적 지지 및 사회적 관계 형성	온·오프라인 청년 자조모임 운영 및 지원, 회복 경험 멘토 선발 및 1:1 동행 상담
	충북미래하우스	공동생활을 통한 일상생활 회복 및 주거 기반 자립 지원	공동생활 공간 제공, 일상생활 회복 지원 (수면·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등)
	충북게임팩토리 / 충북미래카페 (가상회사 특화)	가상회사 운영을 통한 사회 적응 및 일 경험 제공	모바일 게임 제작 가상회사 운영 (충북게임팩토리), 카페 운영 관리 가상회사 운영 (충북미래카페)
전북	청년 커뮤니티 활동 및 네트워크 지원 (사회관계 개선)	사회적 소속감 회복 및 대인관계 역량 강화	자조모임, 동아리 활동, 활동비 지원 등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제공
	가족 소통 교육 및 심리상담	고립·은둔 청년 가족의 소통 역량 강화 및 심리적 부담 경감	가족 구성원 대상 소통 교육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자료: 각 지역 청년미래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취합

3.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사회적 배제 담론을 통한 비판적 분석

1) 공통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청년미래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자립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사회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부재하거나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한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복지체계 안으로 재포섭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접근이 머튼(Merton, 1938)이 말한 아노미 상황, 즉 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적 목표(자립, 경제적 성공)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합법적·공정한 제도적 수단 간의 불일치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결국 개인에게 순응적 재적응만을 요구하는 한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년미래센터의 프로그램은 사회기술훈련, 직업훈련, 사회참여 촉진 등 개인 역량 강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년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이나 제도적 불평등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담론의 시각에서도 청년미래센터의 개입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서의 참여 기회 박탈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치적·문화적 권리,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실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다(Silver, 1994). 현재 청년미래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로 개인 차원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립·은둔 청년들이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정책 설계에 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적 참여 장치는 아직 미흡하다.

2)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청년미래센터가 지역별로 시행 중인 특화사업은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머튼이 지적한 '제도적 수단의 복원'과 사회적 배제 이론이 강조하는 '시민권적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 인천: 가족돌봄 지원과 자립망 구축의 한계

인천의 가족돌봄 청년 지원사업은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 내부의 책임 전가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고립·은둔 청년의 상당수는 가족 내 갈등이나 방임, 돌봄의 과잉 요구 등으로 인해 은둔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 지원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과 가족 내부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 자립망 구축 프로젝트는 기업이나 기관 중심의 협업 모델에 치우쳐 있어, 실제 청년 당사자의 욕구와 참여를 반영하기보다는 행정 편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2) 울산: 직업훈련 중심 접근의 위험성

울산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접근은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단순히 노동시장 이탈 상태로 축소 해석할 위험이 있다. 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기반의 직업훈련은 일부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산업사회적 모델에 고착된 발상이며, 디지털 기반 청년 세대의 노동관과 정체성 변화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직업훈련 이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심리적 회복, 장기적 자립을 위한 구조는 취약한 편이며, 재고립 가능성에 대한 사후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3) 충북: 자조모임과 가상회사 모델의 제도화 한계

충북 청년미래센터는 또래 기반 자조모임 '청년이음터'와 가상회사 운영이라는 참신한 시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자조모임은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연결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참여가 극도로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어 은둔 상태가 심화된 청년에게는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 또한 멘토링 중심 구조는 동년배 청년에게 과도한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어,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충북게임팩토리'나 '충북미래카페'와 같은 가상회사 모델은 사회적 역할 수행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하나, 이러한 모델이 실제 노동시장으로

의 전환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연결망은 미흡하다. 이 과정에서 청년이 수행하는 노동이 단지 '체험'에 그치거나, 보상 없는 모의실습으로 소비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4) 전북: 공동체 기반 시민참여의 제약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커뮤니티 활동과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사회적 소속감과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나,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여전히 상향식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는 제한적이다. 사회문제 리터러시 교육이나 북콘서트 등은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이러한 활동이 정책이나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년의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 활동이 특정 그룹 중심으로 고착될 경우, '참여 가능한 청년'과 '여전히 고립된 청년' 사이의 새로운 배제를 재생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각 지역의 특화사업은 청년의 고립·은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적 접근을 담고 있으나, 여전히 몇 가지 공통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사업이 개인의 역량 강화 또는 복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제도적 불평등이나 사회구조적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당사자의 참여와 의사결정권 보장이 미흡하여,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지 주체로 기능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고립'이라는 상태에 대응하는 다층적 지원은 존재하지만, 고립의 원인 구조를 해체하거나 대안적 사회 모델을 상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은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지역 청년미래센터 사업의 향후 과제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효율화'가 아니라, 고립·은둔 상태를 만들어낸 사회적 조건과 제도적 결핍에 대한 구조적 개입과 성찰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청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집행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Ⅵ. 결론

본 연구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단순한 개인적 병리나 심리적 특성에 귀속시키는 기존의 해석을 넘어, 사회구조적 조건과 제도적 배제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머튼(Robert K. Merton)의 아노미 이론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담론을 이론적 분석틀로 설정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그리고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청년미래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정부 정책은 고립·은둔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명시하고,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의 정책은 고립·은둔 청년을 단순히 제도 내부로 복귀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라는 구조적 긴장을 완화하거나, 관계적·정치적 시민권을 포괄하는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머튼의 '도피주의(retreatism)' 유형과 연결함으로써, 고립이 단지 일탈이나 기피가 아닌, 제도적 수단 상실에 대한 합리적 반응일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사회적 배제 이론을 통해 고립·은둔 상태가 단지 경제적 결핍을 넘어서 관계적, 상징적, 건강적 배제를 수반하는 다차원적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은둔 청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지원의 대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시민적 권리의 회복과 사회적 주체성의 확장을 목표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책적으로는, 청년미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아직까지는 개별 서비스 제공에 집중되어 있으며, 참여자 주도의 계획 설계나 구조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입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2025)과의 연계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둘째, 현재 개별상담 위주의 지원에 집중된 예산을 재배치하여, 지역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과 시민교육 확대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 당사자가

정책 형성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자문단'이나 '정책협의회' 등 공식 참여 모델을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사회문제 리터러시 교육과 같은 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여 청년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사회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사회적 배제 담론을 결합하여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단순한 개인 병리가 아닌 구조적·제도적 문제로 재구성한 데 있다. 정책적 의의는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미래센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시민권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한 데 있다. 다시 말해, 이론적 의의와 정책적 의의는 분리된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 분석이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적 체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시점에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성이나 참여 청년의 변화 과정에 대한 충분한 추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지역별 청년미래센터의 정책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이 정량적이지 못하고, 공식 문서와 이차 자료에 의존한 부분이 많아 실천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제안된다. 첫째,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의 생애사적 서사(narrative analysis)를 기반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의 접촉 경로, 수용 과정, 그리고 자기 주체성 회복의 경로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미래센터와 유사한 민간 프로그램(예: '씨즈'의 두더지 프로젝트 등)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공공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실천의 다양성을 교차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청년 고립 문제를 단순한 복지의 문제를 넘어 시민권(citizenship)의 회복, 즉 정치·사회적 권리의 문제로 전환하는 이론적 작업이 필요하다.

요컨대, 고립·은둔 청년 정책은 단순한 복귀나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시민으로서 재위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통합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성찰과 정책적 실천의 균형 있는 결합이 향후 연구와 실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2025년 7월 15일 접수
2025년 8월 26일 수정 완료
2025년 8월 8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연구논문〉

강시온·최은희·김가현. 2024.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청주시 가족돌봄청년의 사례와 전문가 FGI 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82-113.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곽미선·박지영. 2024. “사회적 고립 및 은둔의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청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1(8): 165-218.

김달원. 2020.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284: 85-96.

김선기·정준영·채태준·강보배·송효원. 2019.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행연구」. 서울: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김성아. 2021.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김문길·임덕영·노혜진·노현주.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재희·이지연. 2024.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방안 : 제2차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269-281.

노가빈·이소민·김제희. 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57-81.

박소진. 2009. “‘자기관리’와 ‘가족경영’시대의 불안한 삶: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경제와사회」 12-39.

박승민. 2025.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현황과 고려사항.” 「NABO 브리프」. 제68호. 국회예산정책처.

선승아. 2021. “청년의 사회적 배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오재호. 2020.「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 경기연구원.
유민상·신동훈·최윤진·김지경. 2021.「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송림. 2020.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 제1659호. 입법조사처.
장원빈·문의정. 2024. "청년의 은둔이 우울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 및 친구·동료와의 소통 단절의 조절효과."「가정과삶의질연구」 42(4): 135-146.
전경숙. 2021.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청년정책의 방향성 고찰."「입법과 정책」 13(1): 29-56.
정세정·고혜진·김기태·김동진·김성아·오욱찬·이아영·이혜정·임덕영·신영규·하은솔·한겨레·김근혜. 2025.「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류진아·강예은·김성아·함선유·김동진·임덕영·신영규·김문길·이혜정·김기태·김태완·이원진. 2022.「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진영·안지현·김명현·박소희·홍진표. 2023. "은둔형 외톨이의 정신질환 유병률 및 정신사회적 특징."「신경정신의학」 62(4), 164-172.

Achterbergh, L., Pitman, A., Birken, M., Pearce, E., Sno, H., & S. Johnson. 2020.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among young people with depression: a qualitative meta-synthesis of the literature." *BMC psychiatry* 20(1): 1-17.
Burchardt, T., Le Grand, J., & D. Piachaud. 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3(3): 227-244.
Erikson, E. H., & J. M. Erikson. 2020. *The life cycle completed*. WW Norton & Company.

Gausel, N., Leach, C. W., Vignoles, V. L., & R. Brown. 2012. "Defend or repair? Explaining responses to in-group moral failure by disentangling feelings of shame, rejection, and inferio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5): 941-960.

Iwakabe, S. 2020. Working with social withdrawal, or hikikomori, in Japan: From shame to prid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7 (5): 1205-1218.

Kato, T. A., Kanba, S., & A. R. Teo. 2019. "Hikikomori: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future international perspectives."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3(8): 427-440.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 H., & B. Mckee. 1996. *The seasons of a man's life*. Ballantine books.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Li, T.M. & P. W. Wong. 2015. "Youth Social Withdrawal Behavior (Hikikomori): A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Australia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9: 595-609.

Merton, R.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672-682.

Saito, T. 1998. *Shakaiteki hikikomori: Owaranai shishunki*. PHP Kenkyujo.

Sarchione, F., Santacroce, R., Corbo, M., Lupi, M., Martinotti, G., & M. Di Giannantonio. 2015. Hikikomori: Clinical and Psychopathological Issues. *European Psychiatry* 30(1): 28-31.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 531-578.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Bloomsbury Academic.

Wenger GC, & Burholt V. 2004. “Changes in levels of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among older people in a rural area: a twenty-year longitudinal study.” *Canadian Journal on Aging/la revue canadienne du vieillissement* 23(2): 115-127.

〈정부 발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관계부처 합동. 2021.「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2.「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3.「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3.「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관계부처 합동. 2024.「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5.「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고용노동부. 2021.「2022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기타 자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20.12.28. “제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환영하며”. (https://youthpolicy.kr/Press/?bmode=view&idx=5577937)

Rethinking Policy Responses to Socially Withdrawn Youth: The Basic Youth Policy Plan and Youth Future Centers

Park, Jungmi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ong, Hyenku
Ph.D. Student, Department of Counseling, Dankook University

LA, Soohyu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Dankoo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issue of socially withdrawn and isolated youth not as a matter of individual psychological pathology, but as a structural problem rooted in hyper-competition, institutional disconnection, and the erosion of social citizenship. Using Merton's theory of anomie and the discourse of social exclusion as theoretical frameworks, the research critically examines the Korean government's youth policy, including the Basic Youth Policy Plan, its annual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the pilot operation of Youth Future Centers in four regions. The phenomenon—initially conceptualized as "hikikomori"—now affects an estimated 240,000 young people in Korea, or approximately 2.4% of the youth population. This condition can be interpreted as a retreatist adaptation to the disjunction between cultural goals and legitimate means, and as a manifestation of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 encompassing economic, relational, and symbolic dimensions.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underscores the need to treat isolated youth not merely as passive subjects of reintegration, but as active agents entitled to full civic participation. Since 2023, government policy revisions have formally recognized isolated youth as a target group,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Youth Future Centers in Incheon, Ulsan, Chungbuk, and Jeonbuk. These centers provide outreach, counseling, social skills training, and career development, while also pursuing regionally tailored initiatives such as digital outreach, industry-linked training, peer mentoring, and

civic education. Despite these developments, current policies remain largely focused on restoring youth to preexisting institutional norms, with limited attention to structural inequality or the inclusion of youth voices in policymaking. This study argues for a paradigm shift—from short-term individual recovery toward a rights-based, integrative approach that centers on social inclusion, citizenship, and community-based solidarity.

Key Words: Socially withdrawn and isolated youth, Anomie theory, Social exclusion, Youth policy, Youth Future Centers, Citizenship, Civic participation

한국사회 제26집 2호(2025년): pp.185-215

첫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성과의 성별 격차 및 모성 자녀 페널티 분석: 육아 조력자의 영향*

최 수 현** · 신 종 국***

요 약

첫 출산이 부모의 노동시장 성과의 변화(각각, 아버지·어머니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적 사건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어머니 효과의 출산 후 경로를 아버지 효과와 비교함으로써 모성 자녀 페널티(maternal child penalty)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육아 조력자의 모성 자녀 페널티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1~25차(1998~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 및 근로 경험이 있는 남녀에 대한 개인별 종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첫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10년 후까지 총 16년간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 출산은 본 연구에서 고려한 모든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노동시장 성과에 현저히 더 큰 불이익을 초래했으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첫 출산 후 1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는 모성 자녀 페널티가 단기적 현상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속됨을 시사한다.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경험한 어머니는 그렇지 못한 어머니 대비 모성 자녀 페널티가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연구 결과는 육아 지원이 단기적으로는 모성 자녀 페널티 감소에 유익하지만,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성과의 성별 격차를 장기적으로 제거하기에는 불충분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첫 출산, 육아 조력자, 아버지·어머니 효과 추세, 모성 자녀 페널티, 사건 연구 방법론, 동적 차분법

---

*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지원(NRF-2020S1A3A2A01095237), 2025년도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내지원연구비 및 고려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제 1저자: 한국개발연구원, csh@kdi.re.kr,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 jongkookshin@korea.ac.kr

Ⅰ. 서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은 대부분의 전 세계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다(Henrik Kleven·Camille Landais·Gabriel Leite-Mariante, 2024). 그러나, 성별 임금 격차는 대한민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한민국은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가입국 중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은 2022년 기준 성별 임금 격차가 큰 상위 3개 OECD 회원국(대한민국, 일본, 미국) 및 OECD 평균 성별 임금 격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은 물론 일본과 미국 대비로도 큰 차이를 보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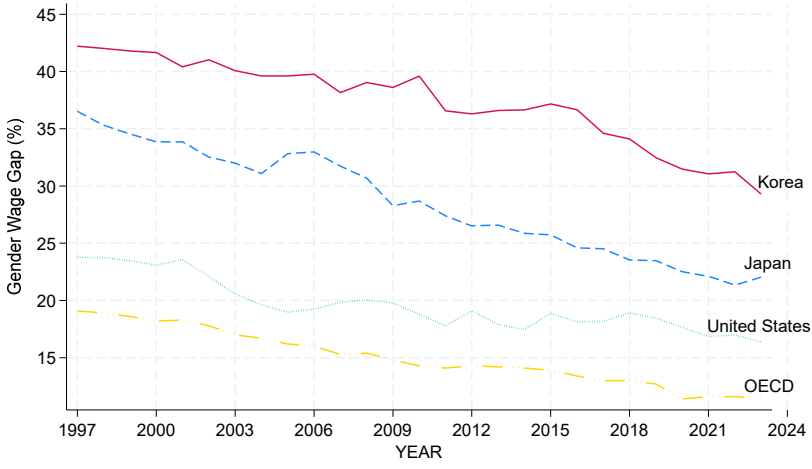

주: 성별 임금 격차 = [(남성 중위소득 - 여성 중위소득) / 남성 중위소득] × 100
자료: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측되는 노동시장 성과의 성별 격차에 대한 요인으로 교육 등 남녀 간 인적자본과 생산성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근거로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에 비해 약 10%p 뒤쳐진 것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성별 격차는 2016년 기준으로 역전되었으며, 이후 여성의 우위가 점차 커지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KOSIS 자료). 따라서 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하는 성별 임금 격차는 인적자본과 생산성 차이라는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최근 문헌에서는 직종, 고용형태, 산업, 기업규모, 집단교섭력, 근무시간 유연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성역할 규범, 가족 내 역할 분담,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 사회문화적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더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자녀 출산 이후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는 이른바 '모성 자녀 페널티(maternal child penalty)'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큰 사회적 이슈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별개의 사안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자녀 출산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학문적·정책적 중요성이 크다.

본 연구는 동적 사건 연구 방법론에 기반하며,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1~25차(1998~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 및 근로 경험이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첫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10년 후까지 총 16년간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개인별 종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출산 전·후의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월수입, 주당 근로시간, 취업률, 시간당 임금)를 비교하여 모성 자녀 페널티의 영향을 추정했으며 그 결과, 월수입에 대한 모성 자녀 페널티는 노동 공급 채널 특히 출산 직후 취업률의 감소를 통해 나타났다. 이는 육아 부담 등으로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에 부담을 가진다는 기존 문헌의 결과와 일치한다.

해외 선행연구에서 조부모의 육아 지원이 여성의 노동 공급 및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제시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도구변수를 사용한 국소처치효과를 측정한 것으로 해당 도구변수에 의해 행동이 변한 세부

집단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육아 조력자의 다양한 영향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국내에는 일부 정책 보고서에서 설문조사에 대한 단순 기술통계 분석 또는 통계 모형에 의존한 분석이 주를 이루며, 출산 및 육아 조력자의 노동시장 성과의 성별 격차에 대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인과관계에 주목한 국내 실증 연구는 전무하다. 이것이 본 연구가 채우려 하는 문헌의 공백이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 중 하나는 육아 조력자의 도움이 모성 자녀 페널티의 동적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에, 육아 조력자(자세한 것은 3장의 자료에 관한 설명 참고)의 도움을 경험한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의 모성 자녀 페널티의 동적 행태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가족 내 또는 사회적 돌봄 자원의 이용 가능성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총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행한다. 엄밀히 말해, 육아 조력자의 유무는 여성의 잠재적 노동 성과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외생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단순 비교치가 육아 조력자의 가용성이라는 변인의 인과적 영향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인 아버지 집단에 대한 플라시보 검정 및 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에서 널리 활용되는 평행추세(parallel trend)에 대한 시각적 확인 등을 통한 긍정적 진단 검사 결과를 제시하며, 이에 연구 결과를 평균정책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 Ⅱ장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 Ⅲ장에서는 사건 연구 분석(event study) 방법론을 토대로 첫 출산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 모형을 소개하고 분석에 사용된 표본 및 변수의 기초통계를 살펴본다. 제 Ⅳ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제 Ⅴ장에서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논의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노동시장 성과의 성별 차이 요인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전통적 설명은 남녀 간 인적자본 축적 수준의 차이에 기반한 합리적 임금 격차 가설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연구들은 교육 수준이나 경력과 같은 전통적인 정량적 요인뿐 아니라, 전공 선택이나 대학 수준과 같은 정성적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인적자본 요인만으로는 성별 임금 격차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Lips, 2013; Blau·Kahn, 2007, 2017; 김창환·오병돈, 2019; 김난주, 2017; 유정미, 2017 등).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직종/고용형태/산업/기업규모/집단 교섭력/근무시간의 길이 및 유연성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Blau·Kahn, 1995, 2003, 2017; Goldin, 2014; Bertrand·Hallock, 2001; 금재호, 2011)과 사회심리 요인/성역할 규범/가족 내 역할 분담 등 사회문화적 요인(Bertrand, 2011; Stansbury·Kirkegaard·Dynan, 2023)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성별 격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남아 있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Andersen·Nix, 2022; 김난주, 2017; 유정미, 2017; 김창환·오병돈, 2019).

2. 출산과 모성 페널티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듯, 최근에는 기존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노동시장 성과의 성별 격차를 출산이라는 단속적인 생애주기적 요인과 연관 지어 분석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Goldin·Kerr·Olivetti, 2022; Kleven et al. 2019, 2024; Cortés·Pan, 2023; Andersen·Nix, 2022; 곽은혜, 2020; 최세림·방형준, 2018; 오혜은, 2017; 장진희, 2020; 유인경·이정민, 2020; 조덕상·한정민, 2024). 해당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를 저해하는 '모성 페널티(motherhood penalty)'로 이어지는

반면, 남성에게는 뚜렷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성과가 상승하는 '부성 프리미엄(fatherhood premium)'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동일한 가족형성 사건이 성별에 따라 상이한 노동시장 결과로 나타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모성 페널티는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임금, 승진, 고용 양상 등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체계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설명으로는 출산으로 여성의 생산성이 실제로 감소한다는 인적자본 가설(Becker, 1985; Mincer·Polacheck, 1974)이 있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 기간 동안 직장을 떠나 인적자본을 상실하고 축적할 기회를 놓치게 되며, 육아 책임으로 인해 업무 시간 및 집중도(Anderson·Binder·Krause, 2003; Evertsson, 2013)에 피해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연관되어 역할갈등이론(role conflict theory, Greenhaus·Beutell, 1985)은 개인이 상충하는 기대와 욕구를 가진 복수의 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인지적 부담, 감정적 갈등, 사회적 압력 등으로 인해 특히 여성의 직장 내 업무 헌신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가설이다. 통계적 차별가설(statistical discrimination hypothesis, Phelps, 1972; Arrow, 1971; Correll·Benard·Paik, 2007; Ishizuka, 2021)은 비대칭적 정보 상황에서 고용주가 특정 집단(자녀를 둔 여성)에 속한 개인의 실제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단 평균에 근거하여 채용 및 승진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설명한다. 이로 인해 모성 페널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위특성차별 가설(status-based discrimination hypothesis, Berger·Cohen·Zelditch, 1972; Ridgeway·Correll, 2004; Benard·Correll, 2010)은 사회에서 나이, 성별, 인종 등 지위 특성이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차별을 일으킨다는 이론이다. 여성이 어머니가 된 이후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지위를 갖게 되는 배경으로는 이상적 근로자와 좋은 어머니의 특성 간 충돌(Hayes, 1996), 성별 고정관념(Cuddy·Fiske·Glick, 2004) 등이 주요하게 지적된다. 통계적 차별은 개인의 특성과 능력이 확인되면 차별이 사라지나,

지위 특성 차별은 능력과 상관없이 지속된다는 차이를 보인다.

대체가능성이론(substitutability theory, Goldin, 2014; Bertrand·Goldin·Katz, 2010; Goldin·Katz, 2016; Azmat·Ferrer, 2017)에 따르면, 여성은 출산이나 육아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높은 커리어 성장이 기대되지만 장시간 근무와 높은 헌신을 요구하는 이른바 탐욕스러운 직업(greedy jobs)보다는, 일정한 근로시간이 보장되고 표준화된 업무가 가능한 대체가능한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직업 선택의 제약이 결국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3. 출산 여성의 노동 공급(경력단절) 및 육아 조력자의 영향

위에 조사한 이론 문헌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하여 모성 페널티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육아 부담의 경감은 출산한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충분히 성장한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박세은·고선, 2018)은 소위 경력단절이 전통적 성역할 분담, 특히 육아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와 상응하여, 조부모의 육아 지원 여부 및 접근성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해외 문헌(Psadas·Vidal-Fernandez, 2013; Compton·Pollak, 2014; Bratti·Frattini·Scervini, 2016; Guo·Li·Yi·Zhang, 2018)들은 조모 사망, 정책 변화, 은퇴, 쌍둥이 출산 등 다양한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해당 도구변수에 반응한 세부 그룹의 국소평균처치효과(local average treatement effect, LATE)를 분석하였으나, 전체 집단에서 효과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연구(이윤진·권미경·김승진, 2015; 이정희, 2019; 김지경·조유현, 2003) 역시 설문조사에 기반한 단순 통계 분석, 회귀분석 또는 비례재해 모형 등 통계 모형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그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Ⅲ. 분석 방법

1. 연구 디자인 및 분석 모형

본 연구의 초점은 첫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전체 효과(모성 자녀 페널티, maternal child penalty)를 추정하고, 이를 활용해 육아 조력자의 존재가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다. 본 연구의 관심사는 첫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총체적 함의이기 때문에 국소처치효과(local treatment effect)를 추정하는 도구변수 등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 이에 Kleven et al.(2019, 2024)의 연구 모형을 원용해, 동적 사건 연구(dynamic event study) 방법론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이를 확장한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기에 완전히 외생적이지 않은 사건이다. 하지만,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비관측 요인이 출산 전·후로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다는 신빙성 있는 식별 가정하에, 첫 출산 전·후 아버지 대비 어머니의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 차이를 모성 자녀 페널티의 측정치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방법론은 개인적 변이를 활용하기에 매우 정확하게 동적 양상(dynamic trajectories)을 측정할 수 있으며, 단기와 장기의 효과를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육아 조력자의 영향은 육아 조력자 유무에 따라 모성 자녀 페널티의 동적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측정한다. 물론 육아 조력자의 유무 역시 외생적 요인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추정치가 인과관계의 해석을 갖기 위해서는 신빙성 있는 식별 가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두 그룹 간 모성 자녀 페널티의 평행추세 가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첫 출산이라는 사건을 기준시점($t = 0$)으로 설정하고 사건 전·후에 그룹별 평균 노동시장 성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 양상(trajectory)을 보이는지를

식 (1)에 제시된 모형을 사용해 추정한다.

$$(1) \quad Y_{ist}^{g} = \sum_{j \neq -1} \alpha_j^g I[j=t] + \sum_k \beta_k^g I[k=age_{is}] + \sum_y \gamma_y^g I[y=s] + \nu_{ist}^g$$

여기서 Y_{ist}^{g}는 그룹(g, 성별 및 육아 조력자 유무 등으로 구분)에 속한 개인 i가, 연도 s, 이벤트 시점 t에서 보인 노동시장 성과를 의미한다. 이벤트 시점 더미변수 $I[j=t]$는 사건 발생 전·후의 경과기간(t년)을 나타내며, 사건 발생 직전 연도인 $t=-1$을 해당 연도 식에서 생략했다. 따라서 모든 이벤트 시점 계수 α_j^g는 그룹별 첫 자녀 출산 직전년도 대비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한다. 두 번째 항 $I[k=age_{is}]$은 조사 응답 당시의 연령에 대한 더미변수로 커리어, 연공서열 등 개인의 생애주기에 의한 평균적 영향은 물론 부부 간의 나이 차이로 인한 영향을 비모수적으로 유연하게 통제한다. 세 번째 항 $I[y=s]$는 조사 응답 연도에 대한 더미변수로 비즈니스 사이클, 인플레이션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적용된 법률과 제도적 변화 및 평균적인 사회 관습의 효과 등 해당 연도의 모든 경제주체에 미치는 요인을 통제한다.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 성과 Y_{ist}^{g}는 기본적으로는 월수입의 수준으로 측정하며 노동시장 불참여로 인한 0을 포함한다. 따라서 분석모형에서 추정된 효과는 노동시장 이탈 또는 경력단절(노동 공급의 외재적 마진), 근로시간 조정(내재적 마진), 직종 변경 등으로 인한 시간당 임금 변동의 영향을 반영한 총 효과를 나타낸다. 전달 경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각각을 성과 변수로 삼고 추가 분석을 진행한다. 추정된 이벤트 효과 α_j^g는 아래의 식 (2)를 사용해 퍼센티지로 환산하며 이를 그룹별 추세(아버지, 어머니 추세 등)로 칭한다.

$$(2) \qquad P_t^g \equiv \frac{\hat{\alpha}_t^g}{E\left[\widetilde{Y}_{ist}^{g} \mid t\right]}$$

여기서 $\widetilde{Y}_{ist}^{g} = \sum_{k} \hat{\beta}_{k}^{g} I[k = age_{is}] + \sum_{y} \hat{\gamma}_{y}^{g} I[y = s]$ 로, P_t^g는 그룹(g), 이벤트 시점(t)에서 첫 출산의 영향을 사건이 없었더라면 달성했을 반사실적(counter-factual) 평균적인 노동시장의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여성이 첫 출산으로 인해 겪는 불이익인 이벤트 시점 (t)에서의 모성 자녀 페널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여기서 m과 w는 각각 남성(men)과 여성(women)을 의미한다.

$$P_t \equiv \frac{\hat{\alpha}_t^m - \hat{\alpha}_t^w}{E\left[\widetilde{Y}_{ist}^w \mid t\right]} \quad (3)$$

마지막으로 육아 조력자의 영향은 식 (4)에 의해 측정한다.

$$F_t \equiv P_t^a - P_t^{\varnothing} \quad (4)$$

단, P_t^a와 $P_t^{\varnothing}$는 각각 육아 조력자가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의 모성 자녀 페널티를 의미한다. 육아 조력자의 영향(F_t)은 식 (3)과 (4)의 각각의 차이에 대한 차이로 측정되며 Kleven et al.(2019, 2024)의 연구 방법론을 육아 조력자의 영향으로 확장한 것이다.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단기 효과의 식별에는 첫 출산을 제외한 다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결정 요인이 이벤트 시점 전·후로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약한 가정만이 요구된다. 장기적 효과의 식별에는 첫 출산이 없었더라면 두 집단의 노동시장 성과가 같은 추세를 가질 것이라는 평행추세에 관한 가정을 요구한다.

본 연구 모형은 Kleven et al. (2019)와 같이, 기존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주는 개인 수준의 다양한 요인(교육수준/직종/고용형태 등, 'II. 선행연구 검토'의 '1. 노동시장 성과의 성별 차이 요인' 참조)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된 효과는 관심 변인인 출산 또는 육아 조력자 존재가 미치는 포괄적 영향을 측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만약 본 연구의 관심 변인이 해당 요인들에 영향을 준다면, 예를 들어 출산을 예상한 여성이 교육을 적게 받는다면, 본 연구의 추정치는 교육 수준의 차이를 통해 나타나는 출산의 영향까지 반영한 포괄적인 평균처치효과를 의미한다.

2. 분석 자료

1) 데이터

동적 사건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첫 출산이 근로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 국내 근로자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2) 초산시기(년)에 대한 정보와 (3)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정보(임금, 근로시간, 취업 여부 등)를 (4) 출산 전후로 장기간 제공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25차(1998-2022년) 자료를 활용한다. 해당 조사는 1998년을 시작으로 전국 도시지역(제주도 제외)을 대표하는 5,000가구와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개인의 출산 경험과 시점, 노동시장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매년 반복적으로 수집한다. 이는 출산 연령의 개인차를 반영하는 종단 자료로, 동일 개인의 첫 출산 전후 노동시장 경로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상술한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는 데 이상적이다.

Kleven $et\ al.$(2019)에 기반해, 아래와 같은 자료 정제(data cleaning) 과정을 통해 분석 표본이 구성되었다. 첫 출산을 경험한 남녀의 이벤트 전·후 총 16년(첫 출산 5년 전-첫 출산 10년 후)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자료 선정을 위해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첫째, 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초산 연령은 합계출산율이 산출되는 연령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샘플기간 동안의 평균 초혼 연령 차이를 고려하여 남성은 만 18-52세, 여성은 만 15-49세로 제한한다.[1] 둘째, 근로 의지/능력

1) 합계출산율 산출에 해당하는 여성의 연령은 만 15-49세이며, 남성의 연령이 더

파악을 위해, 초산 전 5년 동안 최소 1회 이상의 근로 경험이 있는 개인으로 제한했다. 셋째, 표본 확보를 극대화하면서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의 잠재적 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해 총 16년의 연구 기간 중 적어도 5회 이상 응답한 개인으로 제한했다.[2] 더 나아가, 육아 조력자의 도움 경험 유무에 따른 아버지·어머니 효과 및 모성 자녀 페널티를 측정하기 위해 응답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육아 조력자(동거·비동거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 동거·비동거하고 있는 타인(아이보는 아줌마, 파출부 등))의 도움을 받은 경험의 여부를 기준으로 육아 조력자의 도움 경험 유무를 구분하였다.

원자료는 '초산시기(년)'의 변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신규 응답자에 한해서만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기에 표본 가구에 새로운 가구원이 합가 등의 이유로 추가되거나 기존 응답자의 출산시 초산시기 변수가 대체적으로 누락되어 본 연구의 핵심 변수 파악에 문제가 있다. 이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 및 첫째 자녀의 생년 정보를 활용하여 초산시기 변수를 보완했다.

2) 기초통계

〈표 1〉은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기초통계를 요약한 것이다. 자료 정제의 결과, 총 관측치 수는 14,371개로 1,206명의 개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아버지의 관측치 수는 8,595개(737명), 어머니의 관측치 수는 5,776개(469명)이다. 아버지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평균 생년은 1972.5년, 초산 연령은 만 31.1세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평균 생년은 1974.9년, 초산 연령은 만 28.6세로 나타났다.

높은 것은 전체 관측기간(1998~2022년) 동안의 표본 평균 초혼 연령 차이 약 2.78세를 고려한 것이다. 이는 동기간 모집단의 나이 차이와 매우 비슷하며, 본 연구의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이러한 정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출산 연령이 극단적으로 이르거나 늦은 사례를 제외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추정된 값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출산 이점 시점에만 응답한 패널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전체 여성 표본의 약 0.2%에 해당하는 1명을 제외하면 출산 이후 시점까지도 응답을 유지하고 있어, 분석 목적과 해석의 정합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최소 1회 이상 경험한 육아 조력자 경험 그룹의 경우, 아버지의 관측치는 1,606개(136명)로 평균 생년은 1973.8년, 초산 연령은 만 31.3세였다. 어머니의 관측치는 1,467개(119명)로 평균 생년은 1976.1년, 초산 연령은 만 28.4세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경험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 아버지 관측치는 6,989개(601명)로, 평균 생년은 1972.3년, 초산 연령은 만 31.0세였다. 어머니의 관측치는 4,309개(350명)로 평균 생년은 1974.5년, 초산 연령은 만 28.6세로 나타났다.

〈표 1〉 표본 인구 통계학적 기초통계

변수	아버지				어머니			
	Mean	SD	Min	Max	Mean	SD	Min	Max
관측치 수	8,595개(737명)				5,776개(469명)			
초산 연령	31.05	3.84	20	49	28.56	3.08	21	46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경험한 아버지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경험한 어머니			
관측치 수	1,606개(136명)				1,467개(119명)			
초산 연령	31.32	4.16	20	49	28.38	2.50	22	38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비경험한 아버지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비경험한 어머니			
관측치 수	6,989개(601명)				4,309개(350명)			
초산 연령	30.99	3.76	21	46	28.63	3.26	21	26

주: 초산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25차 연도(1998-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성과를 주된 일자리에 대한 응답으로 한정하였으며, 노동시장 성과는 총 4가지 지표(월수입, 주당 근로시간, 취업여부, 시간당 임금)를 기준으로 삼았다. 월수입 및 시간당 임금은 세전 수령 금액,

주당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 근로시간) 정보를 사용했다.

〈표 2〉에 나타난 종속변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노동시장 성과는 월평균소득은 약 265.12만원, 주당 근로시간은 약 45.58시간, 취업률은 약 94.19%, 시간당 임금은 약 1.38만원이다. 어머니의 노동시장 성과는 아버지에 비해 모든 측면에서 낮게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약 93.87만원, 주당 근로시간은 약 22.91시간, 취업률은 약 53.20%, 시간당 임금은 약 0.57만원이다.

육아 조력자의 도움 경험 여부는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는 노동시장 성과의 모든 지표에서 더 큰 격차로 나타났다.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경험한 아버지는 도움을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에 비해 월수입은 19.90만원, 시간당 임금은 0.18만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주당 근로시간은 2.39시간, 취업률은 0.52%p 더 낮았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육아 조력자의 도움 유무 그룹 간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경험한 어머니는 도움을 경험하지 못한 어머니에 비해 월수입은 99.29만원, 주당 근로시간은 13.85시간, 취업률은 31.94%p, 시간당 임금은 0.94만원 더 높았다. 본 기초통계는 육아 조력자가 어머니의 노동시장 성과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다음 장의 계량 모형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추정한다.

〈표 2〉 종속변수 기초통계

변수	아버지				어머니			
	Mean	SD	Min	Max	Mean	SD	Min	Max
월수입 (만원)	265.12	209.64	0	7314.22	93.87	126.47	0	2262.90
주당 근로시간	45.58	17.01	0	126.00	22.91	23.13	0	126.00
취업률(%) (취업=1)	94.19	23.39	0	1.00	53.20	49.90	0	1.00
시간당 임금(만원)	1.38	1.22	0	27.24	0.57	1.19	0	43.52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경험한 아버지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경험한 어머니			
월수입 (만원)	281.30	182.70	0	3047.59	167.94	151.60	0	2262.90
주당 근로시간	43.64	16.00	0	126.00	33.24	19.80	0	126.00
취업률(%) (취업=1)	93.77	24.17	0	1.00	77.03	42.08	0	1.00
시간당 임금(만원)	1.52	1.21	0	16.75	1.38	1.38	0	43.52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비경험한 아버지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비경험한 어머니			
월수입 (만원)	261.40	215.20	0	7314.22	68.65	105.44	0	1435.20
주당 근로시간	46.03	17.20	0	126.00	19.39	23.13	0	112.00
취업률(%) (취업=1)	94.29	23.20	0	1.00	45.09	49.76	0	1.00
시간당 임금(만원)	1.34	1.22	0	27.24	0.44	1.08	0	27.54

주: 1) 월수입과 시간당 임금은 '실질 GDP 2015년=100'으로 변환한 값이다.

2) 월수입은 임금과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을 포함한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25차 연도(1998-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Ⅳ. 분석 결과

1. 아버지·어머니 효과 추세(Trend) 및 자녀 페널티(Maternal Child Penalty) 추정 결과

본 장에서는 제 III 장에서 제시한 동적 사건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첫 출산 5년 전부터 10년 후까지 총 16년 동안 아버지·어머니 효과 및 모성 자녀 페널티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첫 출산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림 2〉는 식 (2)의 연령 및 연도 효과를 통제한 후 첫 출산으로 인한 영향을 나타내는 아버지·어머니 효과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해당 효과는 상술한 바와 같이, 첫 출산 직전년도($t=-1$) 대비 이벤트 시점 영향을 의미한다. 패널 A는 첫 출산이 개인의 월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여성의 월수입은 첫출산 1년 후 약 40% 급감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많은 시점에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만 점추정치(point estimate)는 약 10% 정도 증가한 뒤 해당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월수입에 대한 어머니 효과는 출산 5년 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되지만, 10년 후에도 약 -20% 수준으로 남아 장기적으로도 자녀 출산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됨을 보여준다.[3)]

상술한 바와 같이 월수입 변수는 노동시장 미참여로 인한 0을 포함한다. 따라서 해당 결과가 어떤 전달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 취업률, 시간당 임금 등의 추가적 노동시장 성과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을 이어간다. 여성의 월수입 감소는 주로 총근로시간의 축소(정점에서 약 -70% 이상, 패널 B)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역시 비참여자의 0이 포함되므로, 이는 외재적 마진인 취업률 하락(약 -60%, 패널 C)과 내재적 마진인 참여자의 근로시간 감소(약 10%)가 결합된 결과를 반영한다.[4)] 패널 D는 여성의 시간당 임금(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사람의 총임금/시간)의 점추정치가 첫 출산 후 하락하며, 10년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다만, 많은 경우에 있어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는 것은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시사한다.

주당 근로시간, 취업률, 시간당 임금 등의 모든 요인이 월수입 감소에 영향을

3) 10년차 어머니 추세의 95% 신뢰구간의 상단부가 0을 가볍게 터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해당 크기가 통계적으로 0과 같다는 귀무가설을 통상적 5% 유의 수준에서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직전 연도까지 해당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과, 전체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상당한 크기인 것, 이벤트 기간이 진행될수록 표본 숫자가 줄어들기에 기계적으로 표준오차가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추정치의 값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4) 노동공급의 내재적 마진인 참여자의 노동 공급시간 변화율은 대략적으로 총근로시간 변화에서 취업률 변화율를 뺀 값으로 1인당노동공급시간 = 취업률 x 1인당 근로시간이며 이를 로그미분해 도출할 수 있다.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성차별이 낮고 여성 친화적 기업 환경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덴마크 샘플의 연구(Kleven et al., 2019)와 질적으로 비슷한 양상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비참여가 월수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각각의 채널이 유사한 영향력을 보였던 덴마크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흔히 말하는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방증한다.

일반적인 사건 연구 분석과 달리, 사건 발생시점($t=0$)에 영향이 최대화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출산이 사건 발생 연도 중간에 일어나기 때문으로, 출산 전의 소득 및 노동시장 참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미미하지만 출산 2년 전인 $t=-2$시점에서 노동시장 성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변화가 감지된다. 이는 출산 직전 일부 여성이 전업주부 혹은 파트타임 등으로 전환하면서 노동 공급을 줄이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더불어 이는 기준이 되는 $t=-1$ 시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를 감소시켜, 측정된 모성 자녀 페널티를 과소추정되도록 편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연구의 추정치는 보수적인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는 첫 출산 직후 급격히 악화되며, 이는 추세선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남성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양상이다.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측 요인이 출산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여성에게만 급격히 변화했을 가능성은 신빙성이 낮다. 따라서 본 사건 분석 모형의 결과를 단기 모성 자녀 페널티 추정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출산 5년 전부터 3년 전까지 아버지·어머니의 효과가 대체로 평행한 추세(parallel trend)를 보이기 때문에, 이후 나타나는 장기 모성 자녀 페널티 역시 첫 출산의 인과적 효과로 해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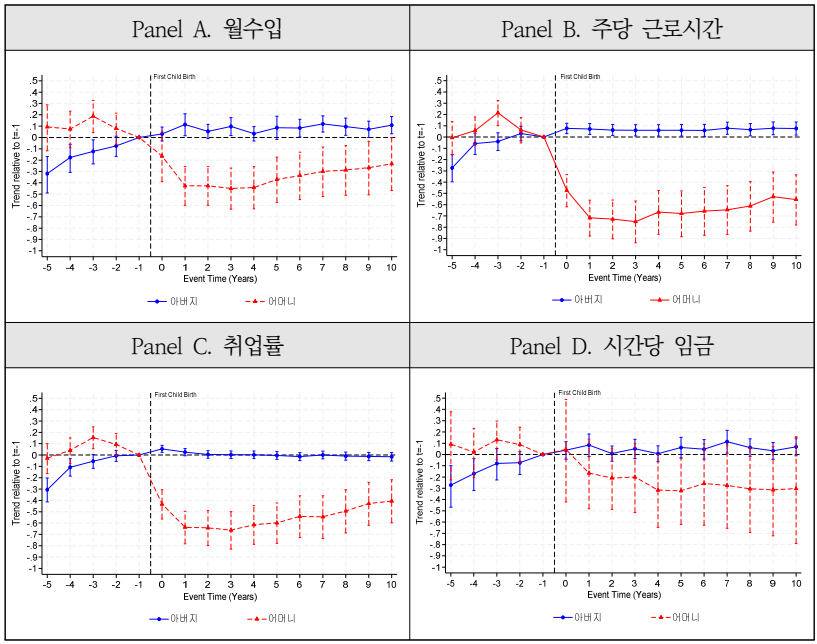

주: 1) 그래프에 표시된 구간은 95% 신뢰구간이다.
2) 회귀분석시 개인과 응답연도에 대해 클러스터링(Clustering) 된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25차 연도(1998-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2〉 아버지·어머니 효과 추정 결과

〈그림 3〉은 위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식 (3)에서 제시한 모성 자녀 페널티의 동적 행태를 보여준다. 이는 아버지 효과와 어머니 효과의 차이를 첫 출산을 하지 않은 반사실적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 기댓값의 비율로 나타낸 값으로, 여성이 첫 출산으로 인해 첫 자녀의 나이가 같은 남성 대비 불이익을 입는 정도를 측정한 비율이다. 첫 출산 직후 모성 자녀 페널티는 월수입의 경우 약 72%, 출산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약 57%로 나타났다. 모성 자녀 페널티 영향의 메커니즘은 어머니 효과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비참여를 통한 시간 감소가 가장 큰 영향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모성 자녀 페널티의 점추정치는 사건 직후의 약 34%에서 10년 후 약 48%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첫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비참여("경력단절")를 경험한 여성이 임금이 낮은 저숙련 직종으로 복귀하는 양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시간당 임금에 대한 모성 자녀 페널티는 신뢰구간이 매우 크게 측정되어 개인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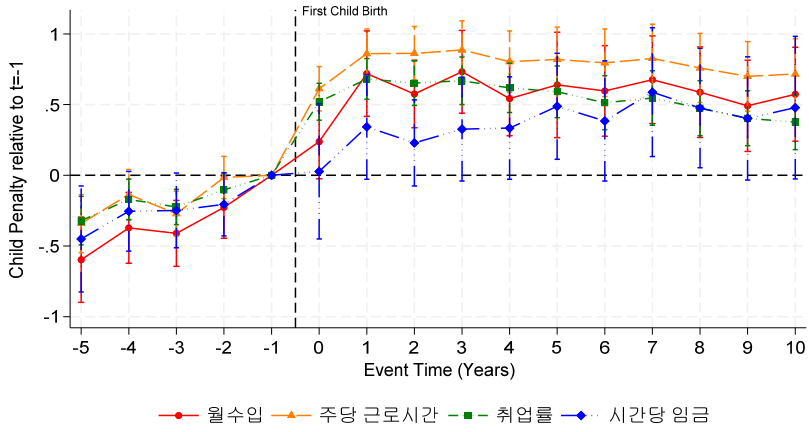

주: 1) 그래프에 표시된 구간은 95% 신뢰구간이다.
2) 회귀분석시 개인과 응답연도에 대해 클러스터링(Clustering) 된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25차 연도(1998-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 모성 자녀 페널티 추정 결과

2. 육아 조력자의 영향

위의 분석은 우리나라에서 모성 자녀 페널티가 주로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통해 나타남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의 변화는 여성이 출산 후 유연한 근로시간은 가능하지만 임금이 낮은 저숙련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패턴의 이유 중 하나로 육아 부담으로 인한 노동시장 성과 부진이라는 가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해당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경험한 여성과 경험하지 못한 여성의 모성 자녀 페널티를 비교함으로써 육아 조력자의 영향을 측정한다. 모성 자녀 페널티가 남성과 여성의 첫 출산으로 인한 영향의 차이로 정의되기에, 육아 조력자 영향의 추정은 동적 삼중차분법(dynamic triple differences) 연구 디자인을 활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는 육아 조력자의 도움 경험 유무에 따른 아버지·어머니 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대조군인 아버지의 모든 노동시장 성과가 육아 지원 가용성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는 연구 분석 모형의 식별 가정을 지지하는 플라시보 검정 결과로 해석된다. 물론, 육아 조력자의 유무가 무작위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생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육아 조력자 도움의 활용 가능성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돌봄 자원의 계층화 가능성도 있다. 또한, 비공식 돌봄이 주양육자의 책임을 가족 내 다른 여성 구성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경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성별화된 돌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경험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출산 전 어머니 효과의 체계적 차이가 그 어떠한 성과변수에 대해서도 감지되지 않는다. 또한, 출산 이후 두 집단의 성과 차이가 급격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방법론을 뒷받침하며, 본 추정치를 육아 조력자에 대한 평균 정책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는 육아 조력자의 도움 경험 유무로 구성된 그룹별 모성 자녀 페널티를 보여주며, 모든 성과 변수에 대해 단기적으로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경험한 그룹이 그렇지 못한 그룹에 비해 낮은 모성 자녀 페널티를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육아 조력자의 영향이 줄어들어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인다. 패널 A는 월수입에 대한 추정치를 보여준다. 육아 조력자의 영향은 식 (4)에 의거 두 집단 간 차이로 측정되며, 점추정치에 따르면, 자녀가 만 1세가 되는 시점(t=1)에 모성 자녀 페널

티가 약 70%(=1-0.3)까지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만 6세 시점에 거의 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표본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두 집단의 95% 신뢰구간은 3년 차에 겹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육아 조력자의 영향이 출산 직후부터 자녀가 매우 어린 시기까지 단기간에 집중됨을 시사한다. 패널 B에 해당하는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을 보면, 신뢰구간을 감안할 때 육아 조력자의 긍정적 효과가 최소 5년 이상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며, 패널 C에 해당하는 취업률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패널 D에 해당하는 시간당 임금에 대한 육아 조력자의 긍정적 영향은 점추정치로는 감지되지만, 신뢰구간을 감안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판단하기 어렵다. 전체 표본을 사용한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에 대한 모성 자녀 페널티의 통계적 유의성이 제한적으로 감지된 만큼, 본 결과가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니며, 해당 결과는 개인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육아 조력자의 존재는 출산 직후부터 자녀 영유아까지 어머니의 노동시장 성과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하나, 그 효과는 노동시장 성과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림 3〉에 나타난 노동시장 성과의 장기적 성별 격차 해소에는 다소 제한적인 역할에 그침을 알 수 있다.

아버지 효과 추세	어머니 효과 추세
Panel A. 월수입	Panel A. 월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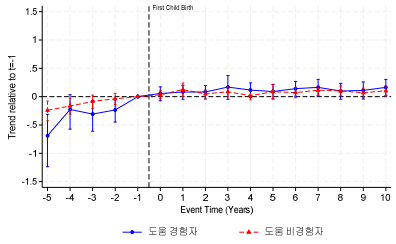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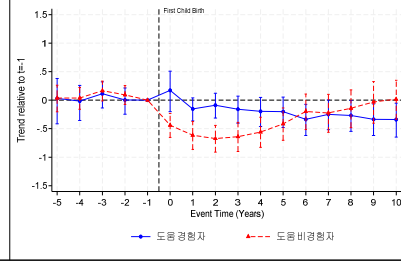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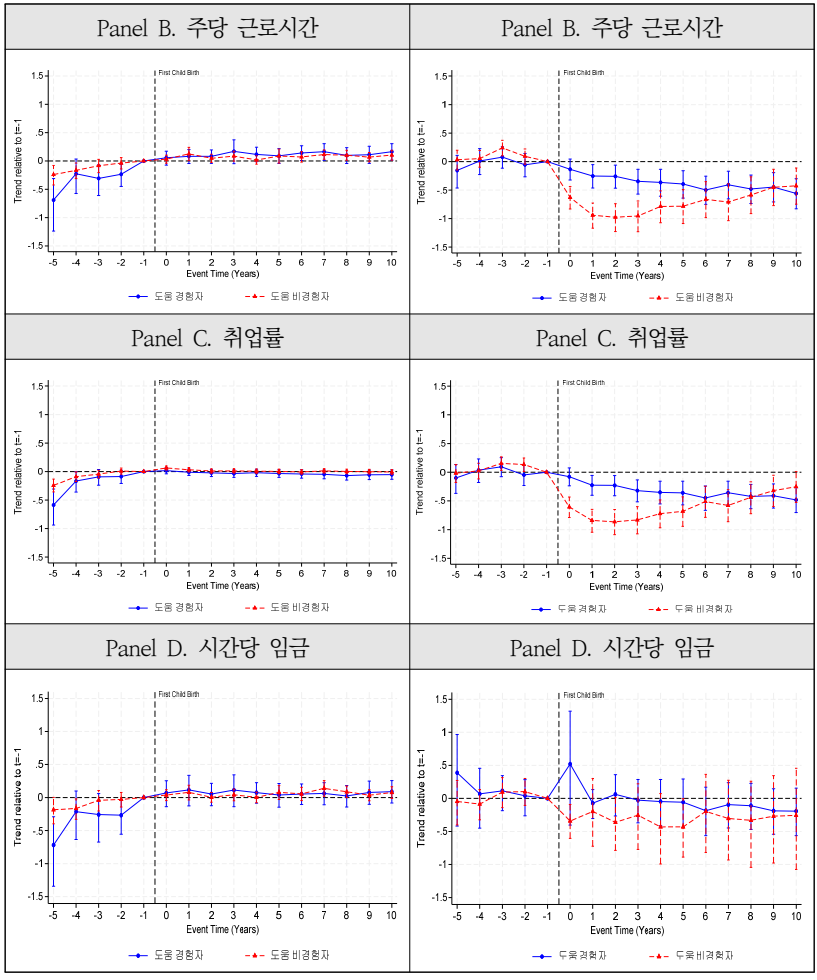

주: 1) 그래프에 표시된 구간은 95% 신뢰구간이다.
2) 회귀분석시 개인과 응답연도에 대해 클러스터링(Clustering) 된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25차 연도(1998-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4〉 육아 조력자의 도움 경험 유무에 따른 아버지·어머니 효과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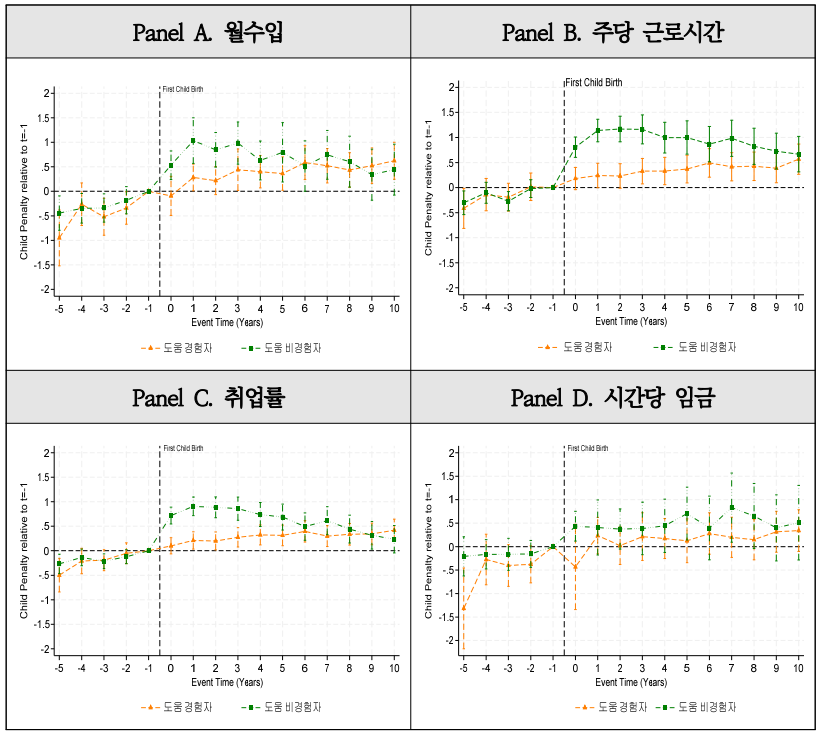

주: 1) 그래프에 표시된 구간은 95% 신뢰구간이다.
2) 회귀분석시 개인과 응답연도에 대해 클러스터링(Clustering) 된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25차 연도(1998-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5〉 육아 조력자의 도움 경험 유무에 따른 모성 자녀 페널티 추정 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첫 출산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적 사건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아버지·어머니 효과 및 모성 자녀 페널티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육아 조력자의 존재가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출산은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 성과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 부성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성별 간 첫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성과 격차, 즉 모성 자녀 페널티가 발생함을 보였다. 모성 자녀 페널티에는 취업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과 같은 내재적 마진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 참여율의 저하와 같은 노동 공급의 외재적 마진 변화로 나타났다. 또한, 모성 자녀 페널티는 첫 출산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육아 조력자의 존재는 출산 직후 단기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 저하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며, 특히 노동시장 참여율 측면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육아 조력자의 도움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와 시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육아 조력자의 유무에 따라 형성된 두 여성 집단 간의 노동시장 성과는 출산 이전에는 차이가 없고 출산 이후에만 차이를 보이며, 대조군인 아버지 집단의 노동시장 성과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정책 개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정책 효과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최근 국내 연구에서 계층에 따라 모성 자녀 페널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예: 곽은혜, 2020)을 감안하면 육아 조력자의 영향 역시 학력/계층/소득/자산/직종/산업/고용형태/사업장 규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육아 조력자의 긍정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는 경향을 보여 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육아휴직, 육아시설, 유연근무제 등의 공식 돌봄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역시 절실하며, 실제로 이러한 정책 채널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Timpe, 2024; Del Rey et al. 2021; Baker et al 2008; 이지혜·진미정, 2024; 신경아·이은아,

2021; 한영선, 2014; 권태희, 2010 등). 본 연구는 모든 연도더미 변수를 포함함으로써, 특정 시점에 국가 전체에 일괄적으로 도입된 육아 정책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기존 문헌과는 분석 범위 및 접근 방식에서 차별점이 있으며, 이들 연구와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깔끔한 현대적 인과관계 분석보다는 전통적인 회귀분석 등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추후 연구가 절실해 보인다.

육아 조력자의 존재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영향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세대 간 돌봄 전이가 다른 여성에게 성별화된 돌봄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나타날 가능성(Rupert and Zanella, 2018)을 고려하여, 가정 내 육아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025년 5월 27일 접수
2025년 8월 27일 수정 완료
2025년 8월 11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권태희. 2010. 유연근로가 여성 관리자의 직장-가정양립에 미치는 효과. 여성연구, 5-30.

곽은혜. 2020. 임금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2010.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향상되었는가?: 성별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금재호. 2011. 성별 임금격차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연구. 국제경제연구, 17(3), 161-184.

김난주. 2017. 세대별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시사점. 이화젠더법학, 9(2), 69-124.

김지경·조유현. 2003. 젊은 여성의 첫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6(3), 181-207.

김창환·오병돈. 2019.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대졸 20 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격차 분석: 대졸 20 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격차 분석. 한국사회학, 53(1), 167-204.

신경아·이은아. 2021. 젠더 관점에서 본 유연근무제의 필요성과 딜레마. 가족과 문화, 33(4), 1-39.

오혜은. 2017. 한국의 모성임금 패널티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4(3), 217-245.

유인경·이정민. 2020.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4).

유정미. 2017.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한국여성학, 33(1), 107-155.

이지혜·진미정. 2024.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취업 상태. 한국보건사회연구, 44(1), 398-425.

이윤진·권미경·김승진. 2015.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이정희. 2019. 여성의 생애노동이력을 통한 경력지속 요인 탐색: 경남지역 1975년생 여성을 중심으로: 경남지역 1975년생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학, 35(1), 39-78.
장진희. 2020. 혼인과 자녀가 성별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이화젠더법학, 12(1), 179-212.
조덕상·한정민. 2024.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KDI FOCUS, 132.
최세림·방형준. 2018. 생애주기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 결혼과 출산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한영선. 2014. 정부의 자녀양육 보조금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패널자료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9-107.
Andresen, M. E., Nix, E. 2022. What causes the child penalty? Evidence from adopting and same-sex coupl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0(4), 971-1004.
Anderson, D. J., Binder, M., & Krause, K. 2003. The motherhood wage penalty revisited: Experience, heterogeneity, work effort, and work-schedule flexibility. ILR Review, 56(2), 273-294.
Arrow, K. 1971. The theory of discrimination (No. 403). Princeton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Industrial Relations Section.
Azmat, G., & Ferrer, R. 2017. Gender gaps in performance: Evidence from young lawy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5(5), 1306-1355.
Baker, M., Gruber, J., Milligan, K. 2008. Universal child care, maternal labor supply, and family well-be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6(4), 709-745.
Becker, G. S. 1985. Human capital, effort,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3(1, Part 2), S33-S58.
Benard, S., & Correll, S. J. 2010. Normative discrimination and the motherhood penalty. Gender & society, 24(5), 616-646.
Berger, J., Cohen, B. P., & Zelditch Jr, M. 1972. Status characteristics and social inter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1-255.
Bertrand, M. 2011. New perspectives on gender. Handbook of labor

economics, 4(Part B), 1543-1590.

Bertrand, M., Goldin, C., & Katz, L. F. (2010). Dynamics of the gender gap for young professionals in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2(3), 228-255.

Bertrand, M., Hallock, K. F. 2001. The gender gap in top corporate jobs. Ilr Review, 55(1), 3-21.

Blau, F. D., Kahn, L. 1995. The gender earnings gap: Some international evidence. In Differences and changes in wage structures (pp. 105-14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lau, F. D., Kahn, L. M. 2003. Understanding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the gender pay gap. Journal of Labor economics, 21(1), 106-144.

Blau, F. D., Kahn, L. M. 2007. The gender pay gap: Have women gone as far as they can?.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1(1), 7-23.

Blau, F. D., Kahn, L. M. 2017. The gender wage gap: Extent, trends, and explanation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5(3), 789-865.

Bratti, M., Frattini, T., Scervini, F. 2016. Grandparental availability for child care and maternal employment: pension reform evidence from Italy (No. 9979). IZA Discussion Papers.

Compton, J., Pollak, R. A. 2014. Family proximity, childcare, and women's labor force attachment. Journal of Urban Economics, 79, 72-90.

Correll, S. J., Benard, S., & Paik, I. 2007. Getting a job: Is there a motherhood penal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2(5), 1297-1338.

Cortés, P., Pan, J. 2023. Children and the remaining gender gaps in the labor marke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61(4), 1359-1409.

Cuddy, A.J., Fiske, S.T. and Glick, P., 2004. When professionals become mothers, warmth doesn't cut the ice. Journal of Social issues, 60(4), pp.701-718.

Del Rey, E., Kyriacou, A, Silva, J. I. 2021. Maternity leave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evidence from 159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4(3), 803-824.

Evertsson, M. 2013. The importance of work: Changing work commi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to motherhood. Acta Sociologica, 56(2), 139-153.

Goldin, C. 2014. A grand gender convergence: Its last chapter. American economic review, 104(4), 1091-1119.

Goldin, C., & Katz, L. F. 2016. A most egalitarian profession: pharmacy and the evolution of a family-friendly occupation.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3), 705-746.

Goldin, C., Kerr, S. P., Olivetti, C. 2022. When the kids grow up: women's employment and earnings across the family cycle (No. w3032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Guo, R., Li, H., Yi, J., Zhang, J. 2018. Fertility, household structure, and parental labor supply: Evidence from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6(1), 145-156.

Hays, S., 199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Yale University Press.

Ishizuka, P. 2021. The motherhood penalty in context: Assessing discrimination in a polarized labor market. Demography, 58(4), 1275-1300.

Kleven, H., Landais, C., Leite-Mariante, G. 2024. The child penalty atlas. Review of Economic Studies, rdae104.

Kleven, H., Landais, C., Søgaard, J. E. 2019. Children and gender inequality: Evidence from Denmark.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11(4), 181-209.

Lips, H. M. 2013. The gender pay gap: Challenging the rationalizations. Perceived equity, discrimination, and the limits of human capital models. Sex Roles, 68(3), 169-185.

Mincer, J., & Polachek, S. 1974. Family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Earnings of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Part 2), S76-S108.

Phelps, E. S. 1972. The statistical theory of racism and sexism.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2(4), 659-661.

Posadas, J., Vidal-Fernandez, M. 2013. Grandparents' childcare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ZA Journal of Labor Policy, 2(1), 14.

Ridgeway, C. L., & Correll, S. J. 2004. Motherhood as a status characteristic. Journal of Social issues, 60(4), 683-700.

Rupert, P., Zanella, G. 2018. Grandchildren and their grandparents' labor suppl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59, 89-103.

Stansbury, A., Kirkegaard, J. F., Dynan, K. 2024. Gender gaps in South Korea's labour market: children explain most of the gender employment gap, but little of the gender wage gap. Applied Economics Letters, 31(17), 1726-1731.

Timpe, B. 2024. The labor market impacts of America's first paid maternity leave poli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31, 105067.

Maternal Labor Market Penalties After First Birth: Can Childcare Support Close the Gender Gap?

Suhyun Cho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Jong Kook Shin
College of Public Policy,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mploys a dynamic event study methodology to analyze the impact of first childbirth on parents' labor market outcomes (father and mother effects, respectively). By comparing the post-childbirth trajectories of the mother effect with the father effect, we estimate the maternal child penalty and examine the influence of childcare support on this penalty. Using data from waves 1-25 (1998-2022)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we analyze labor market outcomes for men and women with childbirth and work experience over a 16-year period consisting of 5-years before and 10-years after first childbirth. Our analysis reveals that mother's labor market outcomes deteriorate immediately after first childbirth, whereas those of fathers are unaffected or even improve. Such negative impacts persist even 10 years after first childbirth, suggesting persistence of maternal child penalty. We also find the presence of childcare support mitigates maternal child penalty. However, this effect is short-lived. Therefore, policy intervention through childcare support alone is unlikely to be sufficient to eliminate the systematic gap in labor market outcomes caused by childbirth.

Key Words: First Childbirth, Childcare Support, Father·Mother Effects, Maternal Child Penalty, Dynamic DID

한국사회 제26집 2호(2025년): pp.217-253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 신뢰와 동네 응집력의 다중가산조절효과

이 호 정* · 이 창 배**

요 약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성인기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인적자원 신뢰와 동네 응집력이 조절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2022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 인적자원 신뢰, 동네 응집력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은 성인기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인적자원 신뢰와 동네 응집력은 각각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울러 인적자원 신뢰와 동네 응집력은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과 성인기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네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 피해 경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인적자원 신뢰와 동네 응집력이 가정폭력 재피해 가능성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동네 응집력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의 세대 간 연속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및 개인 수준의 보호요인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주제어: 가정폭력 피해경험, 배우자 폭력 피해경험, 폭력 재피해, 집합효율성, 인적자원 신뢰, 동네 응집력

* 제 1저자,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1998hojeong@gmail.com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교수, changbaelee@dongguk.edu

Ⅰ. 서 론

최근 경찰청(2024)이 발표한 시도경찰청별 가정폭력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약 21만 8천 건이었던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24년 약 23만 6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가정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폭력으로 정의하며, 배우자뿐 아니라 아동, 노인에 대한 폭력도 포함한다. 특히 가정폭력은 반복성과 지속성이 높아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대 간 악순환이나 재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요구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가정폭력의 세대 간 전이에 주목해 왔다. 특히 사회학습이론(Bandura & Walters, 1977)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목격·관찰한 개인이 이를 모방·학습하여 성인기에 가정폭력의 가해로 재현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왔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 가정 내 학대와 방임, 정서적 불안정성이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피해 또는 부적응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Pezzoli, Pingault, & Eley, 2024).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은 자기효능감 저하, 대인불신, 감정 조절 어려움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무기력감이나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태영·심혜숙, 2011; 안하얀·서영석, 2018; 김은정·김진숙, 2020). 그러나 피해가 반복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며, 이를 설명하거나 완충할 수 있는 조절 요인에 대한 탐색도 제한적이다.

더불어 피해자를 구조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와 태도는 학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들고, 요청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은정·신나래, 2023). 이러한 경험이 반복된다면 결국 외부에 도움을 구하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며, 피해자는 홀로 폭력을

감내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 체계에서 소외된 피해자는 학대 상황을 정상화하거나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추가적으로 겪게 된다(황지원·이희영, 2024).

이러한 점에서, 심리사회적 자원인 인적자원 신뢰는 이 같은 악순환을 완화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주목된다(Cohen & Wills, 1985).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적자원 신뢰는 개인이 신뢰 가능한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도움을 받는 것으로, 외상 후 회복력을 높이고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한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인식하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며, 반복되는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자원만으로는 폭력의 재피해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의 회복력과 대처 행동은 그가 속한 지역사회의 구조적·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들은 가정폭력과 같은 은폐적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 지역사회 내 규범과 응집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대처와 지원 접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Fedina, Mushonga, Bessaha, Jun, Narita & DeVylder, 2019; Ross & Jang, 2000; Sampson, Morenoff & Gannon-Rowley, 2002).

동네 응집력은 지역 내 상호 신뢰와 공동 규범을 바탕으로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홍현미라, 2016). 따라서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이 성인기의 배우자 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의 인적자원 신뢰와 더불어 지역사회 수준의 응집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두 보호 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성장기 피해와 성인기 피해 간 연속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 피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는 배우자 폭력뿐 아니라 아동 및 노인에 대한 폭력도 포함되며, 폭력의 주체와 대상은 배우자(또는 배우자였던 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의 관계, 동거하는 친족 등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가정 내 폭력의 범위와 유형을 명확히 하여 국가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가정폭력 피해는 반복성과 지속성, 그리고 세대 간 전승되는 특성을 가진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평균 피해 기간은 11년 2개월이며, 전체의 48.2%가 10년 이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원혜욱, 2021). 이러한 수치는 가정폭력이 은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범죄임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심리적 손상을 야기함은 물론 가족 전체의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은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성인기에도 대인관계 어려움이나 폭력에 대한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재피해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배우자 폭력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부부폭력', '배우자 학대', '가정폭력'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된다. 최근에는 WHO(2005)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친밀한 관계 폭력' 대신 '배우자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최근 가정폭력 관련 신고 건수가 지속되거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여성가족부, 2022). 가정

폭력은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복지에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는다.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상처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장기적으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의료비 상승,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도 연결된다.

2.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과 배우자 폭력 피해의 관계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성인기 배우자 폭력 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반복적 폭력 피해 경험에서, 성장기 가정폭력 피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Graham & Hughes, 1999; Whitfield et al., 2003; Wyatt et al., 2000; Becker et al., 2010; Johnson et al., 2017; Pezzoli et al., 2024; 김재엽, 2001; 안귀여루·서경현, 2007; 홍영수, 2010; 도한나, 2017; 박진경, 2022; 이도현 외, 2024).

성장기 가정폭력 경험이 성인기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제시되어 왔다. 성장기의 부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으로 인해 아동은 긍정적인 갈등 해결 전략을 학습하지 못했으며(이은주, 2004; 조수진, 2007), 추후 성인기에 이르러서는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증가하고(Graham & Hughes, 1999; 이연복, 2000), 반복된 학대 경험은 학습된 무기력 상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숙, 2007; 박애경, 2011).

이처럼 성장기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되는 이유는 단순한 재피해 가능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심리·정서적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신예림·김순규, 2023). Irwin(1999)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성인기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Messman과 Long(1996)은 학대 유형별로 피해 전이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성장기의 성적 폭력 경험이 성인기의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Sappington 등(1997)은 성장기의 폭력 경험이 청소년기 이성교제 시 성폭력 피해를 예측하는 변수임을 밝혔다. Merrill 등(2001)과 Whitfield 등(2003)의 연구에서도 성장기 피해 경험이 성인기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가능성을 두 배 이상 높인다고 보고되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가해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Pezzoli 등(2024)은 21세 및 26세 시점의 쌍둥이 코호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동기 학대 경험자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각각 3배, 4배 더 높은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을 보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유전 및 공유 환경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 또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김재엽(2001)은 성장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과 성인기 피해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고하였으며, 안귀여루·서경현(2007)은 부모 간 폭력 행동 노출 경험이 초기 성인기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도한나(2017)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박진경(2022)은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연인 관계 내 심리적 폭력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피해자의 재피해를 예방하고 폭력의 재생산을 차단하기 위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성장기 가정폭력 피해가 성인기의 배우자 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하고, 인적자원 신뢰와 동네 응집력이 이 관계를 조절하거나 완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다.

3.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의 조절효과

1) 인적자원 신뢰의 조절 효과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내 인적자원 신뢰는 사회적 지지로써 아동학대 및 방임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Vinson, Baldry, & Hargreaves, 1996). 아동학대 고위험 지역은 사회적 자원과 지지가 부족하며, 집합적 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낮은 지역에서는 아동에 대한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Gutman, Brown, Akerman, & Obolenskaya, 2009; 재인용: 김세원, 2018).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경험하는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자원을 의미하며,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돕는 핵심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Wills, 1991). 일반적으로 사회적지지 척도에는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타인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포함되며,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환경 통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김선자·조옥귀, 2003).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공감, 위로, 애정 표현), 정보적 지지(조언, 정보 제공), 도구적 지지(금전적·물리적 지원 등)로 구분된다(Wills, 1991; French et al., 2018). 이러한 자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호 기제로 기능하며, 개인의 심리적 회복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Heron 외(1997)는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유발 사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한다고 보았고, Cascardi와 O'Leary(1992)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완화하는 데 사회적 지지가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성장기 아동·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는 더욱 중요한 보호 자원이다. 장덕희(2001)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개인, 가족,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적응을 돕는다고 밝혔으며, 김주현과 장수미(2012)는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오소정과 박주희(2020)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방어행동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손상과 부정적 행동 반응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도구적 지지를 '인적자원 신뢰'로 명명하고 조절 변수로 설정하였다.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는 개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위안과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성인기 배우자 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가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 동네응집력 조절 효과

이 연구의 두 번째 조절변수는 '동네 응집력'이다. 이는 지역사회 내 거주자들이 위기 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와 심리적 결속감을 의미하며, 개인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웃이 개입하고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지역사회 맥락에서 범죄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시카고학파의 사회생태학적 접근과 사회해체이론의 전통을 계승해왔다. Shaw와 McKay(1942)는 청소년 비행 연구를 통해 빈곤, 인종·민족적 이질성, 주거 불안정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범죄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밝혔다. 이후 연구들은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지역사회의 통제 역량을 약화시켜 범죄와 비행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Sampson과 동료들(Sampson & Wilson, 1995; Sampson et al., 1997; Sampson, 2003)이 제시한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 집합효율성은 주민들의 상호 신뢰, 협력, 공동 책임의식을 토대로 한 적극적 행동 의지를 의미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비공식적 사회통제 실현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집합효율성 수준이 높은 지역은 가정폭력 위험이 낮으며(Browning, 2002), 유대와 신뢰, 비공식적 통제 수준이 낮다고 지각하는 여성일수록 가정폭력 피해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Keseredy et al., 2003). 또한 집합효율성은 위험요인과 피해 간의 관계를 조절하거나 매개하기도 하며,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성인기의 가정폭력 피해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유대 수준이 낮을수록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Obasaju et al., 2009).

이러한 집합효율성 개념은 동네 응집력으로 구체화된다. 동네 응집력은 단순한 지리적 근접성이나 물리적 환경을 넘어, 주민 간의 신뢰·상호 지원·공동 규범 등을 바탕으로 위협이나 무질서에 공동 대응하는 역량을 의미한다(Buckner, 1988). 전통적으로 이웃(neighborhood)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하위 지역단위로 간주되었으나(Sampson et al., 2002), 최근에는 주민의

주관적 인식, 상호작용, 심리적 거리 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Leventhal & Brooks-Gunn, 2000).

선행연구에 따르면, 동네 응집력이 높을수록 지역 내 무질서나 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하며, 이웃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oss & Jang, 2000). Cutrona 외(2000)는 동네 응집력이 개인의 스트레스 반응과 긍정적 가치관 형성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보았으며, Dallago 외(2009)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홍현미라(2016)는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는 동네 응집력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웃 간 호감, 공동체 심리, 사회적 참여 등이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 사회적 유대(social ties) 등 주관적으로 인식된 지역사회 요인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을 평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안정감은 우울감 및 심리적 고통 증상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ill & Maimon, 2013; Lim et al., 2017). 또한, Fedina 외(2019)는 동네 응집력이 친밀한 관계폭력(IPV) 피해자의 정신건강 악화를 완화하거나 심화시키는 조절 변수로 작용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공공보건 및 지역사회 개입 전략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종합하면, 동네 응집력은 집합효율성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주민 간 신뢰와 공동 규범을 통해 폭력 피해의 연속성을 완화하는 지역사회 수준의 보호요인이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의 폭력 피해 경험이 성인기 배우자 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동네 응집력은 개인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 간의 관계에서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 각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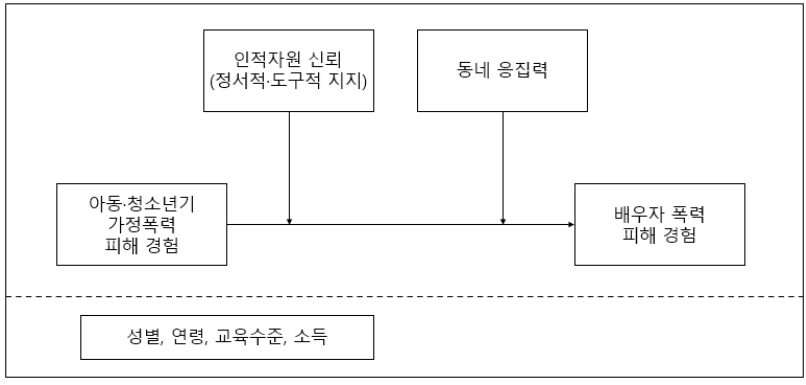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은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과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의 관계에서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이 조절변수로서의 영향을 미치는가?

2. 분석 자료

이 연구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는 2022년 8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여성 5,975명과 남성 3,087명을 포함한 총 9,062명의 응답이 수집되었다. 해당 조사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900개 조사구를 선정한 후, 각 조사구에서 10가구를 계통추출하고, 가구 내 만 19세 이상 가구원 중 1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되었다. 조사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노령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응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원이 직접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에는 종속변수인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중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4,786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정의되며, 법률상 배우자 또는 과거의 배우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적 정의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발생 시 보호명령, 재산 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 혼인 관계에 있는 응답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이다. 지난 1년간 및 그 이전에 현재의 배우자(또는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부를 측정하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1년에 3~4회 미만, 2=월 1회, 3=월 2~3회, 4=주1회 이상, 5=전혀 없다)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각 문항을 0=없음, 1=있음으로 이분형 재코딩한 후, 전체 문항의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Cronbach's α=.81).

2) 독립변수

주요 독립변수로써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은 기존 조사에서 수집된 만 18세 이전의 피해 및 목격 경험 관련 문항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피해 경험은 보호자로부터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피해를 묻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0=없음, 1=있음의 이분형 척도로 측정되었다.

목격 경험은 부모 간 폭력 상황과 주가해자에 대한 인식을 묻는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원 척도는 5점 리커트 형식(1=아버지, 2=어머니, 3=두 분 비슷하게, 4=본 적 없음, 5=부모 중 한 사람과만 거주)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과정에서 1~3번 응답을 폭력 목격 경험이 '있음(1)', 4~5번 응답을 '없음(0)'으로 간주하여 재코딩하였다. 피해 경험 및 목격 경험에 대한 총 10개 문항 중 하나라도 '있음(1)'으로 응답한 경우,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측정 항목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 .76이었다.

3) 조절변수

첫 번째 조절변수는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이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정서적 또는 실질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대상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의미하며, 원 조사에서 인적자원 신뢰로 수집된 관련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두 번째 조절변수는 동네 응집력으로, 지역사회 내 거주자들 간의 심리적 결속감과 위기 상황 시 공동 대응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다. 측정에는 이웃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는 두 문항을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되었으며, 각 변수 점수는 해당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4) 통제변수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가정폭력 피해 발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폭력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나, 남성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김성언, 2010; Hines & Douglas, 2010). 연령과 교육수준 역시 피해 경험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Abramsky et al., 2011; 김재엽, 2001; 신나래·정선영, 2024), 낮은 교육 수준은 대인관계 갈등 해결 능력을 제한하고 폭력 피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낮은 가구소득은 경제적 의존성을 심화시켜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위험요인으로 지적된다(Van Wyk et al., 200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을 통제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검증하고자 한다.

〈표 1〉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변인	문항	신뢰도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81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나의 물건을 부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였다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변인	문항	신뢰도
	허리띠 몽둥이 등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무력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였다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나의 이미지를 이용한 성적 합성물 등을 나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리거나 협박하였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나의 재산이거나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지게 하였다	
아동·청소년기 피해경험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76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렸다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허리띠, 몽둥이 등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식사를 제때 챙겨주지 않거나 진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였다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하거나 하도록 강요했다	
아동·청소년기 목격경험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허리띠, 몽둥이 등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인적자원 신뢰 (정서적·도구적 지지)	나는 중요한 개인 문제나 감정적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다	.65
	내가 가정폭력 피해를 입는다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동네 응집력	동네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면 동네 사람들은 신고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	.77
	우리 집에 폭력이 발생한다면 동네사람들은 신고 등 조치를 취해 도와줄 것이다	

4. 분석 방법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SPSS 29.0 프로그램(Coutts & Hayes, 2021)과 SPSS Macro PROCESS macro version 4.1의 Model 2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어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는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과 각 조절변수(인적자원 신뢰, 동네 응집력)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투입하는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두 개의 조절변수가 독립적으로 조절효과를 가지며, 보호요인 간의 상호작용 없이 누적적(additive)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가산조절모형(Multiple Additive Moderation Model)을 적용하였다. 이 모형은 개인 및 지역사회 수준의 보호요인이 각기 독립적으로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적합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Ⅳ.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총 1,494명(31.2%), 여자가 3,292명(68.8%)으로 확인되어 여성의 수가 많았다. 연령의 분포는 만 19세에서 35세 미만이 493명(10.3%), 만 35세에서 50세 미만이 2,171명(45.4%), 만 50세에서 65세 미만이 2,122명(44.3%)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에서 사용한 연령 구간은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원자료에서 제공된 범주형 변수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표본 수의 균형과 세대별 특성 비교를 위해 설정된 구간이다.

교육 수준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6명(0.1%), 초등학교 졸업이 29명(0.6%), 중학교 졸업이 122명(2.5%), 고등학교 졸업이 2,225명(46.5%), 대학교 졸업이 2,360명(49.3%), 대학원 졸업이 44명(0.9%)으로 확인되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별로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5명(0.1%), 100만원 미만이 7명(0.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76명(1.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83명(8.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1,039명(21.7%),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357명(28.4%),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이 1,458명(30.5%),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376명(7.9%), 1,000만원 이상이 85명(1.8%)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786)

변수	값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자=1	1,494	31.2
	여자=0	3,292	68.8
연령	만 19~35세 미만	493	10.3
	만 35~50세 미만	2,171	45.4
	만 50~65세 미만	2,122	44.3
교육 수준	안 받았음	6	0.1
	초등학교 졸업	29	0.6
	중학교 졸업	122	2.5
	고등학교 졸업	2,225	46.5
	대학교 졸업	2,360	49.3
	대학원 졸업	44	0.9

변수	값	빈도(n)	백분율(%)
월 가구 소득	소득 없음	5	0.1
	100만원 미만	7	0.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76	1.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83	8.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039	21.7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357	28.4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1,458	30.5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76	7.9
	1,000만 원 이상	85	1.8

2. 상관분석 결과

연구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주요 변수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각 변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주요 변수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은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 경험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r=.31, p<.001)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과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8, p<.001). 또한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과 동네 응집력 간에도 부(-)적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r=-.09, p<.001).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4,786)

	(1)	(2)	(3)	(4)	(5)	(6)	(7)	(8)
(1)	1							
(2)	.31***	1						
(3)	-.08***	-.11***	1					
(4)	-.09***	-.10***	.48***	1				
(5)	.08***	-.10***	.05***	.00	1			
(6)	.07***	.12***	-.07***	.00	-.06***	1		
(7)	-.08***	-.11***	.08***	.04**	-.11***	-.42***	1	
(8)	-.02	-.06***	.06***	.01	.02	-.07***	.31***	1
M	4.37	1.26	3.33	3.10	1.69	2.34	4.47	6.08
SD	1.31	1.75	0.54	0.62	0.46	0.66	0.61	1.23
(1)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 (2)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 (3)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 (4) 동네 응집력, (5) 성별(남=1, 여=0), (6) 연령, (7) 교육 수준, (8) 월 가구 소득								

**p<.01, ***p<.001

3. 위계적 회귀분석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의 다중가산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은 총 네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계에서 모형의 설명력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Model 1에서는 통제변수와 주요 독립변수인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투입 한 결과, 해당 변수는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24, p<.001), 모델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triangle R^2$=.109, F(5, 4780)=116.56, p<.001).

Model 2에서는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는 유의성을 확인하는 경계 수준에서 부(-)적인 영향을 보였고(B=-0.07, p=.053), 동네 응집력은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0, p=.003). 두 조절변수의 추가로 설명력이 다소 증가하였으며(ΔR^2 = .004), 이는 개인의 인적자원과 기능적 환경요인이 피해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Model 3에서는 상호작용항인 아동·청소년기 피해 경험과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 간 상호작용항(a×b), 아동·청소년기 피해 경험과 동네 응집력 간 상호작용항(a×c)을 동시에 포함하여 다중가산조절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상호작용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기 피해와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은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0.07, p=.003), 아동·청소년기 피해와 동네 응집력의 상호작용항 역시 유의미한 부적 효과를 보여 주었다(B =-0.06, p=.001). 이는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이 각각 독립적으로, 아동·청소년기 피해가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의 증가된 설명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ΔR^2 =.007, F(2, 4776)=18.15, p< .001).

SPSS PROCESS macro model 2번을 활용하여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의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과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 간 관계의 조절효과를 시각화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래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높을수록 배우자 폭력 피해 수준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나, 이 관계의 기울기는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 모두가 높은 집단은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가장 완만하였으며, 반대로 두 요인이 모두 낮은 집단은 가장

가파른 증가 곡선을 보였다. 특히, 이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가 높을 때보다 동네 응집력이 높은 경우에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동네 응집력이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피해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고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으로써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4〉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배우자 폭력 피해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constant	3.91***	.20		16.78	4.43***	.23		19.36	3.98***	.24		16.56
성별	0.31***	.04	0.11	7.90	0.32***	.04	0.11	7.99	0.32***	.04	0.11	8.09
연령	0.05	.03	0.03	1.68	0.05	.03	0.03	1.69	0.05	.03	0.02	1.55
교육수준	-0.04	.04	-0.02	-1.19	-0.04	.04	-0.02	-1.00	-0.04	.04	-0.02	-1.13
가구소득	0.001	.02	0.001	0.04	0.002	.02	0.002	0.12	0.00	.02	0.000	0.00
아동·청소년기 피해 경험 (a)	0.24***	.01	0.32	22.68	0.23***	.01	0.31	22.03	0.63***	.07	0.84	9.18
인적자원 신뢰 (b)					-0.07	.04	-0.03	-1.94	-0.08*	.05	0.001	0.04
동네 응집력 (c)					-0.10**	.03	-0.05	-2.95	-0.10***	.04	-0.01	-0.62
a × b									-0.07**	.02	-0.29	-3.01
a × c									-0.06**	.02	-0.24	-3.21
F(df)	116.56(5, 4780), $p<.001$				11.61(2,4778), $p<.001$				18.15(2, 4776), $p<.001$[1)]			
R^2	.109				.004				.007			
adj.R^2	.108				.112				.118			

Note. 1) 두 상호작용(a * b, a * c)이 투입된 *F*변화량을 의미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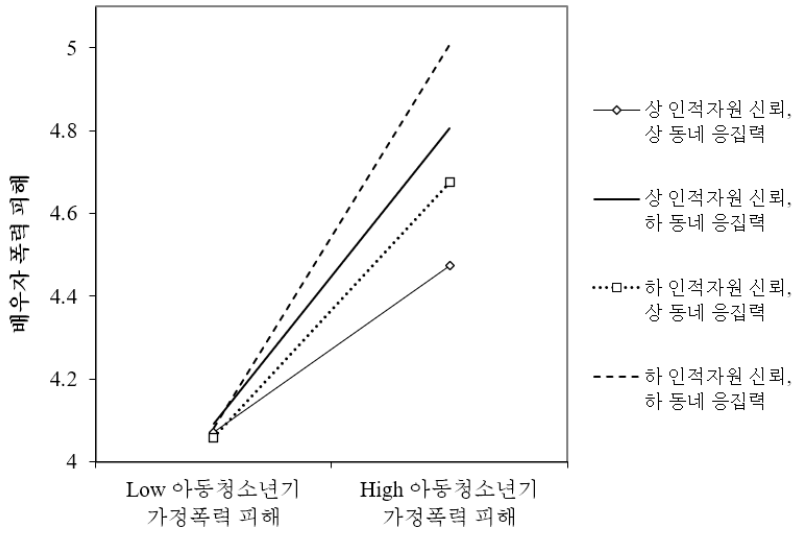

〈그림 2〉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 수준에 따른 다중가산조절효과

V. 결론 및 논의

아동·청소년기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은 개인의 삶에 단기적·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배우자 폭력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모든 개인이 동일한 경로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가 성인기의 피해로 반복되지 않도록 완충해 줄 수 있는 보호 요인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성인기 배우자 폭력 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반복적 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기 가정폭력은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Graham & Hughes, 1999; Whitfield et al., 2003; Wyatt et al., 2000; Becker et al., 2010; Johnson et al., 2017; Pezzoli et al., 2024; 김재엽, 2001; 안귀여루·서경현, 2007; 홍영수, 2010; 도한나, 2017; 박진경, 2022; 이도현 외, 2024).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인적자원 신뢰와 동네 응집력이 이 관계를 완충하는 조절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 자원이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가 성인기 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연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기존 연구들(Hill & Maimon, 2013; Lim et al., 2017; Fedina et al., 2019)에서 제시한 사회환경적 보호요인의 역할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 간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은 배우자 폭력 피해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적자원 신뢰와 동네 응집력은 이들 변수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아동·청소년기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경험한 폭력이 성인기 친밀한 관계에서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때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이 이러한 부정적 연쇄를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과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 간의 관계에서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가 성인기 배우자 폭력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으며, 반대로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이 높은 경우 이러한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즉,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이 높은 경우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지지 자원을 갖고

있다면 성인기 배우자 폭력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이 성장기 피해의 영향을 완충하는 기능을 하며, 폭력의 세대 간 반복을 방지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는 지역사회 수준의 보호요인이 개인 수준의 자원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Sampson 등이 제시한 집합효율성 이론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즉, 개인이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더라도, 지역사회 전반의 응집력이 낮으면 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따라서 향후 정책 개입에서는 피해자 개인의 상담 및 지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의 응집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가 성인기 배우자 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연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초기 개입과 예방이 핵심적이다. 특히 아동·청소년기 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아동이 법적·심리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된 사례 기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국가는 Barnahus (Children's House) 모델과 같은 통합적 개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Barnahus는 아이슬란드에서 처음 도입된 후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법 집행기관, 아동보호 서비스, 의료 및 정신건강 전문가가 한 공간에 모여 수사, 진술 청취, 보호 조치, 심리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협력체계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회복 중심의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히 포렌식 면담은 전문 인력이 담당하며, 영상 녹화된 진술이 법정 증거로 사용되어 아동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적 보호가 제공된다(European Barnahus Network). Barnahus는 아동 친화적 사법 접근의 대표적 사례로, 초기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고 피해 아동의 권리와 회복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국내에서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법적·심리적 개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모형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및 제도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의 조기 발견과 선제적 개입을 위해서는 예측 기반 위험 식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의 아동보호체계에서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기계학습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고위험 아동 및 가족을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적 개입을 시행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Barmomanesh & Miranda-Soberanis, 2023). 특히 만 5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예측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 전후 건강정보, 부모의 정신건강 및 범죄 이력 등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한 조기 개입 모델의 효과성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보건, 복지, 교정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통합한 행정자료 기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험 가정에 대해 선제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요구된다. 독일에서는 아동학대를 인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정법원에 직접 통지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해 신속히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지자체장에게 청구를 요청하는 등의 이중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김상용, 2024). 이러한 외국 사례에 비추어볼 때,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따라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여건상 즉각적인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아동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컨대 의료인, 교사, 보육교사 등에게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 수준의 보호요인인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위기 가정이나 정서적으로 고립된 개인에게 신뢰 가능한 상담자, 지지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기반의 정서적 지지망 구축을 위한 신뢰관계 형성형 자조모임 등이 제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위기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신뢰인 연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러한 접근의 효과성이 확인된 바 있다. 홍나미·박주혜·강현주(2023)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참여한 자조모임은 구성원 간 상호 지지를 가능하게 하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반이 되었다. 모임을 통해 유용한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으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긴장 완화와 자기 돌봄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회복력과 신뢰 자원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는 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지만, 분석이 개인 수준 자료에 한정된 만큼, 이러한 정책적 제언은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 동네 응집력이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보다 더 강한 보호 요인으로서 기능함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만큼,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동네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사회 수준의 보호요인이 개인 수준의 자원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Sampson 등이 제시한 집합효율성 이론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모두 개인 수준에서 측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은 지역사회 수준으로 직접 일반화하기보다 이론적 시사점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은 단순한 물품 거래를 넘어, 지역 주민 간의 상호작용과 심리적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로컬 커뮤니티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이수현·강지수, 2023). 이러한 디지털 공간은 이웃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정서적 교류와 신뢰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동네 응집력의 사회심리적 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근마켓은 '이웃과의 소통' 기능을 통해 지역 주민 간의 관계를 활성화하고, 커뮤니티 내에서 정보 교류와 감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지자체, 경찰,

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안전한 동네 만들기'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 교육, 커뮤니티 모임 안내, 신고 유도 배너 등을 통합 운영할 경우,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처럼 주민 간 일상적 상호작용과 유대를 바탕으로 '관찰과 개입'의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 가정폭력과 같은 은폐적 범죄에 대한 조기 발견 및 대응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가정폭력 연구에서 주목되고 있는 남성 피해자의 증가에 대한 논의 역시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가정폭력 담론은 주로 여성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으나,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남성 또한 심리적·정서적 폭력은 물론 신체적 학대에 노출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Hines & Douglas, 2010; 이미정·정수연·양혜란, 2018; 김미라·정재원, 2022).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피해 양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조절 변수로 기능하는 방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남성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인적자원 신뢰(정서적·도구적 지지)와 동네 응집력이 아동·청소년기의 가정폭력 경험과 성인기의 배우자 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 횡단적 자료에 기반한 분석으로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웠다. 둘째, 인적자원 신뢰 척도는 주로 이웃과 공동체의 반응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서적 지지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분석에 포함된 변수가 제한되어 우울, 충동성, 부부갈등 등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개인의 심리·관계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성인기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 수준(인적자원 신뢰: 정서적·도구적 지지)과 지역사회 수준(동네 응집력)의 보호요인이 각각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다중가산조절모형(Multiple Additive Moderation Model)을 활용

하여 두 조절변수가 독립적으로 해당 관계를 조절하는지 분석하고,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배우자 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인적 자원 신뢰와 동네 응집력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주요한 의의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가정폭력의 가해 기제에 집중해온 데 비해, 이 연구는 가정폭력 재피해의 반복 가능성을 사회적 보호 요인을 통해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공백을 보완하였다. 이는 가정폭력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을 위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하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6월 16일 접수
2025년 8월 29일 수정 완료
2025년 8월 27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경찰청. (2024). “경찰청_시도청별 가정폭력 신고건수”

고은정·신나래. (2023). “가정폭력 신고와 경찰의 대응: 피해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4(2):5-34.

김미라·정재원. (2022). “남자 대학생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데이트 폭력 피해 지각과 갈등 해결전략의 조절효과”, 「교정상담학연구」, 7(2):5-34.

김상용. (2024).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도입 - 성과와 한계”, 「중앙법학」, 26(4): 85-118.

김선자·조옥귀. (200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3(1): 361-385.

김성언. (2010). “폭력피해와 성차: 폭행·상해, 협박과 괴롭힘을 중심으로: 폭행·상해, 협박과 괴롭힘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3): 103-134.

김세원. (2018).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아동학대 간의 관계”, 「지방사와 지방문화」, 21(2): 233-258.

김은정·김진숙. (2020).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과 성인기 정신병리 및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의 차별적 경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1(3): 23-44.

김재엽. (2001).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7: 1-32.

김주현·장수미. (200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찰 신고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 127-160.

도한나. (2017). “아동기 학대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과 낭만적 애착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박애경. (201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대한 인지행동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 「21 세기사회복지연구」, 8(1): 31-59.

박진경. (2022).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성인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연인 관계 내에서의 심리적 폭력 피해의 관계: 단절 및 거절 도식과 관계 중독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5):895-910.

법무부. (20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신나래·정선영. (2024). “지역사회 특성이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5(1): 171-189.
신예림·김순규. (2023).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아동학대 피해유형과 청년기 정신건강”,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1(1):93-116.
안귀여루·서경현. (2007). “성장기 가정 내 폭력 경험이 성인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 간의 폭력 관찰 경험과 자신에 대한 폭력 행동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4):83-100.
안하얀·서영석(2018). “성인 미혼 커플의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과 관계적응: 성인애착과 관계욕구충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2): 195-221.
여성가족부. (2022)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오소정·박주희. (2020).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방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적 공감 및 사회적 지지의 다중가산조절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41(6):81-93.
원혜욱. (202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기관 협업체계 및 정보공유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29(1): 49-80.
이도현·신새봄·이나원·이다경. (2024). “가정폭력의 재피해화: 아동학대와 배우자 학대 유형 간 잠재전이분석 및 전이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영향”, 「제주여성가족연구」, 3:172-204.
이미정·정수연·양혜린. (2018). “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지원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53): 1-248.
이수현·강지수. (2023). “이웃과 거래하는 사람들: 지역기반 중고거래에 대한 질적연구”, 「소비자학연구」, 34(6):103-131.
이연복. (2000).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의 목격경험이 가정폭력의 허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은주. (2004). “아동 학대 경험과 가정폭력”,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93-505.

이태영·심혜숙. (2011).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6): 2273-2291.

장덕희. (2001).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정혜숙. (2007). “매맞는 여성의 떠날 수 없는, 머물 수 없는 이유”, 「사회복지연구」, 32: 269-298.

조수진. (2007).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애착에 관한 질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홍나미·박주혜·강현주. (2023). “자립준비청년의 자조모임 경험에 관한 포토보이스 연구 -가정위탁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2(2): 67-104.

홍영수. (2010). “부모학대가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정서적 지지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30: 225-244.

홍현미라. (2016). “‘한국형 동네 응집력 척도(K-NCI)’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7(2): 139-158.

황지원·이희영(2024). “아동학대 피해자가 말하는 청소년 쉼터 내 학대 피해 경험과 개선방안: A 쉼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7(2): 47-74.

Abramsky, T., Watts, C. H., Garcia-Moreno, C., Devries, K., Kiss, L., Ellsberg, M.,& Heise, L. (2011).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recent intimate partner violence? Findings from the WHO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BMC public health, 11(1):109.

Bandura, A., & Walters, R. H.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1:141-154, NJ: Prentice hall.

Barmomanesh, S., & Miranda-Soberanis, V. (2023). “Toward Improving Predictive Risk Modelling for New Zealand’s Child Welfare System Using Clustering Methods”, *Global Scientific Journals,* 11(5):1-20.

Becker K., Stuewig J., & McCloskey L. (2010). "Traumatic stress symptoms of women exposed to different forms of childhood victimization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1699-1715

Browning, C. R. (2002). "The Span of Collective Efficacy: Extend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to Partner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833-850.

Buckner, J. C. (1988).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Neighborhood Cohes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6): 771-791.

Cascardi, M.,& O'Leary, K. D. (1992). "Depressive symptomatology, self-esteem, and self-blame in battere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7: 249-259.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Cutrona, C. E., Russell, D. W., Hessling, R. M., Brown, P. A., & Murry, V. (2000). "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of community contex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frican American women", *Journal ofPersonalityandSocialPsychology,* 79(6): 1088-1101.

Dallago, L., Perkins, D. D., Santinello, M., Boyce, W., Molcho, M., & Morgan, A. (2009). "Adolescent place attachment, social capital, and perceived safety: A comparison of 13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4(1): 148-160.

DeKeseredy, W. S., Schwartz, M. D., Alvi, S., & Tomanszewski, E. A. (2003). "Perceived Collective Efficacy and Women's Victimization in Public Housing", *Criminal Justice,* 3(1): 5-27.

Fedina, L., Mushonga, D. R., Bessaha, M. L., Jun, H.-J., Narita, Z., & DeVylder, J. (2019).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Neighborhood

Factors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Psychological Distress, and Suicide Risk",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21-22): 10546-10563.

French, K. A., Dumani, S., Allen, T. D., & Shockley, K. M. (2018). "A meta-analysis of work–family conflict and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bulletin,* 144(3): 284-314.

Graham-Bermann, S. A., & Hughes, M. H. (1999).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and emotional abuse on children: The intersection of research, theory, and clinical intervention", *Journal of Emotional Abuse,* 1(2):1-21.

Gutman, L.M., Brown, J., Akerman, R., & Obolenskaya, P. (2009). "Well-be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London: DCSF.

Heron, R. L., Twomey, H. B., Jacobs, D. P., & Kaslow, N. J. (1997). "Culturally competent interventions for abused and suicidal African American wome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4(4): 410-424.

Hill T. D., Maimon D. (2013). "Neighborhood context and mental health", In Aneshensel C. S., Phelan J. C., Bierman A. (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479-501, Dordrecht, The Netherlands: Springer.

Hines, D., & Douglas, E. (2010). "Intimate terrorism by women towards men: Does it exist?", *Journal of aggression, conflict and peace research*, 2(3):36-56.

Irwin, H. J. (1999). "Pathological and nonpathological dissociation: The relevance of childhood trauma", *The Journal of psychology,* 133(2): 157-164.

Johnson, W. F., Huelsnitz, C. O., Carlson, E. A., Roisman, G. I.,

Englund, M. M., Miller, G. E., & Simpson, J. A. (2017). “Childhood abuse and neglect and physical health at midlife: Prospective, longitudinal evid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9(5): 1935-1946.

Leventhal, T., & Brooks-Gunn, J. (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the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26(2):309-337.

Lim S., Meausoone V., Norman C., Quinlan C., & Driver C. R. (2017). “Neighborhood contributions to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Latino New York City adults”, *Ethnicity & Health,* 22(6):575-584.

Merrill, L. L., Thomsen, C. J., Sinclair, B. B., Gold, S. R., & Milner, J. S. (2001). “Predicting the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on women: the role of abuse severity, parental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6): 992-1006.

Messman, T. L., & Long, P. J. (1996). “Child sexual abuse and its relationship to revictimization in adult women: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6(5): 397-420.

Obasaju, M. A., Palin, F. L., Jacobs, C., Anderson, P., & Kaslow, N. J. (2009). “Won’t You be My Neighbor? Using an Ecological Approach to Examine the Impact of Community on Revictim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4(1): 38-53.

Pezzoli, P., Pingault, J. B., Eley, T. C., McCrory, E., & Viding, E. (2024). “Causal and common risk pathways linking childhood maltreatment to later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ization”, *Molecular Psychiatry*, 30: 2027-2037.

Ross, C. E., & Jang, S. S., (2000).“Neighborhood disorder, fear, and mistrust: The buffering role of social ties with neighbors”,

AmericanJournal of CommunityPsychology, 28(4): 401-420.

Sampson, R. J. (2003). "The Neighborhood Context of Well-being", *Perspectives in Biology & Medicine,* 46: S53-S64.

Sampson, R. J., & Wilson, W. J. (1995). "Toward a Theory of Race, Crime, and Urban Inequality". In J. Hagan & R.D. Peterson, (Eds.), Crime and Inequality, 37-54.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Sampson, R. J., Morenoff, J. D., & Gannon-Rowley, T. (2002).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s": Social processe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1):443-478.

Sampson, R. J., Raudenbush, S.W.,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Sappington, A. A., Pharr, R., Tunstall, A., & Rickert, E. (1997). "Relationships among child abuse, date abuse, and psychological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3(4): 319-329.

Shaw, C., & McKay, H.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an Wyk, J. A., Benson, M. L., Fox, G. L., & DeMaris, A. (2003). Detangling Individual-, Partner-, and Community-level Correlates of Partner Violence. Crime & Delinquency, 49(3): 412-438.

Vinson, T., Baldry, E., & Hargreaves, J., (1996). "Neighbourhoods, network and child abus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6: 523-543.

Whitfield, C. L., Anda, R. F., Dube, S., & Felitti, V. J. (2003). "Violent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risk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adults: Assessment in a large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2): 166-185.

Wills, T. A. (1991).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rosocial behavior, 265-28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WHO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Initial results on prevalence, health outcomes and women's responses." *World Health Organization.*

Wyatt, G. E., Axelrod, J., Chin, D., Carmona, J. V., & Loeb, T. B. (2000). "Examining patterns of vulnerability to domestic violence among African American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6(5): 495-514.

European Barnahus Network, About Barnahus, https://barnahus.eu/barnahus/about-barnahus/ (검색일: 2025.7.28.).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on Spousal Victimization in Adulthood: The Multiple Additive Moder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and Neighborhood Cohesion

Hojung Lee
Dongguk University

Chang-Bae Lee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hildhood and adolescent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on the experience of spousal violence in adulthood,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trust in personal resources and neighborhood cohesion. Data were drawn from the 2022 National Survey on Domestic Violence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South Korea. The analysis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hoo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dult experiences of spousal violence, interpersonal trust, and neighborhood cohesion. Results revealed that early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adult experiences of spousal violence. Conversely, both interpersonal trust and neighborhood cohesion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spousal violence victimization. Furthermore, the two factors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victimization and adult re-victimization. In particular, neighborhood cohesion demonstrated a stronger protective effect by weakening the association between early and later victimiz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personal trust and neighborhood cohesion function as protective factors against the intergenerational continuity of domestic violence,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both individual- and community-level resources. The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policy and theoretical efforts aimed at preventing the reproduction of domestic violence across the life course.

Key Words: Domestic Violence Exposure, Spousal Violence Victimization, Re-victimization, Collective Efficacy, Interpersonal Trust, Neighborhood Cohesion

한국사회 제26집 2호(2025년): pp.255-259

진실을 지우려는 권력에 맞선 연대의 기록

Min, P. G. (Ed.). (2025). *Countering History Denialism: The Assault On Truth About 'Comfort Women'*. World Scientific.

고 영 란*

기획의도와 문제의식

"When those who have committed crimes fear that they will face the consequences, they look for reasons why they should not be held accountable(1쪽)."

서문의 첫 문장에서 저자(Margaret D. Stetz)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시도들이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펼치는 전형적인 전략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 책은 이러한 통찰에서 비롯되었다. 2021년,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자발적 성매매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존 마크 램지어(J. Mark Ramseyer)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저자 민병갑 교수는 램지어의 도발에 대한 학문적 대응으로서 이 책을 기획하였다. 그는 "학자, 활동가 그리고 세계 시민들이 램지어 주장의 오류를 깨닫고, '위안부' 제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기획했다(271쪽)"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언급에는 역사적 진실을 지키려는 학자의 책임감과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silverain5@korea.ac.kr

책의 구성

이 책은 서문, 서론, 결론, 그리고 본문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과 2장은 '위안부' 문제와 램지어 논란의 쟁점을 정리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3장과 4장은 램지어의 논문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반박을 통해 이 책의 논리적 중심축을 이룬다. 5장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조명하며, 6장은 '위안부' 제도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된 성노예 제도였음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며, 피해자 보상 운동(Redress movement)의 전개 과정과 그 특징, 특히 운동의 초국가적 성격을 살펴본다. 2장은 '위안부'를 자유 계약을 통한 성매매 종사자로 규정한 램지어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3장은 램지어의 논문이 일본에서 수용된 역사적·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며, 그의 주장이 일본 우익 세력과 결합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 차원의 '역사 왜곡' 흐름을 해부하고 일본 정부에까지 스며든 역사 수정주의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4장은 다양한 실증적 증거를 바탕으로 램지어의 주장과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가 제시한 사례와 미국 문서를 면밀히 분석해 선택적 도용, 과장된 해석, 순환 인용 등 문제적 방식을 드러낸다. 이어서 램지어를 옹호하는 논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5장은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과 군 기록, 인권 단체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위안부' 제도의 실상을 드러내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어 문제를 재구성한다. 특히 생존자들이 초국가적 차원에서 전개한 투쟁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밝혀온 과정을 조명한다. 이어지는 6장은 다수의 '위안부'들이 납치와 인신매매를 통해 위안소에 수감되었음을 지적한다. 결국 '위안부' 제도가 자율적 계약이 아니라, 국가와 군사 권력의 개입 아래 조직된 성노예 제도였음을 규명한다.

램지어의 주요 주장에 대한 비판

이 책은 '위안부' 제도를 자발적 성매매 계약의 일종으로 해석한 램지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램지어는 '위안부'들이 합리적,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제하였으나 저자들은 그의 주장이 허위 전제, 실증적 증거 부족, 왜곡된 자료 활용, 그리고 생존자 증언의 부당한 배제에 기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한다. 이 책에 따르면 첫째, 램지어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위안부' 동원에서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 '위안부'들의 다수는 당시 미성년자로, 일본법상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었으며 실제 계약은 부모나 포주가 대신 체결한 사례가 많았다. 더구나 계약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위안부'들의 상당수는 계약 만료 후 귀국하지 못했으며 수많은 증언과 군 문서들은 감금, 협박, 폭행의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강제성과 구금상태가 실재했음을 보여준다. 저자들은 강압적 구조 속에서는 계약이란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며, 억압 구조 속에서 맺어진 관계를 계약이라 규정하는 것은 구조적 폭력을 개인의 선택으로 오도하는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한다.

둘째, 램지어는 왜곡된 자료와 순환 인용에 의존했다. 그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생존자들의 증언은 조작되었기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 직후 한국 신문 기사들은 이미 납치, 취업 사기 등의 강제 동원 사실을 보도했고, 군 문서와 증언 역시 강제 동원의 실태를 분명히 담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불리한 자료는 배제하거나 왜곡했으며 일본 우익의 문헌만을 인용하였다. 또한 자신의 이전 논문에서 인용한, 오류 있는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재인용하는 순환 인용 방식을 통해 허위를 진실로 둔갑시켰다.

'위안부' 문제의 재해석

저자들은 램지어 논문의 오류를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 놓인 정치적 맥락을 고발한다. 저자들은 램지어의 행보를 일본 극우 세력과

일본 정부, 해외 보수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한다.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국제 무대에서 학자, 언론, 정치인, 대중을 상대로 자신들의 관점을 주입하려는 집요한 전략을 구사했으며, 램지어는 이러한 전략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학자'로 간주되었다. 그의 '위안부' 계약론은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려는 일본 정부의 국제적 로비에 학문적 외피를 제공하며 역사 왜곡을 정당화하는 정치 담론의 도구로 기능했다.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는 램지어를 둘러싼 논란을 '학문의 자유'나 캔슬 컬쳐(cancel culture)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러한 구호를 통해 정의 요구의 목소리를 억누르고자 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역사 수정수의가 우익 단체와 개인들을 넘어 국가 권력으로 스며들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책은 '위안부' 문제를 다층적 억압 구조의 교차점에서 발생한 제국주의적 젠더 폭력 구조의 산물로 규정한다. 저자는 식민주의, 계급, 인종,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 구조 속에서 여성, 특히 식민지 출신 하층계급의 미성년 여성들이 어떻게 가장 취약한 위치로 내몰렸는지를 조명한다. 동시에 이 책은 '위안부' 생존자들을 무력한 피해자로 그리지 않고 행위성과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다. 나아가 이들이 증언자이자 정의 실천자로서 초국가적 연대와 기억·진실의 정치에 적극 참여해 왔다는 점을 부각한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사실 검증을 넘어 역사 생산의 주체적 행위로 평가되며, 이는 피해자 중심 정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학문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 가능성

램지어는 일본 제국주의 하의 식민지 현실, 전시 동원 체계, 국가 폭력이라는 구조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채, '위안부' 제도를 개인 간 거래로 축소하였다. 삭제된 역사적 맥락을 복원하는 작업 속에서, 이 책은 여성 인권과 정의를 회복하고 역사 부정주의에 대항하는 집합적 대응으로 기능한다.

이 책의 큰 강점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동 집필에 참여함으로써, 학문적 분석과 사회적 실천을 잇는 협력의 장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이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역사 부정주의 대응에 있어 학계와 시민사회의 연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 책은 램지어의 논문에 담긴 법적·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주장이 일본 우익과 보수 정치권, 보수 언론의 담합 속에서 어떻게 역사 부정주의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해낸다. 이를 통해 역사 왜곡 담론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방식을 날카롭게 드러냈다. 나아가 생존자들을 기억의 주체이자 국제 연대와 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가로 조명함으로써, 오랫동안 주변화되어온 여성들의 경험을 복원하는 작업을 해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다만, 이 책은 램지어의 논문 외에 교과서 왜곡, 외교적 갈등 등 일본 및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역사 부정 담론 사례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위안부'를 둘러싼 역사 왜곡의 다층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포함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실천 방향이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이 책의 논의가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연대를 통해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후속 작업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저자가 책의 도입에서 밝히는 이 책의 기획 의도는 역사적 진실을 지우려는 세력에 맞서 기억의 윤리와 지식인의 책임을 묻는 선언과도 같다. 특히 저자는 오늘날과 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과 왜곡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에는, 철저하고 신중한 분석을 통해 진실을 지키는 학문적 대항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학자는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지키는 실천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다학제적이고 실천적인 협력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이 책은 학문이 지녀야 할 사회적 책임과, 진실과 정의를 향한 학문적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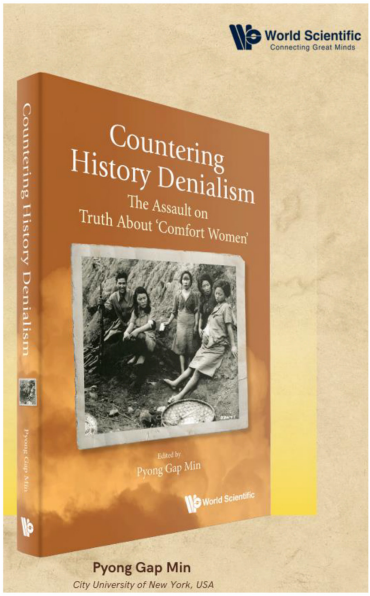

Countering History Denialism

The Assault on Truth About 'Comfort Women'
Edited by Pyong Gap Min

Pyong Gap Min, is a Distinguished Professor of Queens College and the CUNY Graduate Center. He is a 2024 co-winner of the Feminist Scholar Activist Award by the Sex and Gender Section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mainly for his contribution to research and activism on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e redress movement for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20% off Promo Code: WSASOC20

250pp | Pub Date: Dec 2024
Hardcover 978-981-12-9901-8 | **US$88 / £80**
eBook for Individual 978-981-12-9903-2 | **US$35 / £35**
Get your copy at **https://doi.org/10.1142/14012**
* Discount code applicable on our webstore only

For orders and enquiries:
USA | Tel: 1-201-487-9655 | E-mail: wspc_us@wspc.com
UK | Tel: 44-20-7836-0888
| E-mail: IPSUK.Customercare@ingramcontent.com
ASIA | Tel: 65-6466-5775 | E-mail: sales@wspc.com

Written by internationally-known "comfort women" scholars and redress activists, this book critically examines and evaluates the erroneous claim that Japanese and Korean "comfort women" (KCW) were voluntary prostitutes with labor contracts, rather than sexual slaves. It also critically evaluates many unsubstantiated arguments and unjustifiable criticisms of the redress movement led by the Korean Council

"The so-called 'Comfort Women' issue has seen waves of denialism over time. This edited volume takes on its most recent iteration: the revisionist arguments made by Mark Ramseyer, of Harvard Law School, who engaged in creative forms of theorizing to argue that the girls' and women's engagements had been voluntary. The historical record always has gaps; this is especially so with regard to wartime records on young, socially disadvantaged women. However, the historical evidence in this case leaves little doubt as to the women's plight. In its evidence-based approach and historical research based on primary language sources, Min and other authors of the chapters join a roster of respected historians like Tessa Morris Suzuki, Andrew Gordon, Alexis Dudden, and Carter Eckert, in a morally essential defense not only of the war's victims, but also of academic standards and rigor."

~Anna K M Skarpelis
Richard Lachmann Chair of Sociology and Assistant Professor
CUNY Queens College, US

"John Mark Ramseyer, a Professor of Harvard Law School, published his article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in Th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in 2021. It shocked 'comfort women' scholars and the redress activists for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everal scholars have published their articles to critically evaluate his 2021 article and 2022 paper. Countering History Denialism: The Assault on Truth about 'Comfort Women' provides the most comprehensive critiques of Ramseyer' unacceptable arguments. The book has demonstrated that Ramseyer provided the same Japanese history denialism."

~ Chin-Sung Chung
Emeritus Professor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한국사회』 투고 및 발행규정

제 1 조 (발간)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학술지인 〈한국사회〉라는 학술지를 발간한다.

제 2 조 (목적) 〈한국사회〉는 한국사회가 지니는 다양한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학제간의 유기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사회과학 기초이론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발간회수 및 일자) 〈한국사회〉는 연 2회, 2월 28일과 8월 30일에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5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장은 한국사회연구소 운영위원 중 1인이 겸임하며, 10여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 6 조 (편집위원회의 위촉) 편집위원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업적에 있어서 탁월하며,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의 제반학술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로가 많은 사람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7 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술지의 편집방향의 결정 및 발행과 관련한 예산의 집회
2. 논문심사의 방법 및 논문심사위원의 결정, 최종 게재여부의 결정
3. 특집호의 발행 및 내용의 결정
4. 본 학술지의 대내외적 홍보

제 8 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논문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접수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전 원고모집

및 발행과 관련된 공고를 한다.

2.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원고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거나 발표된 원고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유관분야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심사의 위촉은 연중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4. 신청된 논문은 3인 이상의 전문영역 학자들에 의하여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위원은 게재 가(O), 재심(△), 게재 부적합(X) 등으로 논문을 평가한다.
5.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기준은 ① 연구목적의 명료성, ② 분석의 엄밀성, ③ 이론적용의 타당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⑤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⑥ 관련문헌의 취급, ⑦ 연구결과의 의의, ⑧ 문장의 가독성, ⑨ 논문의 독창성, ⑩ 논문제목의 적합성, ⑪ 연구주제의 중요성, ⑫ 이론적 기여도, ⑬ 방법론적 기여도, ⑭ 연구결과의 실용성 등으로 나뉘어진다.
6. 투고 원고에 대한 최종판정은 아래의 심사판정기준을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초심결과			판정	게재 및 재심 과정
○	○	○		게재확정
○	○	△	게재가능	수정권고후 게재
○	○	X		수정을 전제로 게재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이 게재 가이면 게재가능
○	△	X	재심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가이면 게재가능
△	△	X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모두가 게재 가이면 게재
X	X	X		
X	X	△	게재불가	
X	X	○		

7. 재심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가 재심에 응하지 않기로 알려온 경우 또는 재심용 원고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한(재심판정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투고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8.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최종원고 제출 등은 모두 전자메일을 이용한다.

제 10 조 (이의신청)

1. 논문 투고자가 게재불가 판정 결과에 불응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2.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심사논문의 원문, 심사 의견,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다시 한번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지면 저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제 11 조 (투고 규정) 〈한국사회〉에 게재될 논문은 '〈한국사회〉 원고 작성 및 제출요강'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제 12 조 (게재) 원고분량은 원고지 150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 13 조 (저작권 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고 연구윤리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게재확정이 된 논문의 경우, 최종 수정본을 제출할 때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사회연구소에 속한다.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

국사회연구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한국사회연구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제 14 조 (표절 방지)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 확정 시, 최종본을 제출하기 전에 표절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논문의 표절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표절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 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이상의 발의와 편집위원회 재직위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한국사회』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은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인 한국사회 (이하 본 학술지)에 투고되었거나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검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연구윤리)

1. (연구의 객관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의 독창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연구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이중 투고, 중복 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연구의 공개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련 자료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 연구부정행위

제 3 조 (위조) 위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자료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않는다.

제 4 조 (변조) 변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자료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변조로 보지 않는다.

제 5 조 (표절)

1. 표절이라 함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자기 표절).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3. 국 · 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4.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 6 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기 않거나, 반대로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이중 투고) 이중 투고란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국 · 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 · 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도 이중 투고에 해당한다.

제 8 조 (중복 게재)

중복 게재란 국 · 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 · 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제 9 조 (재투고)

1.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게제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

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절차

제 10 조 (편집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
2.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소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연구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제 11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1. 편집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본 연구소 소장은 즉각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의결은 의원의 2/3 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며,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 개최한다.

제 12 조 (이의 신청)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수정 또 재확인할 수 있다.

제 13 조 (비밀보장의 의무)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비밀보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된 날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제 4 장 벌 칙

제 14 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1.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8조에 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2) 이중 투고의 경우,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이중 투고 사실을 통보한다.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

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한다.

(2) 해당 논문을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 3 조 (규칙 재 · 개정)

1. 이 규약은 199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차 개정에 의한 새로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2차 개정에 의한 새로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원고제출 및 작성 요강

원고제출

1. 투고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이면서 학술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제출된 논문은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치며 평가자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또는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당해 원고마감은 발행일 30일전이며 발간예정일은 당해 2월 28일, 8월 30일입니다. 게재 원고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합니다.
4.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원고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백색 A4 용지에 단면으로 출력한 원고 4부를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편집위원회로 우송합니다.

   보낼 곳: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우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 3290-1651 / Fax: 02) 924-4365
   E-mail: lab050@korea.ac.kr
   Homepage: https://socialresearch.korea.ac.kr/

원고작성

1. 원고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부록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한글 97 기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초과시 추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원고작성의 기본적인 형식요건은 다음과 같다.
   글자크기: 본문 10p, 각주 9p, 인용문단 9p
   줄 간격: 170%
   여백 주기: 좌우 3cm, 위 2cm, 아래 1.5cm, 머리말·꼬리말 각 1.5cm
3.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 표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속에 넣어서 쓸 수 있다. 기타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 뒤의 괄호 속에 넣어 쓴다.
4. 원고는 표지, 국문요약, 영문 주제어(Key Words) 순서로 구성한다.
5. 표지에는 논문제목, 필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이메일·전화·팩스)가 명기되어야 한다. 필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횡렬로 기재하되, 1명의 '제1저자'(교신저자)를 지정하여 명시하고 다른 저자들은 '공동저자'로 표기한다.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 수령 사실은 각주로 기재한다.
6. 국문요약은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용지 1/2장 이내 분량으로 작성한다.
7.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필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삼가야 한다.
8. 본문 서술의 세부적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장·절·항·목의 번호는 "Ⅰ", "1", "1)", "(1)"의 순서로 매긴다.
   2) 강조어는 ' ', 인용구는 " "로 둘러싼다.
   3) 전거는 저자명과 간행연도를 반드시 표기하고, 필요시 인용 페이지를 덧붙여 기재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이용할 때도 그 방식은 같다.

구체적인 전거표기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저자명은 서술의 흐름에 따라 논문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괄호속에 넣어야 할 경우도 있다.
   [예1] "…홍승직(1994: 23)은 …";
   [예2] "…라 했다(홍승직, 1994: 23)."

(2) 외국인 저자명은 한글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한다.
   [예1] "…밀즈(Mills, 1956)"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저자명을 가운데점으로 구분하고 항상 병기한다.

[예] "...(김용학 · 임현진, 2000)"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전거표기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et al.)를 사용한다.

[예] "...(양춘 · 김문조 · 손장권 · 박길성 · 김철규, 2001)"; "...(양춘 외, 2001)"

(5) 출간예정인 저술은 "출간예정"(forthcoming)을, 미간행물은 "미간행"(unpublished)을 명기한다.

[예] "...(현영석, 2003 출간예정)"; "...(Lee, forthcoming)"

9. 각주는 꼭 필요한 것만 달도록 하여, 가급적 10개 내외로 최소화시킨다.

10.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먼저한국어 문헌을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동양어 문헌을, 마지막으로 서양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1)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2)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되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를 부가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3)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4) 학술회의 발표문은 발표 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5) 참고문헌 기재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 서적

최재석. 1990.「현대가족연구」. 일지사.

임희섭. 1987a. "한국정치체계의 위기구조와 정책정향: 1961-86."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한국사회개발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193-218

_____. 1987b. “정보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정책의 과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한국사회개발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125-149.

管谷章(스가랴 아기라). 1988. 「日本社會政策史論」. 東京: 日本評論社.

Berger, P. L. and H. M. Hsiao (eds.). 1988.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Transaction.

Cannell, C. F., P. Miller and L. Oksenkerg. 1981. “Research on Interviewint Techniques.” pp. 389-437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y-Bass.

Amsden, A. H. 1989. Asian’s Next Giants: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인근달 역. 1990. 「아시아의 다음 거인: 한국의 후발 공업화」. 시사영어사).

(2) 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 인터넷문서

손장권. 2001. “정보사회의 환경과 조직변화.” 「한국사회」 4: 147-172.

Heckman, James.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2.

Shin, Ho Hyun. 1990. “Shooling and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Korea.” Unpublished of Hawaii.

Krafcik, J. F. and J. D. Macduffie. 1989. “Explaining High Performance Manufacturing.” *Working Paper of IMVP.* MIT.

Kollock, P. and M. Smith. 1994. “Managing the Virtual Commons: Cooperation and Conflic in Computer Communities.” http://www.sscnet.ucla.edu/soc/csoc/vcommons.htm.

(3) 번역서

휴이트(John P. Hewitt). 2001. 「자아와 사회: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사회심리학」. 윤인진 역. 학지사.

클레크 · 히긴스 · 스파이비(S. R. Clegg, W. Higgins and T. Spybey).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 · 김

혁래 · 박길성 · 유홍준 편. 「신경제사회학의 이해」. 역사비평사. pp. 195-210.

Weber, Max. 1951(1920). The Re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 Free Press.

11.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하나씩 별지에 작성하되 본문 속에 들어갈 자리를 지정하여 "〈표 1〉 여기에 제시"와 같이 표시한다.
    2) 제목은 "〈표 1〉..."과 같은 형식으로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3) 설명주는 "주"로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 "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어 놓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4) 표 속에 칸과 행에는 적절한 범주명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5) 표의 선은 맨 위에 맨 아래 선 및 첫 번째 열의 밑선 까지만 긋도록 한다.
    6) 그림은 색을 넣어 그려도 좋으나, 인쇄시에는 흑백으로 표현됨을 유의한다.
    7) 그림에는 x축과 y축과 곡선 · 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주어야 한다.
    8) 통계적 유의도는 "* $p < .05$." "* $p < .01$." "*** $p < .001$"과 같이 표기한다.

한국사회 **제26집 2호**

2025년 8월 28일 · 인쇄
2025년 8월 30일 · 발행

편집 · 발행/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전화: 02-3290-1651 팩스: 02-924-4365
E-mail: lab050@korea.ac.kr
한국사회 투고: socialresearchku@gmail.com
Homepage: https://socialresearch.korea.ac.kr/

인쇄 · 출판/도서출판 새로문화
전화: 02-313-1431 팩스: 02-313-1434

ISSN 1229-036X

Journal of Social Research
Vol.26 No.2 / August 2025

* 이 책은 한국리서치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Korea University
ISSN 1229-036X